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 최종 보고서 -

2021. 08. 04.



고양시의회 수원시의회
용인시의회 창원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참여 연구진

■ ‘4개 특례시의회 권한발굴 및 조직설계 모형발굴 연구회’ 참여 의원

	<p>연구단체 대표</p> <p>유재광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p>
---	--

	<p>양진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p>		<p>이미경 의원 복지안전위원회</p>		<p>장정희 의원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p>
	<p>최찬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p>		<p>한원찬 의원 복지안전위원회</p>		<p>조미옥 의원 복지안전위원회</p>
	<p>이종근 의원 도시환경위원회</p>		<p>김미경 의원 도시환경위원회</p>		<p>유준숙 의원 기획경제위원회</p>

■ 연구 용역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성 명	소 속	직 위
소순창	건국대	주관연구책임자
왕재선	강원대	공동연구원
황희영	동의대	공동연구원
곽창규	세종대	공동연구원
박종수	숙명여대	공동연구원
신예지	아주대	연구보조원
우승규	아주대	연구보조원
홍은영	아주대	연구보조원
박상민	세종대	연구보조원

제 출 문

수원시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08월 04일

- 수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연구기간 : 2021. 03. ~ 2021. 08.

- 주관연구책임자 : 소 순 창(건국대)
- 공동연구원 : 왕 재 선(강원대)
황 희 영(동의대)
곽 창 규(세종대)
박 종 수(숙명여대)
- 연구보조원 : 신 예 지(아주대)
우 승 규(아주대)
홍 은 영(아주대)
박 상 민(세종대)

목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1
2. 구체적인 연구 필요성	1
3. 연구의 목적 및 목표	2
4. 연구수행의 개요	2
II. 4개 특례시 의회 조직 현황	4
1. 고양시의회 현황	4
2. 수원시의회 현황	9
3. 용인시의회 현황	14
4. 창원시의회 현황	19
III. 벤치마킹 사례 분석	24
1. 경기도의회 사례	24
2. 서울특별시의회 사례	29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례	35
4. 기타 광역시의회	37
5. 시사점	39
IV. 특례시 의정환경분석 및 의정활동전략도출	42
1. 특례시 지정에 따른 의정활동 목표설정	42
2. 특례시 의정환경에 대한 SWOT 분석: 특례시 공통	43
3. 특례시 의정환경에 대한 SWOT 분석: 고양특례시	50
4. 특례시 의정환경에 대한 SWOT 분석: 수원특례시	54
5. 특례시 의정환경에 대한 SWOT 분석: 용인특례시	59
6. 특례시 의정환경에 대한 SWOT 분석: 창원특례시	64
V. 4개 특례시의회 조직 진단	69
1. 특례시의회의 조직 구성 현황	69
2. 특례시의회사무기구 조직 구성 현황 분석	83
3. 특례시의회 및 의회사무기구의 인력 수요 및 조직 진단 결과(소결)	93
4. 특례시의회사무기구의 조직 적정성 분석 및 조직모형 발굴	101

VI.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운영 방안	108
1. 연구내용 및 방법	108
2.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109
3. 이론적 고찰: 지방의회 인사행정의 의의와 구성요소	112
4. 사례분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제도	113
5.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방안	120
6.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방안	129
7. 특례시의회 임용단계별 인사제도 개편 방안	133
VII. 특례시 의회 인터뷰 주요 안건	136
VIII.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제시	138
1. 4개 특례시 시의회의 권한 발굴	138
2. 특례시의회 의원 처우개선 내용	157
3. 4개 특례시의회의 의원정수 조정 방안 연구	162
4. 단기-장기 과제 제시	166
IX .특례시 일반구(행정구)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	171
부 록	173
1. 주요 법령(규정) 개정 사항 정리	174
2. 주요 시의회 현황 자료	185
3. 고양시의회 인터뷰 내용	193
4. 수원시의회 인터뷰 내용	200
5. 용인시의회 인터뷰 내용	205
6. 창원시의회 인터뷰 내용	208

표 목차

<표 II-1> 인력 구성	11
<표 II-2>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규정 별표4)	12
<표 II-3>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규정 별표4)	13
<표 II-4> 용인시의회 환경 변화(제1대~제8대 용인시 의회)	16
<표 II-5>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황	20
<표 II-6> 창원시의회 사무국 전문위원별 직급 현황	21
<표 II-7> 창원시의회 위원회의 역할	22
<표 II-8> 연도별 창원시의회 사무국 인력구성현황	23
<표 III-1> 경기도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25
<표 III-2> 서울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30
<표 III-3> 서울시 특별위원회 활동현황	31
<표 IV-1> 특례시 공통 SWOT 분석 결과	43
<표 IV-2> 특례시 공통의 의정활동 목표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 롤링	43
<표 IV-3> SWOT 분석결과를 반영한 고양특례시 의정활동 전략도출	50
<표 IV-4> 고양특례시의 의정활동 목표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 롤링	50
<표 IV-5> SWOT 분석결과를 반영한 수원특례시 의정활동 전략도출	54
<표 IV-6> 수원특례시의 의정활동 목표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 롤링	54
<표 IV-7> SWOT 분석결과를 반영한 용인특례시 의정활동 전략도출	59
<표 IV-8> 용인특례시의 의정활동 목표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 롤링	59
<표 IV-9> SWOT 분석결과를 반영한 창원특례시 의정활동 전략도출	64
<표 IV-10> 창원특례시의 의정활동 목표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 롤링	64
<표 V-1> 특례시 의회조직과 시청본청 조직의 구조적 연계성	75
<표 V-2> 7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황: 의회 입법 활동 실적	77
<표 V-3> 7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황: 행정사무감사 실적	77
<표 V-4> 7대 지방의회 집행부 견제 및 감시활동 (5분 발의 및 질문 내용별 비교)	78
<표 V-5> 8대 지방의회 초기, 4개 특례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황	79
<표 V-6> 7대 지방의회 의안처리실적 (의안처리 내용별 비교)	81
<표 V-7> 7대 지방의회 조례 정비 성과 (조례 내용별 비교)	82
<표 V-8> 7대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특별위원회 목적별 비교)	82
<표 V-9> 의회사무기구 사무직원 현황 - 의원정수와 비교	84
<표 V-10> 4개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구성 현황	85
<표 V-11> 광역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구성 현황	87
<표 V-12> 광역도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구성 현황	89
<표 V-13> 4개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현원 현황	90
<표 V-14> 4개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사무직원 현원 현황	90
<표 V-15> 4개 특례시의회 직무 내용 및 평가(가안)	92

<표 V-16> 4개 특례시의회 적정 규모 추정(안)	95
<표 V-17> 4개 특례시의회 적정 규모 추정(안)	96
<표 V-18> 4개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적정 규모 추정(1안)	97
<표 V-19 > 의회사무기구 적정규모 추정: 회귀분석 결과	99
<표 V-20> 4개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적정 규모 추정(2안)	100
<표 V-21> 4개 특례시의회사무기구 정원(안) - 팀장급 이상	106
<표 VI-1>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109
<표 VI-2> 유형별 보좌인력의 특성	110
<표 VI-3> 인사행정 구성요소	113
<표 VI-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인사위원회 관련 사항	116
<표 VI-5> (예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예술 경영분야 정책자문위원 임용자격 기준	117
<표 VI-6> (예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예술 경영분야 정책자문위원 평가방법	117
<표 VI-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제도의 주요 내용	118
<표 VI-8> 전문가 평가결과	123
<표 VI-9> 모델별 특성 비교	127
<표 VI-10> 유형별 특성 비교	135
<표 VIII-1> 4개 특례시의 예산 규모 비교	146
<표 VIII-2> 최근 4년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	158
<표 VIII-3> 4개 특례시 의원정수	162
<표 VIII-4> 타광역시 의원정수	162
<표 VIII-5> 4개 특례시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회 당 의원수	164
<표 VIII-6> 상임위원회 및 의원 수 비교	164
<표 VIII-7> 국회법 구성	169
<표 VIII-8> 지방의회법 제정 구성내용	170
<표 IX-1> 각 특례시별 일반구(행정구) 현황(괄호: 인구수)	171
<표 IX-2> 지방의회 의원의 구청장 임명의 장점	172

그림 목차

<그림 II-1> 고양시의회 조직구조	7
<그림 II-2> 수원시의회 조직구조	9
<그림 II-3> 의회사무국 구성	10
<그림 II-4> 용인시의회 조직구조	17
<그림 II-5> 창원시의회 조직도	19
<그림 III-1>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및 전문위원실 구성	26
<그림 III-2> 서울시의회 사무처 조직구조 현황	33
<그림 V-1> 특례시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 대안	104
<그림 VI-1> 본 연구의 추진전략	108
<그림 VI-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도	115
<그림 VIII-1> 인사권 강화 방향의 Frame work	139
<그림 VIII-2> 예산규모 도식화	147
<그림 VIII-3> 4개 특례시의 예산규모 증가폭	147
<그림 VIII-4> 4개 특례시의회의 월정수당 및 의정비 평균 비교	158
<그림 VIII-5> 4개 특례시와 재정자립도 현황	159
<그림 VIII-6> 4개 특례시의회의 월정수당 및 의정비 비교	160

I. 서론

1. 연구배경

- 광역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사무 등 자치권한 요구 지속적 존재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2020.12.09)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의 특례시로 지정됨
- 4개 의회 지방자치강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구체적인 연구 필요성

- 지방의회 조직 및 권한 발굴필요
 -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광역시의 권한 이양, 법적 지위 차별화 등 지방분권 강화 예측
 - 지역 산업구조, 인구 규모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방의회의 권한 및 과제 설정 필요
- 조직 설계 및 인력 운용방안 마련 필요
 - 상위 광역지자체로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인력운용 자율성 확대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업무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정책수립 가능
- 광역시 추진 논리근거 요구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맞는 행정·사무 자치권 확보
 - 특례시 일반구 자치권 확대를 통한 향후 광역시 추진 근거 마련

3. 연구의 목적 및 목표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환경 변화 예측 및 방향설정을 통해 특례시의 권한강화와 지방자치역량강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연구의 목표

-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① 지방분권을 선도할 특례시의회의 창의적인 조직모형 발굴
 - ② 4개 특례시의회의 조직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적정성 분석
 - ③ 특례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따른 인사운영 방안 마련
 - ④ 4개 특례시의회 기능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작성
 - ⑤ 4개 특례시 일반구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 마련

4. 연구수행의 개요

□ 지방분권화를 선도할 특례시의회의 창의적인 조직모형 발굴

- 특례시의회의 의정환경 변화 분석 및 광역 및 기초의회와 비교분석
- 특례시의회의 기능 강화 방안 제시 및 특례시의회의 창의적 조직모형 제안

□ 4개 특례시의회 현조직 정밀진단을 통한 적정성 분석

- 특례시의회별 의회 사무기구(의회사무국)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
- 특례시 지역특성별 조직,인력의 적정 규모 및 소요예산 추정
- 특례시 유사 조직 (대도시, 광역형 단층제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따른 인사운영 방안 마련

- 지방의회 전문활동역량 강화 관련 법체계/현황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적시성 높은 인사관리(안) 제시

□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제시

-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를 위한 권한발굴 내용을 단기·중장기로 구분, 추진 로드맵 제시
- 특례시 의회의 의원정수 조정 방안과 대안 제시
- 특례시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에 대안을 단기, 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시

□ 특례시 일반구(행정구)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

- 특례시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구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 제시
- 일반구의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의 방향성 제시

II. 4개 특례시 의회 조직 현황

1. 고양시의회 현황

1) 고양시 의정 환경

□ 고양시의 의정 환경은 선거인수의 증가와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의 관할 사무 증가 및 이에 대응한 시의회의 소관 사무의 증가로 요약 가능함

○ 고양시의 전체 인구는 1993년 30만에서 2018년 104만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3월 현재 108만명임

- 고양시의 인구는 2011년 96.1만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 107.7만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변화하였음

- 고양시의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비율은 2020년 기준 83.04%이며 이러한 인구수 대비 높은 선거인수 비율은 선거권을 지닌 18세 이상,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

○ 고양시는 1992년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된 후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구역이 덕양구와 일산구(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화되었지만,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설치한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 현재 고양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 3개와 동 39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덕양구의 인구가 50만을 초과하면서 분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일산서구 및 동구지역의 경우도 인구 과대동이 일부 있어 행정동 분동 등의 행정구 재조정이 논의되고 있음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양시청의 경우 2실 7국 42과 42개 중기능(관·담당관·과), 198개 소기능(팀), 1,515개 세부분장상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7소 1센터 19과 108팀에서 916개를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동 규칙에서는 일반구의 경우 각 구에서 10개 중기능, 46개 소기능, 385개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하고 있음

□ 고양시의회의 의원정수는 제8대 기준 33명이며, 이 중 29명이 지역구의원, 4명이 비례대표임

- 고양시의회 의원정수는 제1대 고양군 당시의 15명에서 제8대 33명으로 절대적 수치면에서는 지난 3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의원정수는 고양시 승격 이후 제2대 의회에서 38명으로 소폭 증가 이후 제3대 의회에서 다시 31명으로 줄어든 이후 30~32명 수준으로 의원정수가 계속 변화하다 제8대는 33명으로 확정되었음
 - 의원정수의 변화는 지역 인구의 변화와 연계되기 보다는 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의 변화 및 비례대표의 선출 등의 제도 변화와 연계되어 있음
 - 93년 고양시의 전체 인구가 30만명일 때의 의원정수가 3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지역인구가 80만명을 초과한 2003년부터의 의원정수는 30~33명으로 지역인구의 증가가 의원정수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함
 -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한 사이 의원정수는 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 의정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에는 의정 공급이 충분하지 않음
 - 고양시의 국회의원 의원정수는 16대 1996년 2인에서 17대 2000년 4인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에 있으며, 경기도의회의 도의원정수는 4대 1995년 5인에서 10대 2018년 10명으로 2배 증가하였음
 - 고양시의회의 의원정수 규모의 증가는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선거구 확대와 같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함

2) 고양시의회 조직구조

□ 고양시의회 사무기구는 의장 및 부의장과 사무국장실의 3실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담당자, 그리고 의정담당관 이하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입법지원팀, 의정기록관리팀의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양시의회 사무기구는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과 시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입법활동은 각 상임위원회별 1인의 전문위원과 1~2인의 담당인력이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현재 고양시는 의회운영, 기획행정, 환경경제, 건설교통, 문화복지의 5개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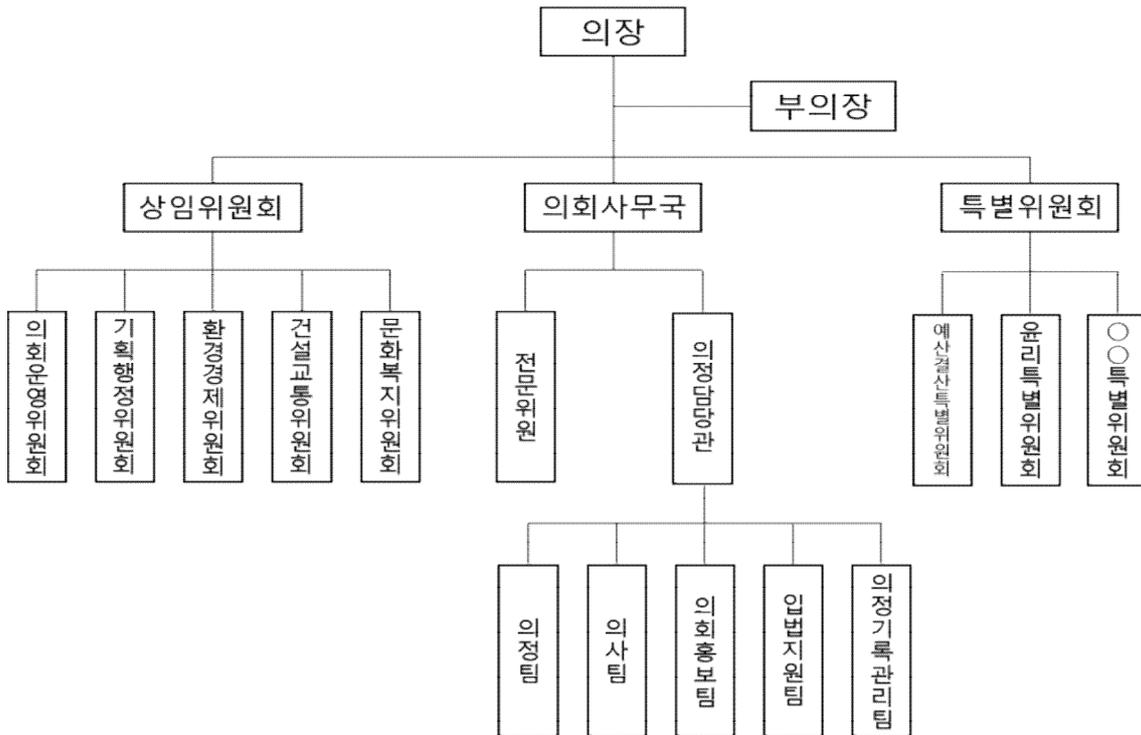
의 2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중심으로 의회운영 및 의안에 관한 사항을 소관 직무로 하고 있음
 - 고양시의 시정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의 4개 상임위원회에서 대응하여 입법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을 소관실국으로, 환경경제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과 기후환경국을,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정책실과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복지여성국과 교육문화국을 담당하고 있음
 - 각 상임위원회는 또한 고양시 산하 도시관리공사, 시정연구원, 자원봉사센터, 킨텍스,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상하수도 및 도로관리사업소, 보건서 및 도서관, 문화재단 및 청소년재단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각 상임위원회별로 8명의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와 겹직을 하며, 의장을 제외한 32명의 시의원들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음
-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경우 1인의 전문위원과 1인의 담당자가 의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기획행정, 환경경제, 건설교통, 문화복지의 4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1인의 전문위원과 2인의 담당자가 의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의 경우 각 위원회별로 3명의 담당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8명 상임위원 대비 3명의 입법지원인력으로 상임위원회 의원 1인당 0.375명의 입법지원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중 사무국의 경우 사무국장실 이하 의정담당관,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입법지원팀, 의정기록관리팀의 1 담당관 5개팀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는 입법지원팀을 제외하면, 4개팀이 의회의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의정팀의 주요 업무는 등록 및 포상 등의 서무 관리, 예산 및 회계 등의 재정관리와 물품관리, 그리고 차량운행 및 관리와 의원실 관리 등의 시설 관리 등임
 - 의사팀의 주요 업무는 본회의 및 임시회의 등의 의사일정 관리 및 의안의 접수 및 자료 요구 대응 등의 의사 진행을 위한 기능 제공임
 - 의회홍보팀의 주요 업무는 의회의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발간과 영상 및 음성 자료의 생산과 관리임
 - 의정기록관리팀의 경우 의사활동에 대한 기록업무이며, 주로 속기사 등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입법지원팀의 경우 입법지원과 의원발의 지원 등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림 II-1> 고양시의회 조직구조



3) 고양시의회 인력현황

□ 고양시의 의회사무기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원은 47명이며, 직제는 3급에서 9급의 계층제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지방직 공무원 34급 1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11명, 8급 12명, 9급 8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음

- 이 중 고양시의회사무국장을 34급(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이정담당관, 기획행정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의 4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5급 지방사무관으로 보함

-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6급 지방행정주사로 보하여, 시청의 국실별 사무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음

- 전문위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고양시의 시의원 정수가 33인에 따라 35인 이하의 기준인 5급 4명, 6급 이하 4명의 정원 기준에 따라 전문위원 간 직급의 차이를 두고 있음
 - 6급의 경우 행정직렬 7명, 운전직렬 1명, 속기직렬 1명, 행정·농업·보건·환경 직렬1명으로, 7급의 경우 행정직렬 8명, 운전직렬 1명, 속기직렬 1명, 행정·시설 직렬 1명으로, 8급의 경우 행정직렬 6명, 전산직렬 1명, 속기직렬 2명, 기계운영 1명, 행정·사회복지 1명, 행정·시설직렬 1명으로, 9급의 경우 행정직렬 5명, 운전직렬 2명, 속기직렬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직렬별 구성을 보면 행정직렬이 26명, 운전직렬이 4명, 속기직렬이 5명, 그 외 6명이 기타 직렬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운전직렬은 의정팀, 속기직렬은 의정기록관리팀에 배치되어 있으며, 행정직렬은 의정기록관리팀을 제외한 4개팀의 팀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양시의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별정직)과 담당자(경력직)이며 6인의 전문위원과 10인의 담당자로 구분이 가능함
- 입법지원 전문인력과 담당자의 비율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경우 1(6급):1(7급 이하), 그 외 4개 상임위원회의 경우 1(5급):2(7급 이하)임
 - 전문위원과 담당자의 현원(또는 정원)은 16명이며 그 외 입법지원팀의 인력 3인을 추가하면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은 19명임
 - 33명의 고양시 시의회 정원과 비교하면 시의회의원 1인당 입법지원인력의 비가 0.57명, 위원회로 한정하면 시의회의원 1인당 입법지원인력의 비가 0.48명으로 적은 규모임

2. 수원시의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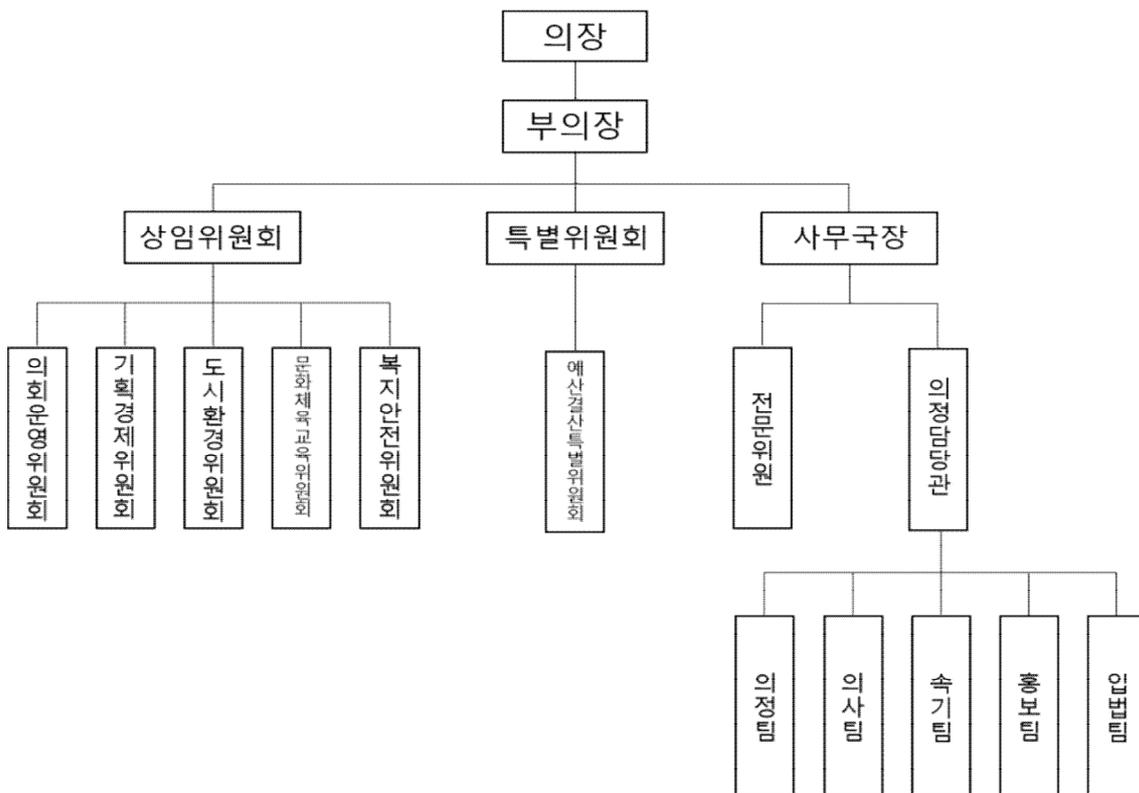
1) 수원시의회 조직구조

□ 수원시의회 조직 현황

○ 의회 구성

- 수원시의회는 의원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하여 5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상임위원회는 9~1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II-2> 수원시의회 조직구조



-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기획경제위원회는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국, 대외협력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도시정책실, 환경국,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국, 군공항이전협력국,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 복지안전위원회는 복지여성국, 안전교통국, 각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상임위원회의 소관분야를 살펴보았을 때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분야가 많으며, 분야의 구분 자체도 모호함

○ 의회 사무국 구성

-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의정담당관, 5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실이 있으며, 의정담당관 소속으로 의정팀 등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문위원실에는 운영전문위원, 기획경제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문화체육교육전문위원, 복지안전전문위원 등 상임위원회와 대응되도록 각 1인의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있음

<그림 11-3> 의회사무국 구성



- 현재 수원시의회 사무국은 1담당관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의회사무국의 구조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지위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한 사무국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음
- 정책지원전문인력인 전문위원의 경우 5개 분야에 각 1명씩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의 규모와 다양한 민원과 시정을 감독하기에는 지원인력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부족은 의회가 가지는 핵심적 기능인 양질의 정책형성 및 효율적인 시정의 관리감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시민들의 정책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 수원시의회 인력현황

□ 수원시의회 사무국 인력현황

○ 정·현원 현황

-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은 43명, 현원은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2021.6.1.기준)
- 직급별로 현원기준 3·4급 1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15명, 8급 6명, 9급 4명, 별정직 6급 상당 1명임
- 정원 외 별도인력으로 시간선택제 나급 4명, 마급 1명, 공무원 4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음

<표 II-1> 인력 구성

구분	계		일반직						별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상당
계	정원	43	1	5	10	15	6	5	1
	현원	42	1	5	10	15	6	4	1
의정팀	현원	16	1	1	2	6	3	2	1
의사팀	현원	6	-	-	2	4	-	-	-
속기팀	현원	5	-	-	3	2	-	-	-
홍보팀	현원	7	-	-	1	3	2	1	-
입법팀	현원	3	-	-	1	1	1	-	-
전문위원	현원	5	-	4	1	-	-	-	-

- 이러한 사무국 인력규모는 의원 1인당 평균 1.16명에 해당하는 직원 수를 보이고 있음
- 결국 의원 1인당 직원 1명 정도의 규모로 의원들이 수원시의 인구규모와 시정의 복잡성에 비해 의원들이 의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지원인력의 숫자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일반직 기준으로 대부분의 인력이 의정담당관실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위원에는 극소수의 인원(약 12%)이 배정되어 있어 정책지원인력의 부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인사관리

- 현행 사무국 직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본 규정에 따르면 의회사무기구 명칭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과’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II-2>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규정 별표4)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용받는 군

-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의회사무처장에 서울특별시 1급, 부산광역시 2급,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의 경우는 2급/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함
-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회사무국장장과 사무과장의 경우 각각 4급과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음
- 과장 또는 담당관의 직위에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도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함. 시·군·구는 규정 없음
- 단,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의회사무국장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수원시의회의 경우 기초의회 중 인구 100만 이상의 기준 적용을 받고 있으나, 특례시의 경우 기초의회보다는 더욱 상향된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의 기초의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특례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특히 사무국장장의 지위를 비롯하여 담당관 설치 역시 제한되어 있어 일하는 의회를 위한 뒷받침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규정개정을 통해서 특례시의 지위에 걸맞는 의회사무기구의 지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11-3>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규정 별표4)

구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특별 자치시 및 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용인시의의회 현황

1) 용인시 의정 환경

□ 1991년 3월 최초의 기초의원 선거 이후 30년 간 용인시의의회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해 왔음

- 용인시 의정수요를 반영하는 선거인수는 제1대 기초의원 선거 당시의 11만여 명에서 현재 제8대 용인시의의회 기준으로 79만여 명으로 7배 가량 증가하였음
 - 1990년대 이후 선거인수의 급격한 증가는 1차적으로 수지로 대표되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용인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용인시는 1996년 용인군에서 용인시로 승격됨에 따라 과거 수도권 남부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교통과 주거, 산업, 교육, 문화가 집적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변화하였음(정양화, 2014:16)
 - 용인시의 인구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10만이 채 되지 않았으나 1994년에 20만 명을 넘는 이후 2002년에 50만명, 2016년에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가 되었음
 - 용인시의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비율은 1991년 제1대 기초의원 선거 당시의 66.3%에서 2018년 제8대 지방의원 선거 시에는 75.4%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비율의 증가는 용인시의 경제·산업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청장년층 이상의 선거권을 지닌 인구의 유입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2005년과 2019년의 선거연령 하향으로 각각 만 19세 및 만 18세의 청소년 선거권자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수요측면의 의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의정의 공급측면을 반영하는 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그에 상응한 확장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 용인시의의회의 의원정수는 제1대 용인군 의회 당시의 14명에서 제8대 용인시의회의 29명으로 증가하여 절대적 수치 면에서는 지난 30년 간 2배 가량 증가하였음
 - 용인시의의회의 의원정수는 제1대 용인군 의회의 14명에서 제2대 의회의 16명으로 늘었다가 제3대 의회에서는 인구 및 선거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시 14명 수준으로 줄어든 이후 제4대 의회 이후 20명대를 유지하며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이러한 의원정수의 절대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폭은 인구수 및 선거인수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술하였듯이 용인시의 선거인수는 같은 기간 동안 약 7배 증가하였으며, 인구수는 약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이들 용인시민의 의정을 담당하는 의원 수는 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과 직결되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제1대 의회의 12,322.1명에서 제8대 의회에서는 36,328.3명까지 증가하였다는 점은 단순히 의원 수만 놓고 보더라도 다양화되는 의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의정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냄
 -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의원 1명이 평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정활동 분야의 폭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1대 의회의 경우 의원 1명이 대략 1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해야 함을 의미함
 - 이러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인구수가 제1대 의회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의원정수의 증가가 2배 정도에 그침으로 인해 제8대 의회에 들어서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 6천여 명에 이르게 되었음
 - 이처럼 의정환경의 공급적 측면이 위축됨으로 인해 용인시민의 다양한 의정수요가 효과적으로 의정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발생함
- 나아가 용인시의회의 선거구는 제1대 의회의 10개에서 인구 및 선거인수 변화에 따라 증감하였음에도 제8대 의회 들어서도 10개로 결과적으로 변동이 없음
 - 용인시의회의 선거구수는 제1대 의회의 10개에서 제4대 의회에서 19개로 증가한 이후 급격히 감소한 이후 제8대 의회에서는 8개 선거구로 유지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선거구당 의원수는 제1대 의회에서 1.4명이었으나 의원정수의 증가로 인해 제8대 의회에는 2.9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처럼 선거구당 의원수는 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선거구당 선거인수로 보면, 제1대 의회의 11,431.2명에서 제8대 의회의 79,487.1명으로 30년간 8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의원정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회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과소대표될 우려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I-4> 용인시의회 환경 변화(제1대~제8대 용인시의회)

의회	선거인수 ¹⁾ (인구수 ²⁾)	선거구수	의원정수(비례)	비고
제1대(1991-1995)	114,312(172,510)	10	14명	
제2대(1995-1998)	156,263(244,763)	11	16명	용인시 승격
제3대(1998-2002)	204,471(320,166)	14	14명	
제4대(2002-2006)	335,187(529,300)	19	21명	선거연령 하향 ³⁾
제5대(2006-2010)	518,432(777,849)	7	20명(비례 2)	
제6대(2010-2014)	624,528(891,708)	10	25명(비례 4)	
제7대(2014-2018)	722,964(976,883)	11	27명(비례 3)	
제8대(2018-현재)	794,871(1,053,522)	10	29명(비례 3)	선거연령 하향 ⁴⁾

출처: 용인시 통계연보(1991-2020). 용인시.

2) 용인시의회 조직구조

□ 2021년 현재 제8대 의회인 용인시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5개 위원회로 구성됨

- 본회의를 구성하는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하고 현재 제8대 용인시의회에서는 5개의 상임위원회에 7명씩의 위원을 두고 있으며 이들 위원은 위원회 간 겸임을 허용하고 있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본 회의 의결로 설치 및 운영되며,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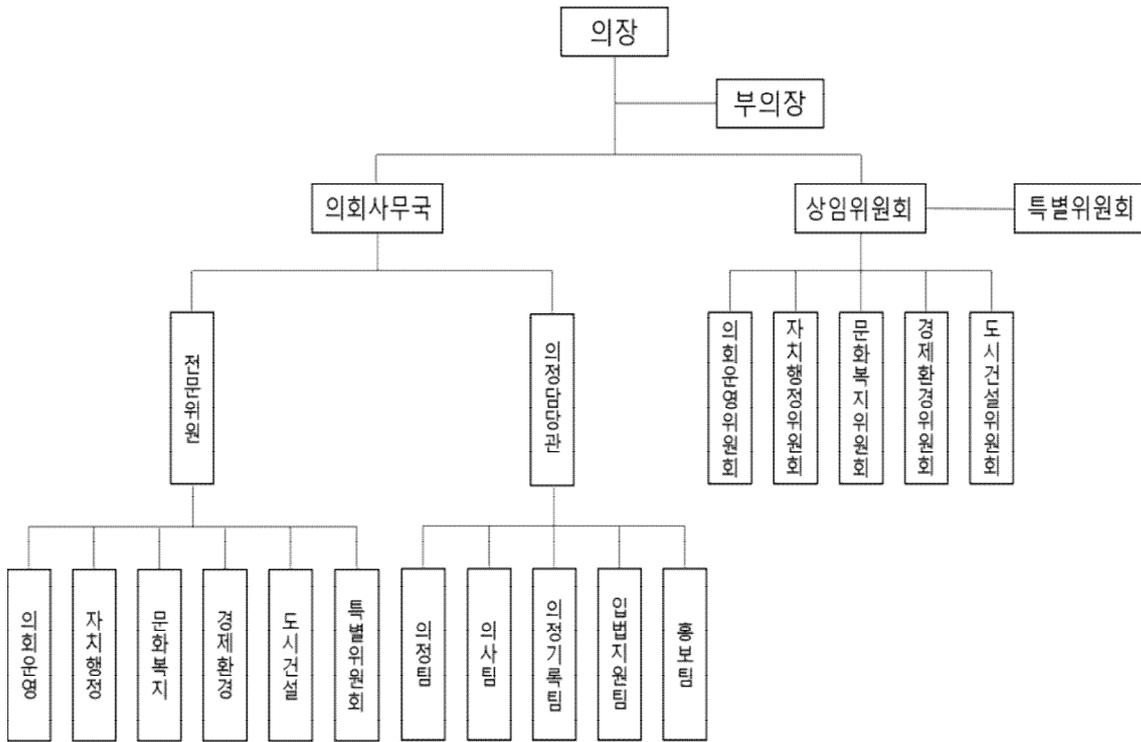
1) 선거인수는 해당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진 해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함(예: 제1대 용인시의회 선거인수는 1991년 기초의원 선거의 선거인수).

2) 인구수는 해당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진 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함(예: 제1대 용인시의회 선거 당시 인구수는 1991년 용인군의 인구수).

3) 2005년 선거권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조정됨.

4) 2019년 선거권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조정됨.

<그림 II-4> 용인시의회 조직구조



- 용인시의회 사무국은 용인시의회 및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의회사무국장 이하 의정담당관 및 전문위원제로 구성되어 있음.
 -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함(「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함(「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 의정담당관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의정팀, 의사팀, 의정기록팀, 입법지원팀, 홍보팀의 5개 팀으로 구성된 팀조직을 통해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활동을 지원하는 일반행정 기능을 담당함.
 -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각 5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로 구성함.

3) 용인시의회 인력현황

□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직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및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따름

- 의회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함
- 의회사무국의 의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혹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함
-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함(「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제2조 제1항)

□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정원은 총 37명으로 별정직이 아닌 전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직 3·4급 1명과 5급 4명, 6급 12명, 7급 13명, 8급 3명, 9급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는 일반직 3·4급 의회사무국장 1명과 의정담당관 및 3개 상임위원회(자치행정·경제환경·도시건설) 및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 4명의 5급 사무관, 2개 상임위원회(문화복지·운영) 전문위원에 2명의 6급 주사로 구성되어 있음
 - 전문위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의원 정수 35인 이하의 적용에 따라 5급 4명, 6급 4명 이하로 구성됨
 - 이외 6급 10명 및 7급 13명, 8급 4명, 9급 3명이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이하 5개 팀을 구성하고 있음
-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정원에 따라 현재 제8대 용인시의회의 의원 1인당 입법지원인력은 1.24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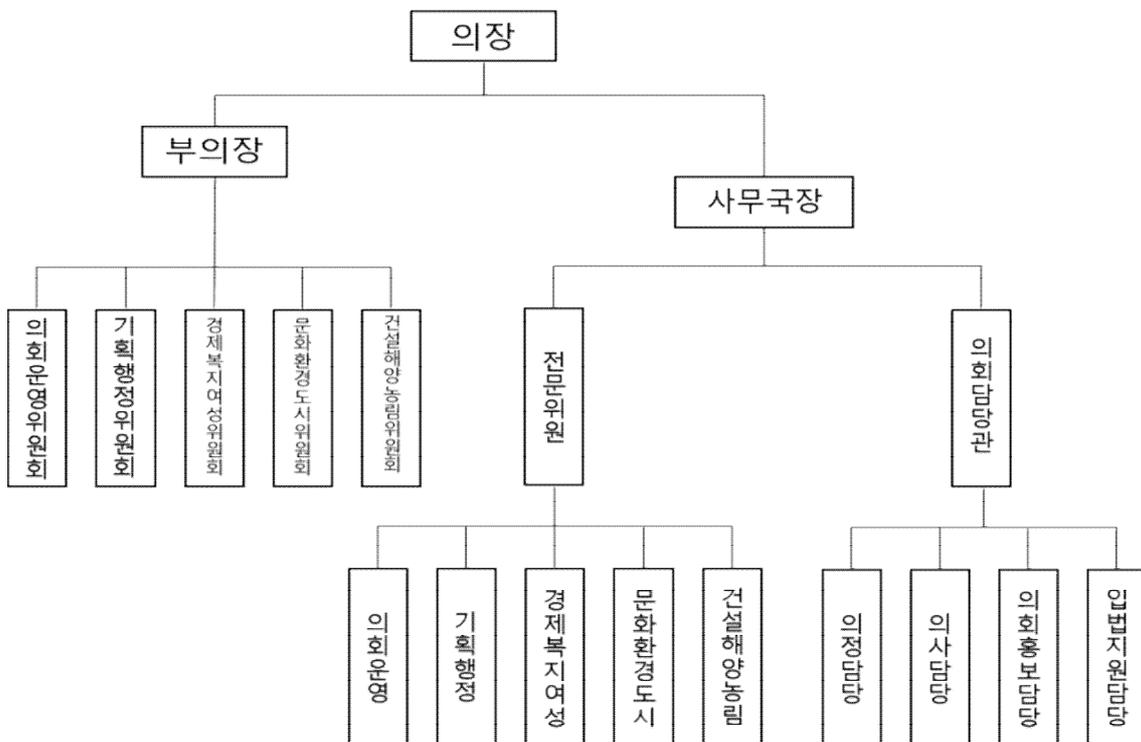
4. 창원시의회 현황

1) 창원시의회 조직구조

□ 창원시의회 구성과 역할

- 2018년 7월에 개원한 제3대 창원시의회(44명)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5개의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개의 특별위원회(예산결산), 그리고 사무처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

<그림 II-5> 창원시의회 조직도



- 이 외에도 창원시의회에는 의회가 주체가 되어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있음
- 의원연구단체는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연구 활동 완료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2021년 기준 창원시의회 연구단체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II-5>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황

단체명	목적	인원	등록일
도시발전 연구회	창원시의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한 차별화된 도시문화 및 상생발전 모형 제시	11명	'18.08.23
창원시 역사, 문화 연구회	창원시 역사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창원시 역사와 문화정책을 시정에 반영	8명	'18.08.23
관광·축제마케팅 연구회	관광 및 축제에 대한 마케팅 분석을 통한 방향 제시/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1명	'18.09.18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 연구회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며 시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창원시 정책연구와 실천 도모	7명	'21.01.19

□ 창원시의회 사무국 조직구조

-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의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의회에 설치함.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함
 - 사무국장은 의장을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함
 - 창원시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5), 의회담당관(1) 소관 4개(의정담당, 의사담당, 의회홍보담당, 입법지원담당)의 팀으로 구성됨. 이 가운데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는 입법지원팀을 제외한 3개팀이 의회의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사무국장 밑에 의회담당관을 두고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임명함
-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별 직급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II-6> 창원시의회 사무국 전문위원별 직급 현황

위원회명	직위	직급(5급)	직급(6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보건주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환경주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2) 창원시의회 인력현황

□ 창원시의회 인력현황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이며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실,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서울사업소,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이며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구청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이며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이며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표 11-7> 창원시의회 위원회의 역할

구분	역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 8인)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의 의안을 처리하고 소관부서의 조례안, 예산·결산 등의 의안, 동의안, 진정 등의 심사업무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업무 등을 처리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정수 10인)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실,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서울사업소,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등을 담당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정수 11인)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구청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정수 11인)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정수 11인)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함

□ 창원시의회 사무처 인력구성

○ 2021년 기준 창원시의회 사무국 정원은 총 46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는 3·4급에서 9급의 계층제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일반직 공무원의 직제는 3·4급(1명), 5급(6명), 6급(11명), 7급(12명), 8급(10명), 9급(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2021년 기준)
- 연도별 창원시의회 사무국 인력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II-8> 연도별 창원시의회 사무국 인력구성현황

구분	합계	별정직	일반직							전문 경력관	기능직
			3급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8	44	-	-	1	6	11	11	9	5	1	-
'17	44	-	-	1	6	11	11	9	5	1	-
'16	44	-	-	1	6	11	11	9	5	1	-
'15	44	-	-	1	6	10	11	10	5	1	-
'14	46	-	-	1	6	10	12	11	5	1	-
'13	56	-	-	1	7	12	16	12	7	1	-
'12	56	1	-	1	7	12	15	6	-	-	14
'11	60	1	1	-	6	14	19	1	-	-	18
'10	60	1	1	-	6	13	15	4	-	-	20

자료: 창원시 기본통계

Ⅲ. 벤치마킹 사례 분석

1. 경기도의회 사례

1) 경기도의회 조직구조

□ 경기도의회 조직 현황

○ 의회 구성

- 경기도의회는 의원 142명(지역구의원 129명, 비례대표 13명; 제10대 경기도의회 기준)으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됨
-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며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됨
 - 12개의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 기획재정, 경제노동,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농정해양, 보건복지, 건설교통, 도시환경, 여성가족교육협력, 교육기획, 교육행정 등의 소관분야로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음
 - 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
- 각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음

<표 III-1> 경기도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상임위원회명	소관부서
의회운영위원회 (15명)	의회사무처,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경기도중앙협력본부
기획재정위원회 (13명)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
경제노동위원회 (14명)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안전행정위원회 (13명)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인권담당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14명)	문화체육관광국,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체육회
농정해양위원회 (11명)	농정해양국,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산림과, 경기도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보건복지위원회 (11명)	보건복지국,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건설교통위원회 (14명)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도교통연수원
도시환경위원회 (14명)	환경국,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수자원본부(공원녹지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경기주택도시공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11명)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청소년수련원
교육기획위원회 (13명)	대변인,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행정위원회 (13명)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의 수는 최소 11명에서 최대 15명으로 위원회 당 평균 12.2명으로 구성됨

○ 의회 사무처 구성

- 경기도의회사무처는 7담당관과 13개의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담당관에는 총무, 언론홍보, 의사, 도민권익, 의정기획, 입법정책, 예산정책담당관 등이 포함됨

<그림 III-1>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및 전문위원실 구성

조직도



전문위원

의회운영	기획재정	경제노동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농림해양	보건복지	건설교통
도시환경	여성가족평생교육	교육기획	교육정책
특별			

- 도민권익담당관실은 도민의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업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경우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분석 등 도 및 교육청의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임
 - 전문위원실에는 12개 상임위원회에 대응되는 전문위원실이 있으며 여기에 특별전문위원실이 설치되어 있음
- 경기도의회사무처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규모가 큰 지역의 의회답게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세분화·구조화시켜서 사무처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도민권익담당관이나 예산정책담당관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을 전담하는 부서와 예산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석하는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2) 경기도의회 인력현황

□ 경기도의회 사무처 인력현황

○ 정·현원 현황

- 현재 경기도의회사무처는 조례 상 정원이 278명, 현원이 268명(2021년 3월 29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직급별로 정원기준 2-3급 1명, 4급 16명, 5급 이하 254명이며, 전문경력관 1명, 별정직 4급 상당 2명,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사무처의 인력규모는 의원 1인당 평균 1.96명으로 약 2명 정도의 직원이 분포하고 있음
- 7개의 담당관에 최소 16명(입법정책담당관)에서 최대 69명(총무담당관)까지 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당관 당 평균 36.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도민권익담당관의 경우 54명으로 담당관 중 2번째로 많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업무 대응과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도의 예산과 재정분석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예산정책담당관의 인력규모는 21명임
- 경기도의회의 전문위원실은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전문위원실은 7-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전문위원회실별로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함께 구성하여 정책지원업무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음
-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기구는 기초의회에 비해 훨씬 풍부한 인력과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특히 분야별 담당관이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민권익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등 도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응과 전문적 분야의 지원이 가능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전문위원회별로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포함시켜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인사관리

-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라는 점에서 기초의회와는 차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은 ‘의회사무처’로 기초议회의 ‘의회사무국’ 혹은 ‘의회사무과’와 다름
 -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4】의회사무기국의 설치기준)
- 의회 사무처장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담당관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함
 - 이는 현재 기초의회보다 1-2직급씩 높은 직급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임

2. 서울특별시의회 사례

1) 서울시의회 조직구조

□ 서울시의회는 의원 110명(지역구의원 100명, 비례대표 10명: 제10대 서울시의회 기준)으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됨

○ 위원회는 10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됨

-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도시계획관리, 교통, 교육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기타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구성되며,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소관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함

○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임

- 현재 총 10개의 상임위원회에 평균 12.1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음

<표 III-2> 서울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상임위원회명	소관부서
운영위원회 (13명)	시의회사무처,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행정자치 위원회(12명)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스마트도시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평생교육국,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비상기획관, 재무국, 인재개발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서울장학재단,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제 위원회(13명)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수자원 위원회(13명)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
문화체육관광 위원회(11명)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관광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서울역사편찬원, 120다산콜재단
보건복지 위원회(9명)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의료원, 서울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재)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도시안전건설 위원회(13명)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도시계획관리 위원회(13명)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기획단
교통 위원회(11명)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교육 위원회(13명)	서울시교육청, 각급교육지원청

□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12개의 기타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과 결산, 서울시 기금운영계획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다룸
- 기타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설치·운영하며, 위원수는 15인의 범위내로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를 존속기간으로 함
 - 현재 총 12개의 기타 특별위원회에 평균 16.2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음
 - 최소 위원 참여 수는 12명이며, 최대 위원 참여 수는 37명임
 - 각 기타 특별위원회 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살펴보면, 기획경제위원회가 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보건복지위원회(2건), 행정자치위원회(2건), 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각1건) 순으로 나타났음

- 각 기타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윤리특별위원회 3차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III-3> 서울시 특별위원회 활동현황

특별위원회명	소관 상임위원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15명)	기획경제위원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2차 (15명)	기획경제위원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14명)	보건복지위원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13명)	교통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15명)	보건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3차 (14명)	행정자치위원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15명)	기획경제위원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14명)	행정자치위원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6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12명)	운영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14명)	기획경제위원회
항공기소음 특별위원회 (37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이 외에도 서울시의회에는 의회가 주체가 되어 의정 및 정책관련 연구·분석·평가를 수행하는 별도의 위원회로 정책위원회 및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있음

○ 정책위원회는 의정활동 및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의안발굴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현재 1년 임기(연임가능)의 총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 4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정책위원회의 소위원회로는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가 있음

○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의정활동 및 서울시 주요정책의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과 주요 시책의 재정분석·평가, 재정 관련 정책대안발굴 및 연구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현재 1년 임기(연임가능)의 총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특정한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활동을 위해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됨
 - 연구단체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음
 -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비 지원

□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는 의회사무처장 이하 1인의 입법정책자문관과 7개의 담당관과 13개의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담당관에는 언론홍보실과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교육협력관실이 있음
- 전문위원실로는 운영전문위원실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10개의 전문위원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 예결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전문위원실은 의사지원팀과 입법지원팀으로 구성됨
 - 이 중 교육전문위원실은 의사지원팀과 입법지원팀에 더해 교육지원팀을 따로 두고 있음

<그림 III-2> 서울시의회 사무처 조직구조 현황



2) 서울시의회 인력현황

□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총정원 34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 정원 345명 중 일반직은 총 336명이며 별정직은 총 9명으로 구성됨

- 일반직은 의회사무처장인 1급 관리관 1명과 4급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17명, 5급 46명, 6급 106명, 7급 111명, 8급 48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4명으로 구성됨

- 별정직은 4급 상당 2명과 5급 상당 4명, 7급 상당 1명, 8급 상당 2명으로 구성됨

○ 이러한 의회사무처의 인력규모를 고려할 때, 서울시 의원 1인당 입법지원인력은 평균 3.14명임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사례

1) 세종시의회의 조직구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는 18명의 시의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에 5명 또는 6명이 전임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의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결적으로 의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자치분권, 문화체육, 보건복지 등에 관한 사무를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산업, 건설교통, 환경녹지 등에 관한 사무를,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는 안전 및 소방과 지방교육청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사무와 관련하여 소방업무를 그리고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시교육청의 교육업무를 교육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로 하고 있음
 -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과 기존 지방직이었던 경찰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의 소관 부처의 변경 및 확장의 가능성이 있으며, 중등교육 이하의 교육 관련 사무가 광역 지자체 단위의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청의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국가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 세종시의회의 인력현황

□ 세종특별자치시의 의회사무기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원은 39명이며, 직제는 2급에서 8급의 계층제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 (2020년 현재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정원은 43명임)

- 의회사무처의 조직구조는 2담당관, 4전문위원이며, 2담당관은 각각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행정지원과 입법지원의 기능 구분이 이루어져 있음

- 직렬별 분포는 일반직 35명, 소방직 1명, 별정직 3명이며, 일반직의 경우 2·3급의 지방이사관·부이사관이 사무처장으로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함
- 각 상임임원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등의 4급 일반직 및 4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각 1인의 전문위원을 교육안전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각각 2인의 전문위원(4급 1인, 5급 1인)을 두고 있음
- 의회운영위원회는 1인의 전문위원과 4인의 담당 주무관(총 5명), 행정복지위원회는 1인의 전문위원과 7인의 담당 주무관(총 8명), 산업건설위원회는 2인의 전문위원과 7명의 담당 주무관(총 9명), 교육안전위원회는 2인의 전문위원과 8인의 담당주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음(총 10명). 이 중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의 소속인력임
- 의회사무처의 경우 1사무처장, 2담당관(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5담당(운영지원담당, 홍보기획담당, 정책담당 이상 의정담당관 지휘, 의사기록담당, 입법지원담당 이상 의사입법담당관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무처장의 경우 2·3급, 담당관의 경우 5급의 직급을 가지고 있으며, 6급 이하 주무관의 경우 일부 정원이 시설 및 안전 직렬에, 속기의 경우 8급을 최하 직급으로 정원을 구성하고 있음

4. 기타 광역시의회

1)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광역시의회 조직

○ 의회구성

-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원 37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6개의 상임위원회와 6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의회사무처 구성

- 조례상 정원은 105명, 현원은 116명이며, 의원 1인당 평균 2.8명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는 3담당관이 있으며 7개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문위원회실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울산광역시의회

□ 울산광역시의회 조직

○ 의회구성

- 울산광역시의회는 의원 22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5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의회사무처 구성

- 조례상 정원은 64명, 현원은 76명이며, 의원 1인당 평균 직원수는 2.9명임
-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는 2담당관(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6개의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전문위원회실은 1인의 전문위원과 약 3-4명 정도의 담당관들로 구성되어 있음

3) 대구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의회 조직

○ 의회구성

- 대전광역시의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회는 5개의 상임위원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의회사무처 구성

- 직원 수는 84명이며, 의원 1인당 평균 직원 수는 약 3.8명임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는 3담당관(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실)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개의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전문위원회실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직

○ 의회구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 41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회는 7개의 상임위원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의회사무처 구성

- 조례상 정원은 131명, 현원은 177명이며, 의원 1인당 평균 직원 수는 약 3.2명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는 4담당관(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책입법담당관, 공보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8개의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전문위원회실은 1인의 전문위원과 2-3인의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5. 시사점

□ 현행 기초의회로 구분되어 있는 특례시 의회와 광역의회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기본적인 의정환경 및 의회구조, 인력환경을 토대로 비교할 때 특례시의 의정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은 명확함

- 광역의회의 경우 현재 특례시의회에 비해 인력규모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의원 1인당 평균 직원 수는 약 2명으로 특례시의회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인력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담당관과 정책지원인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광역시의회의 특례시의회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지원인력의 숫자도 많음
- 단순히 의원 1인당 입법지원인력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서울시의회의 3.14명에 비해 용인시의회의 1.24명은 광역과 기초의회의 활동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차이라 할 수 있음
 - 광역의회 의원은 실질적으로 기초의회의 지원 및 연계활동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특례시 의회 의원의 의정부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구 30만 (50만 이하), 시의회 의원 정수 18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명 이하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인구수 대비 자치의원 정수가 결정되지 않은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임

-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의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의 물리적 경계의 관할권역이 비교적 넓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특성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고려하여 의원정수를 결정하고 있음
 - 경기도와 경남도의 기초의회의 경우 경기도는 의원1인당 인구수가 3만명, 경남은 인구 1인당 1.2만명 규모로 경기도는 인구대비 기초의원의 수가 과소하고 경남은 특별자치시도의 규모와 유사한 수준임
 - 경기도의 경우 수원, 고양, 용인의 특례시 지정시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명을 초과하여 1인당 인구수 2만명을 기준으로 하는 광역시의 광역 및 기초의회와 비교하여 의원정수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창원시의 경우 경남도의 의원 1인당 인구수 1.2만명은 인구수가 적은 군지역을 제외하면 평균 2만명으로 확대되며, 이는 광역시보다 많은 인구 대비 적은 시의원 정수가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울산광역시가 50명, 의원 1인당 인구수 2.3만명임을 가정할 경우 자치위원 정수의 확대 기준도 인구수 2만명에서 2.5만명 당 1인의 시의원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45명이며 그 외 시간선택제, 교육청소속, 실무 및 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한 현원은 68명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담당 주무관의 총수는 32명이며, 시의회 의원 1인당 1.7명의 전담 인력이 입법활동 지원 인원으로 배정되어 있음
 - 세종시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의 입법지원 인력을 포함한 입법보좌인력은 총 36명으로 확대되며, 이 경우 시의회 위원 1인당 2인의 전담인력이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고양시 등이 시의원 1인당 0.5명의 입법지원인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특례시의회의 입법활동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충은 시의원 1인당 1.5명 이상(또는 2명 이하)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음

- 경기도의회는 경우 도민권익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 부서의 주요 업무는 민원대응, 도민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는 곧 도민의 의정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따라서 도민권익담당관과 같은 도민 민원대응 및 의견수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고려해 볼 만함

□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음

- 경기도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예산정책담당관의 경우 예산정책의 수립·조사·분석, 재방재정운용 및 경제동향 분석, 지역경제동향 분석 등 예산 및 재정 분석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임
- 의회의 예산정책처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임
- 특례시의회 역시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분석 등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수요와 예산규모 등에 대비해서 예산담당부서의 설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풍부한 정책보좌인력의 확보

- 정책보좌인력으로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실에 배치하여 현재의 특례시의회에 비해 더욱 풍부한 입법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질 높은 정책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광역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지원 혹은 보조하기 위한 각종 특별위원회 및 연구단체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례시의회의 발전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입법 사무국 혹은 사무처를 비롯한 입법지원인력의 정원 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바, 타 기초의회 및 기존 광역의회와의 조정을 필요로 함으로 우선적으로 서울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 및 정책위원회, 예산연구위원회와 같은 연구단체 혹은 특별위원회 조직 구성권한 확보를 통해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으로 특례시의회의 입법연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IV. 특례시 의정환경분석 및 의정활동전략도출

1. 특례시 지정에 따른 의정활동 목표설정

□ 2020년 12월 9일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라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됨

○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기존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추가적인 특례를 인정하도록 규정함

- 고양시의 인구는 약 108만 명(2021년 6월말 기준), 수원시는 121만 명(2021년 5월말 기준), 용인시는 109만 명(2021년 4월말 기준), 창원시는 103만 명(2021년 6월말 기준) 임

□ 의정활동 목표 1: 규모와 권한의 일치를 통한 특례시민 권익 향상

○ 인구 50만 이상의 기존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특례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의 기능 및 권한 재정립 필요

□ 의정활동 목표 2: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민주적 통제 강화

○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통합형 자치단체가 가능해짐에 따른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의정활동 목표 3: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주거·교육·산업·문화 전반에 걸친 의정수요의 다양화 및 증가하는 지역·계층·집단 간 갈등에 대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성 강화 요구

2. 특례시 의정환경에 대한 SWOT 분석: 특례시 공통

<표 IV-1> 특례시 공통 SWOT 분석 결과

의정환경		의정역량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시 수준의 청원수리 역량 및 노하우 축적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적 관계 구축
기회(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법적 명시 주민투표에 따른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변화 가능성 		역량강화(SO)	기회포착(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직 신설 및 인사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입법지원역량의 전문화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 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와의 권한 조정 문제 인구연동 특례시 지정요건의 제약 		선택집중(ST)	약점보완(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능중심의 특례시 인정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 확대 방안 모색 의회 산하 권익담당조직을 통한 공약 이행점검 및 특례시민 청원수리 효과성 증진 	

<표 IV-2> 특례시 공통의 의정활동 목표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 롤링

의정활동 목표	의정활동 전략
규모와 권한일치를 통한 특례시민 권익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민주적 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직 신설 및 인사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입법지원역량의 전문화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능중심의 특례시 인정방안 모색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산하 권익담당조직을 통한 공약 이행점검 및 특례시민 청원수리 효과성 증진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확대 방안 모색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1) 특례시 공통의 의정환경

□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명시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의 강시장-의회형 기관 대립형 자치단체 구성을 특례시의회 의장을 자치단체장으로 하는 기관통합형 등 지역의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례시의회의 권한이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전환기에 접어들었음

○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음

○ 또한, 동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기존 법에서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완전한 형태의 독립적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 한편, 동법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특례시는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인구기준을 통한 일종의 특례적 지위 인정으로 인해 제도적 불완전성 역시 지니고 있음

○ 우선, 동법은 특례시 지정에 대한 사항만을 특례조항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기존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방정부 구조에서 특례시의 법·행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기존 지방정부 구조 하의 광역의회와 심의권 등에 대한 권한조정 문제를 안고 있음

○ 또한, 인구 100만이라는 법적 특례시 지정요건은 인구변동에 따라 특례시의 당연 지정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규모와 권한의 일치를 통한 주민권의 향상이라는 특례시 지정의 근거가 유동적일 수 있어 지방자치법에서 구현하려 하는 지방자치 및 분권에 역행할 우려 역시 존재함

2) 특례시 공통의 의회조직 역량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새롭게 특례시로 지정된 4개시는 지방의회 및 의회조직의 역량과 관련하여 그동안 급격하게 증가하는 도시 및 인구규모에 대응하여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4개 특례시는 공통적으로 급격한 주민수의 증가 및 이와 동반한 산업, 문화, 교육,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광역시 수준의 의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존의 한정적인 의원조직 및 입법지원인력으로 최선의 대주민 의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음
- 그럼에도 특례시의회 모두 집행기관과의 긴밀하고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주민 권익 향상에 기여해온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금번 특례시 지정을 통해 그동안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기초자치단체가 겪어왔던 법적·행정적인 역량의 제약 역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 의정환경 변화 및 수준에 걸 맞는 의정활동 지원이 지극히 미비하다는 점임

- 특히, 그간 의정활동 수준이 광역시 규모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기초의회라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의원 개인 및 입법지원인력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미비했으며, 이러한 점은 특례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령 및 조례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음

3) 특례시 공통의 SWOT분석 결과

□ 기회(Opportunity)

-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의 법적 명시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방의회의 권한 및 기능을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주민투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변화 가능성
 - 지방자치법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겸하고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기관통합형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만이 아닌 집행기관의 구성 및 통제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로서 지방의회의 권한 및 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가능성을 지님

□ 위협(Threat)

○ 광역의회와의 권한 조정 문제

- 새롭게 지정된 특례시는 기존의 광역-기초지방정부의 틀에서 법적·행정적 지위가 여전히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자칫 특례시의회의 제도적 정립이 이루어지기 전에 광역의회와의 인사교류 및 권한 조정문제에 있어 협력적 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인구연동 특례시 지정요건의 제약

- 특례시의 지정요건이 인구 규모 100만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바, 현재의 증장기적 총인구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 외부요인인 인구 규모만을 법정 기준으로 함으로 인해 특례시의 지정근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강점(Strength)

○ 광역시 수준의 청원수리역량 및 노하우 축적

- 새롭게 지정된 4개의 특례시는 공통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구의 개발로 기존의 구도시가 유지된 채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어 광역시와 동일한 규모와 다양성으로 의정수요가 발생하는 바, 기존의 제한된 의원정수 및 입법지원인력 규모로 이러한 급격한 의정수요 변화에 대해 어떤 기초의회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적 관계 구축

- 의정수요의 규모에 비해 열악한 의정환경에도 불구하고 4개 특례시가 광역시 수준의 의정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기초의회임에도 집행기관과 안정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시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약점(Weakness)

○ 의정활동 수준에 비해 의회 및 의원 개인의 권한 미비

- 도시 규모 확대에 따라 광역시 수준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광역의회에 크게 미치지 못 하는 기초의회 수준의 의회권한 및 의원 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다양화하고 있는 의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 입법지원인력의 절대적 부족 및 인사상 제약

- 광역의회 경우, 의원 1인당 입법지원인력이 평균 2.9명임에 반해 특례시는 유사 규모의 의정수요를 감당함에도 입법지원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사경력상 각종 제약조건들로 인해 우수한 인재의 지속적인 유인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4) 특례시 공통의 의정활동 전략

□ 역량강화(S-O 전략)

○ 의회직 신설 및 인사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입법지원역량의 전문화

- 의회직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정환경상의 기회요인을 통해 그동안 4개 특례시에서 쌓아온 광역시 수준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지원인력을 의회직으로 신설하고 이들을 선발·교육훈련·승진·징계하기 위한 전문 인사담당기구를 두어 입법지원역량을 전문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통합형 기관구성이 가능하게 된 의정환경상의 기회요인을 통해 기존의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적 관계를 통한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통해 행정구인 일반구의 구청장의 임면과정에 특례시의회의 권한요소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기회포착(W-O 전략)

○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통합형 기관구성이 가능하게 된 의정환경상의 기회요인을 통해 기존의 의정활동 수준에 미비한 의회 및 의원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통합형 달성 시의 의장이 시장을 겸임하는 상황에 준하여 잠재적인 자치단체장 혹은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으로서 지방의원 개인의 권한 및 보수수준을 정하고 집행부를 통할할 수 있는 지방의회 권한에 대한 의회연구

단체를 통한 연구 및 조례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 의회직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정 환경상의 기회요인을 통해 기존 특례시의 입법지원인력 부족 및 인사상 제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정원을 광역시 규모에 걸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조례안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함

□ 선택집중(S-T 전략)

○ 광역의회의 심의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 특례시 지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및 권한위임에 대한 거부감이 의정 환경상의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광역시 수준의 청원수리역량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의정역량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심의권한과 같이 광역의회가 심의하는 권한 중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것을 이양 받는 전략이 필요함

○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능중심의 특례시 인정방안 모색

- 인구변동에 따라 특례시 지정이 당연 취소될 수 있는 의정환경상의 위협요소가 존재하므로 기존의 특례시가 구축한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적 관계의 강점을 살려 특례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역량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변동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지정기준을 기능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약점보완(W-T 전략)

○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 확대 방안 모색

- 특례시 지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및 권한위임에 대한 거부감이 의정 환경상의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특례시의 의정활동수준에 비해 미비된 의회 및 의원 개인권한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정수 기준을 기존의 인구수 비례로 적용하는 대신 특례시 지정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동 등 행정 및 의정기능이 수행되는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여 특례시의회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

요가 있음

- 의회 산하 권익담당조직을 통한 공약이행점검 및 특례시민 청원수리 효과성 증진
 - 인구변동에 따라 특례시 지정이 당연 취소될 수 있는 의정환경상의 위협요소가 존재하므로 기존의 입법지원인력의 부족 및 인사상 제약으로 인한 의정역량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 산하 권익담당조직을 신설하여 공약이행을 점검하고 특례시민의 청원수리 효과성을 높여 주민의 의정만족도를 제고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특례시 공통의 SWOT 의정활동 목표에 따른 전략롤링

- 규모와 권한일치를 통한 특례시민 권익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전략
 - 광역의회의 심의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
 - 의회직 신설 및 인사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입법지원역량의 전문화
 -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능중심의 특례시 인정방안 모색
-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의정활동 전략
 - 의회 산하 권익담당조직을 통한 공약이행점검 및 특례시민 청원수리 효과성 증진
 -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확대 방안 모색
 - 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3. 특례시 의정환경에 대한 SWOT 분석: 고양특례시

<표 IV-3> SWOT 분석결과를 반영한 고양특례시 의정활동 전략도출

의정환경		의정역량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시 수준의 청원수리 역량 및 노하우 축적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적 관계 구축
기회(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구 증가 추세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의정수요 형성 	역량강화(SO)		기회포착(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교육 및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수준에 비례하는 의원정수 확대 입법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보상체계 개선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위임에 따른 부담증가 자립적인 재정생태계 조성의 한계 	선택집중(ST)		약점보완(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직 신설 및 인사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입법지원역량의 전문화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활동비 정상화 전자문서시스템 및 디지털 의회 추진 	

<표 IV-4> 고양특례시의 의정활동 목표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 롤링

의정활동 목표	의정활동 전략
규모와 권한일치를 통한 특례시민 권익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직업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활동비 정상화 인구수준에 비례하는 의원정수 확대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민주적 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직 신설 및 인사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입법지원역량의 전문화 입법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보상체계 개선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및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전자문서시스템 및 디지털 의회 추진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1) 고양특례시의 의정환경

□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산서구의 3개 일 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6월말 기준 인구는 총 108만 736명임

- 2014년 처음으로 특례시 지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100만 명을 넘은 이후 지속 적이고 안정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고양특례시민의 다수는 인근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며 이로 인해 고양특례시의 의정수요는 교육과 교통, 건설 등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2) 고양특례시의 의회조직 역량

□ 고양특례시의회의 의원정수는 현재 제8대 의회 기준으로 총 33명이며, 이 중 지역 구 의원이 29명, 비례대표가 4명임

-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지원기구로서 의회사무국이 있으며, 사무국장 을 비롯하여 3실 5팀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정원 총 50명)
 - 의원 1명당 입법지원인력 비율은 1.52명임

3) 고양특례시의 SWOT분석 결과

□ 기회(Opportunity)

-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구 증가 추세
 - 고양특례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의정수요의 기반이 되는 정주민구수가 2014년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음
-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의정수요 형성
 - 고양특례시는 대표적인 교육 및 정주도시로서 특례시민들의 의정수요 분야가 교육 및 교통, 건설 등으로 비교적 동질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는 의정활동 역시 안정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님

□ 위협(Threat)

○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위임에 따른 부담 증가

-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지정 후 현재 검토 중인 700여개 사무 중 교통과 환경 분야 등의 300개 이상의 사무가 이관될 것으로 계획 중이며, 이로 인한 조례입법수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자립적인 재정생태계 조성의 한계

- 고양특례시의 경우, 도시의 재정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산업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립도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광역수준의 특례시 의정권한 및 기능을 확대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강점(Strength)

○ 광역시 수준의 청원수리역량 및 노하우 축적

○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적 관계 구축

□ 약점(Weakness)

○ 의정활동 수준에 비해 의회 및 의원 개인의 권한 미비

- 고양특례시는 인구가 5만 명이 넘는 행정동이 5개나 되는데 비해 유사한 인구수의 울산과 비교하여(총 50명) 의원정수가 33명에 불과함

○ 입법지원인력의 절대적 부족 및 인사상 제약

- 고양특례시의 의원 33명에 대한 입법지원인력은 총 50명으로 의원 1인당 1.52명에 불과해 광역의회의 의원 1인당 2.9명에 턱없이 부족함

4) 고양특례시의 의정활동 전략

□ 역량강화(S-O 전략)

○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 교육 및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 기회포착(W-O 전략)

- 인구 수준에 비례하는 의원정수 확대
- 입법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보상체계 개선

□ 선택집중(S-T 전략)

- 의회직 신설 및 인사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입법지원역량의 전문화
-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 약점보완(W-T 전략)

- 직업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활동비 정상화
- 전자문서시스템 및 디지털 의회 추진

5) 고양특례시의 SWOT 의정활동 목표에 따른 전략틀링

□ 규모와 권한일치를 통한 특례시민 권익향상을 위한 고양특례시 의회의 활동전략

-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 직업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활동비 정상화
- 인구 수준에 비례하는 의원정수 확대

□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

- 의회직 신설 및 인사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입법지원역량의 전문화
- 입법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보상체계 개선

□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의정활동 전략

- 교육 및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 전자문서시스템 및 디지털 의회 추진
-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4. 특례시 의정환경에 대한 SWOT 분석: 수원특례시

<표 IV-5> SWOT 분석결과를 반영한 수원특례시 의정활동 전략도출

의정환경		의정역량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시 수준의 청원수리 역량 및 노하우 축적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적 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활동 수준에 비해 의회 및 의원 개인의 권한 미비 입법지원인력의 절대적 부족 및 인사상 제약
기회(O)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류 가능성 의정환경 개선에 대한 특례시민들의 높은 기대감 	역량강화(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직 신설 및 광역의회와의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인력전문성 강화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기회포착(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선택집중(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광역의회와 유사한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입법조사기구 체계구성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 	약점보완(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 확대 방안 모색 의회 산하 권익담당관제를 통한 공약 이행점검 및 특례시민 청원수리 효과성 증진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와의 권한조정 문제 도시 내 의정수요의 편차가 큼 				

<표 IV-6> 수원특례시의 의정활동 목표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 롤링

의정활동 목표	의정활동 전략
규모와 권한일치를 통한 특례시민 권익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민주적 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직 신설 및 광역의회와의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인력전문성 강화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 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산하 권익담당조직을 통한 공약 이행점검 및 특례시민 청원수리 효과성 증진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확대 방안 모색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광역의회와 유사한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입법조사기구 체계구성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

1) 수원특례시의 의정환경

□ 수원특례시는 4개 특례시 중 시로 지정된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경기도의 도청 및 의회가 소재하고 있고 장안구 및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의 4개 일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기준 인구는 총 118만 5,532명으로 특례시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1949년 처음으로 시로 승격한 이후 수원특례시의 인구는 2014년에 울산광역시를 넘어섰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수원특례시는 서울에 인접한 다른 수도권 도시와 같이 서울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및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각 행정구별 특례시민의 의정수요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편임

2) 수원특례시의 의회조직 역량

□ 수원특례시의회의 의원정수는 현재 제11대 의회 기준으로 총 37명임

-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지원기구로서 의회사무국이 있으며, 사무국장, 1담당관, 5팀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정원 총 43명)
 - 의원 1명당 입법지원인력 비율은 1.16명임

3) 수원특례시의 SWOT분석 결과

□ 기회(Opportunity)

- 광역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류 가능성
 - 수원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청 및 광역의회의 소재지로 지리적 근접성 및 의정환경의 유사성 측면에서 경기도 내의 다른 특례시에 비해 의정활동 상 교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의정환경 개선에 대한 특례시민들의 높은 기대감
 - 수원특례시는 4개 특례시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특례시

민이 의회를 통한 지방자치활성화 및 이를 위한 의정환경 개선에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위협(Threat)

○ 광역의회와의 권한 조정문제

- 수원특례시는 경기도 광역의회의 소재지인 동시에 정치·행정적으로 중심적 지위를 지니는 도시로서 수원특례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와의 권한 조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도시 내 의정수요의 편차가 큼

- 수원특례시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동일 도시 내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의정수요에 대한 편차 역시 다양하고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 규모의 의정수요를 현재의 기초수준의 의회규모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음

□ 강점(Strength)

- 광역시 수준의 청원수리역량 및 노하우 축적
-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적 관계 구축

□ 약점(Weakness)

○ 의정활동 수준에 비해 의회 및 의원 개인의 권한 미비

- 수원특례시는 기초의회 중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수준이 두 번째로 높은 편임에도 광역의회 수준과는 여전히 편차가 큼

○ 입법지원인력의 절대적 부족 및 인사상 제약

- 수원특례시의회는 의원 1인당 입법지원인력이 1.16명임

4) 수원특례시의 의정활동 전략

□ 역량강화(S-O 전략)

- 의회적 신설 및 광역의회와의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인력전문성 강화
-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 기회포착(W-O 전략)

-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 선택집중(S-T 전략)

-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 광역의회와 유사한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입법조사기구 체계구성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

□ 약점보완(W-T 전략)

-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 확대 방안 모색
- 의회 산하 권익담당관제를 통한 공약이행점검 및 특례시민 청원수리 효과성 증진

5) 수원특례시의 SWOT 의정활동 목표에 따른 전략틀링

□ 규모와 권한일치를 통한 특례시민 권익향상을 위한 고양특례시의회의 활동전략

-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

- 의회직 신설 및 인사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입법지원역량의 전문화

-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의정활동 전략
 - 의회 산하 권익담당관제를 통한 공약이행점검 및 특례시민 청원수리 효과성 증진
 -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 확대 방안 모색
 -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 광역의회와 유사한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입법조사기구 체계구성을 통해 의정 활동 역량 강화

5. 특례시 의정환경에 대한 SWOT 분석: 용인특례시

<표 IV-7> SWOT 분석결과를 반영한 용인특례시 의정활동 전략도출

의정환경		의정역량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시 수준의 청원수리 역량 및 노하우 축적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적 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활동 수준에 비해 의회 및 의원 개인의 권한 미비 입법지원인력의 절대적 부족 및 인사상 제약
기회(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구 증가 추세 의정환경 개선에 대한 특례시민들의 높은 기대감 	역량강화(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직 신설 및 인사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입법지원역량의 전문화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 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기회포착(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선택집중(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능중심의 특례시 인정방안 모색 	약점보완(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 확대 방안 모색 재정 및 법률 담당 전문직 인력의 유치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와의 권한조정 문제 도시 내 의정수요의 편차가 큼 				

<표 IV-8> 용인특례시의 의정활동 목표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 롤링

의정활동 목표	의정활동 전략
규모와 권한일치를 통한 특례시민 권익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민주적 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직 신설 및 인사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입법지원역량의 전문화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 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능중심의 특례시 인정방안 모색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및 법률 담당 전문직 인력의 유치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확대 방안 모색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1) 용인특례시의 의정환경

- 용인특례시는 도농복합시로 4읍 3면 28행정동을 관할하며, 처인구 및 기흥구, 수지구의 3개 행정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기준 인구는 총 107만 6,773명임
 - 용인특례시의 재정자립도는 60.81%로 4개 특례시 중 가장 높으며,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용인특례시는 서울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처인구의 대부분이 여전히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어 지역 간 의정수요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남

2) 용인특례시의 의회조직 역량

- 용인특례시의회의 의원정수는 현재 제8대 의회 기준으로 총 29명임
 -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지원기구로서 의회사무국이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5팀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정원 총 37명)
 - 의원 1명당 입법지원인력 비율은 1.28명임

3) 용인특례시의 SWOT분석 결과

- 기회(Opportunity)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구 증가 추세
 - 용인특별시의 인구는 2002년에 처음 대도시로 인정되는 50만 명을 넘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 처음 특례시 지정기준인 100만 명을 넘어 현재 107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수에 바탕하여 안정적인 특례시의회의 의정수요가 형성되고 있음
 - 의정환경 개선에 대한 특례시민들의 높은 기대감
 - 용인특례시 시민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으며, 의정환경 개선에 따라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 권익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위협(Threat)

○ 광역의회와의 권한조정 문제

- 용인특례시는 인접한 수원특례시 및 경기 서북부의 고양특례시와 함께 경기도 내에서 정치·행정적으로 중심적 지위를 지니는 도시로 이들이 광역자치단체 및 의회와 권한상 경쟁관계가 되는 것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및 의회의 거부감과 우려가 있음

○ 도시 내 의정수요의 편차가 큼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지역과 배후지로서 신도시가 들어선 수지구,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처인구의 3개 행정구의 의정수요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 규모의 의정수요를 현재의 기초수준의 의회규모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음

□ 강점(Strength)

○ 광역시 수준의 청원수리역량 및 노하우 축적

○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적 관계 구축

□ 약점(Weakness)

○ 의정활동 수준에 비해 의회 및 의원 개인의 권한 미비

- 특례시 단위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권한은 대부분 광역의회에 있어 행정구 간 개발격차나 교육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정책 및 예산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입법지원인력의 절대적 부족 및 인사상 제약

- 용인특례시의회는 의원 1인당 입법지원인력이 1.28명임

4) 용인특례시의 의정활동 전략

□ 역량강화(S-O 전략)

- 의회직 신설 및 인사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입법지원역량의 전문화

-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 기회포착(W-O 전략)

-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 선택집중(S-T 전략)

- 광역의회의 심의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능중심의 특례시 인정방안 모색

- 약점보완(W-T 전략)

-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 확대 방안 모색
- 재정 및 법률 담당 전문직 인력의 유치

5) 용인특례시의 SWOT 의정활동 목표에 따른 전략롤링

- 규모와 권한일치를 통한 특례시민 권익향상을 위한 용인특례시의회의 활동전략

-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 직업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활동비 정상화

-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

- 의회직 신설 및 인사담당기구 신설을 통한 입법지원역량의 전문화
-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능중심의 특례시 인정방안 모색

-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의정활동 전략

- 재정 및 법률 담당 전문직 인력의 유치

-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 확대 방안 모색
-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6. 특례시 의정환경에 대한 SWOT 분석: 창원특례시

<표 IV-9> SWOT 분석결과를 반영한 창원특례시 의정활동 전략도출

의정환경		의정역량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시 수준의 청원수리 역량 및 노하우 축적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적 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활동 수준에 비해 의회 및 의원 개인의 권한 미비 입법지원인력의 절대적 부족 및 인사상 제약 	
기회(O)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류 가능성 주민투표에 따른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변화 가능성 	역량강화(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직 신설 및 광역의회와의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력전문성 강화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 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기회포착(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선택집중(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능중심의 특례시 인정방안 모색 	약점보완(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 확대 방안 모색 주민참여권 강화에 따른 입법요구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광역수준 입법지원조직 신설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와의 권한조정 문제 인구연동 특례시 지정요건의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능중심의 특례시 인정방안 모색 		

<표 IV-10> 창원특례시의 의정활동 목표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 롤링

의정활동 목표	의정활동 전략
규모와 권한일치를 통한 특례시민 권익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민주적 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직 신설 및 광역의회와의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력전문성 강화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 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능중심의 특례시 인정방안 모색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권 강화에 따른 입법요구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광역수준 입법지원조직 신설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확대 방안 모색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1) 창원특례시의 의정환경

□ 창원특례시는 2021년 기준 총인구 103만 4,705명으로 경상남도 최대의 도시이자 도청 및 광역의회 소재지이며, 2010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하여 현재의 창원특례시를 구성하였으며 의창구 및 성산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의 5개 행정구를 두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일반구를 두고 있음

- 창원특례시의 인구는 다른 3개의 특례시와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창원특례시는 (구)마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지구와 도시 및 농촌지역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2) 창원특례시의 의회조직 역량

□ 창원특례시의회의 의원정수는 현재 제8대 의회 기준으로 4개 특례시 중 가장 많은 총 44명임

-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지원기구로서 의회사무국이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4팀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정원 총 46명)
 - 의원 1명당 입법지원인력 비율은 1.05명임

3) 창원특례시의 SWOT분석 결과

□ 기회(Opportunity)

- 광역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류 가능성
 - 창원특례시는 경상남도 최대의 도시로 도청 및 경상남도의회 소재지이자 기존의 창원과 마산, 진해의 3 도시의 행정구역 통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광역기초의회 간 교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특례시라 할 수 있음
- 주민투표에 따른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변화 가능성
 - 창원특례시는 여전히 특례시민들의 정치·행정적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으며, 창원특례시로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구성에 대해 다

양한 시민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어 이를 통한 기관구성 변화의 가능성도 존재함

□ 위협(Threat)

○ 광역의회와의 권한조정 문제

- 창원특례시는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부터 경상남도과 행·재정적 권한갈등이 있어왔으며, 광역시 수준의 권한 상승에 따른 항만시설 심의권 조정 등 경상남도의 사무 및 권한위임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할 수 있음

○ 인구연동 특례시 지정요건의 제약

- 창원특례시는 통합 이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현재의 법정 특례시 지정요건을 적용할 경우 인구 감소에 따라 이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 강점(Strength)

○ 광역시 수준의 청원수리역량 및 노하우 축적

○ 안정적인 의정-집행 간 협력적 관계 구축

□ 약점(Weakness)

○ 의정활동 수준에 비해 의회 및 의원 개인의 권한 미비

- 경제 및 행정 규모는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의정역량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음

○ 입법지원인력의 절대적 부족 및 인사상 제약

- 창원특례시의회는 의원 1인당 입법지원인력이 1.05명으로 4개 특례시 중 가장 적음

4) 창원특례시의 의정활동 전략

□ 역량강화(S-O 전략)

- 의회직 신설 및 광역의회와의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력전문성 강화

- 행정구 구청장의 임면에 대한 의회 관여수준 및 권한 강화

- 기회포착(W-O 전략)

-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 선택집중(S-T 전략)

- 광역의회의 심의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능중심의 특례시 인정방안 모색

- 약점보완(W-T 전략)

-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 확대 방안 모색
- 주민참여권 강화에 따른 입법요구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광역수준 입법지원조직 신설

5) 창원특례시의 SWOT 의정활동 목표에 따른 전략롤링

- 규모와 권한일치를 통한 특례시민 권익향상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의 활동전략

- 광역의회의 심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 자치단체장 및 행정구청장, 산하기관장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정상화

-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

- 의회직 신설 및 광역의회와의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력전문성 강화
- 일반구 자치수준 강화과정에서 특례시의회의 법정 권한 강화
-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기능중심의 특례시 인정방안 모색

-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의정활동 전략

- 주민참여권 강화에 따른 입법요구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광역수준 입법지원조직 신설
- 의원정수 기준을 위임사무의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는 의회 권한 확대 방안 모색
-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확대

V. 4개 특례시의회 조직 진단

1. 특례시의회의 조직 구성 현황

□ 특례시의회의 조직은 시의회의원들이 구성하는 의회조직과 의회활동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기구 조직으로 구분이 가능함

○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시·군·구의 기초지방의회는 의원정수의 규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1에서 6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2018년 출범한 8대 지방의회 중 전체인 226개 중 78%인 176개 지방의회에서 상임위를 설치하였음

- 시·군·구의 기초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사무국(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와 「의회사무국(과) 직제규칙」에 의하여 의회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 특례시의회의 조직 현황을 진단 및 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의회의 조직적 특성 중 조직 규모와 조직 구조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특례시의회의 조직 규모는 시의회를 구성하는 시의원의 정수를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시의회 1인당 지역의 인구수(내국인 및 외국인 포함), 시의회 1인당 입법활동 변화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함

- 특례시의회의 조직 구성은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수와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 구성에 대한 법령의 내용을 고려함

1) 특례시의회 조직의 구성

□ 특례시의회조직의 설치 및 조직 구성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법률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연구 대상인 4개 특례시가 속해 있는 시도인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 총정수를 각각 447명(경기도), 264명(경상남도)로 정의하고 있음

○ 경기도 소재 특례시인 고양, 수원, 용인시의 경우 경기도의 총정수 447명 중 각각 33명(7.38%), 37명(8.3%), 29명(6.5%)을 시의회의원 정수로 하고 있음

- 경기도 소재 특례시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2018년 기준) 대비 고양시의 인구비율은 7.8%, 수원시는 9.2%, 용인시는 7.8%임

- 인구비율 대비 의원정수의 비율을 살펴 보면, 3개 특례시 모두 인구 대비 지방의회의원의 과소대표가 발견됨

- 고양시의 경우 지역인구비율 7.8%이지만, 경기도 전체 기초의회 의원의 7.38%를 의원정수로 배정하여, 94.62%의 대표성(의원비/인구비)을 확보하고 있음, 수원시의 경우 지역인구 9.2% 대비 기초의원 8.3%로 90.22%의 대표성으로, 용인시의 경우 지역인구 7.8% 대비 기초의원 6.5%로 83.33%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 소극적 대표성의 측면에서 경기도 소재 3개 특례시의 시의회 구성은 대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시의회의원 정수를 1:1의 비율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 소재 특례시인 창원시의 경우 경상남도의 총정수 264명 중 44명(16.67%)을 시의회의원 정수로 하고 있음

- 경상남도 전체 인구(2018년 기준) 대비 창원시의 인구비율은 31%이며, 시의회 의원의 전체 의원정수 대비 비율은 16.67%로 과소대표를 확인할 수 있음

- 경상남도의 경우 지자체 단위에서 기초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 인원을 10~11명으로 배정하고 있고, 그 결과 경상남도 전체 인구의 14.47%를 차지하고 있는 군에 설치한 군의회에 배정하는 기초의원 정수의 비율이 39.77%로 시에 설치한 시의회 의원정수가 과소대표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제8기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방선거를 위해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총정수를 2014년의 경기도 431명, 경상남도 260명에서 각

각 16명과 4명이 증가한 경기도 447명, 경상남도 264명으로 정함

- 지방의회위원 정수 증가는 4년의 지방선거 주기에 따른 인구 변동과 선거구 인구편차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임
 - 고양시의 경우 2014년,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31명에서 2018년, 33명으로 2명이 증가함(13개 선거구,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 4명)
 - 수원시의 경우 2014년,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34명에서 2018년, 37명으로 3명이 증가함(14개 선거구, 지역구의원 33명, 비례대표 4명)
 - 용인시의 경우 2014년,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27명에서 2018년, 29명으로 2명이 증가함(10개 선거구, 지역구의원 26명, 비례대표 3명)
 - 창원시의 경우 2014년,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43명에서 2018년, 44명으로 1명이 증가함(17개 선거구, 지역구의원 39명, 비례대표 5명)
- 기초자치단체의회의 의원 총정수의 변화량은 지역인구수의 변화와 연동하여 각 지역별 인구비율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2014년 인구 1,271만명 대비 431명 의원정수가 2018년 인구 1,349만명 대비 447명으로 의원 1인당 평균 2.9만에서 3.0만명의 지역인구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음(2018년 전반기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28,938명)
 - 경상남도의 경우 2014년 인구 343만명 대비 260명 의원정수가 2018년 인구 345만명 대비 264명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만명의 지역인구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음(2018년 전반기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12,939명)
- 특례시의 시의원 정수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인구변화에 비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고양의 경우 시의회의원 1인당 3.2만명, 수원의 경우 의원 1인당 3.4만명, 용인의 경우 3.5만명, 창원의 경우 2.5만명의 수준임
- 고양시는 시의회의원 1인당 지역인구 3.24만명(2014)이 3.16만(2018)으로 감소하고 있음(2018년 전반기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31,575명)
 - 수원시는 시의회의원 1인당 지역인구 3.56만명(2014)이 3.36만(2018)으로 감소하고 있음(2018년 전반기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33,526명)
 - 용인시는 시의회의원 1인당 지역인구 3.61만명(2014)이 3.52만(2018)으로 감소하고 있음(2018년 전반기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35,207명)
 - 창원시는 시의회의원 1인당 지역인구 2.52만명(2014)이 2.43만(2018)으로 감소

하고 있음(2018년 전반기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24,379명)

□ 특례시의회의 규모 분석 결과 현재의 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지역인구에 대한 대표성의 측면에서 과소 대표성을 보여 주고 있음

- 인구 증가 비율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인구 비율에 비례하여 지방의회 규모가 결정되지 않고, 인구 변화율과 비례하여 지방의회 규모가 변화하고 있음
- 시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체 의원정수가 결정되고 이후 시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배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특례시는 지방의회 의원이 과소대표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기초의회의 의원 정수는 지방의회의 운영을 위해 최소 규모를 설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최소 7명의 기초의원, 경상남도의 경우 최소 10명의 기초의원을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있음
 - 행정구역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권역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인원에 대한 고려는 인구규모가 확대되는 특정 지자체는 과소 규모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음
- 특례시의 지위와 관련하여 광역지방의회로 규정할지, 특례를 적용하는 기초지방의회로 규정할지에 따라서 시회의 구성에 대한 환경적 제약이 달라짐
 - 광역지방의회로 구성할 경우, 광역지자체의 의회의원정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초지방의회로 규정할 경우, 특례시에 대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를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특례시의회의 조직구조 현황 분석

□ 지방의회의 구조는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20년, 제8대 지방의회의 후기 기준 4개 특례시는 5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상임위원회는 개별 시의회의 의정 수요 및 당해 지자체 집행부인 시청의 조직구조에 대응하여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음

○ 고양시의 경우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의회운영, 기획행정, 환경경제, 건설교통, 문화복지의 5개 분과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8명의 시의회 의원을 배정하고 있음

- 고양시청의 경우 제1부시장 아래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의 1실 5국을, 제2부시장 아래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의 1실 2국의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음. 그 외 담당관 및 추진단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시장실 아래 평화미래정책관, 제1부시장 아래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제2부시장 아래 신청사건립단과 녹색도시담당관을 두고 있음

- [시청조직구조와 연계성 중간] 고양시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제2부시장 관할 실국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담하고, 그 이외에는 기획행정에서 시청의 기획조정 및 자치행정에 관한 사무를, 환경경제에서 시청의 일자리, 경제,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무를, 문화복지에서 여성, 복지, 교육, 문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이 중 환경경제위원회의 기능의 구분이 모호한데, 정책의 방향에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이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원시의 경우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의회운영, 기획경제, 도시환경, 문화체육교육, 복지안전의 5개 분과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9명의 시의회 의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별도로 1명의 의원을 추가배정하였음

- 수원시청의 경우 제1부시장 아래 기획조정실, 경제정책국, 복지여성국, 문화체육교육국의 1실 3국을, 제2부시장 아래 도시정책실, 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개발국, 군공항이전협력국의 1실 4국의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음. 그 외 담당관 및 추진단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시장실 아래 시민소통기획관과 인권담당관, 제1부시장 아래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을, 제2부시장 아래 도시디자인단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두고 있음

- [시청조직구조와 연계성 중간] 수원시의회의 기획경제와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기획과 경제, 문화와 복지를 그룹으로 하여 제1부시장의 관할 사무를 관장하며,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부시장의 관할 사무를, 복지안전위원회는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관할 사무를 분담하여 관장하고 있음
- 용인시의 경우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의회운영,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건설의 5개 분과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7명의 시의회 의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 추가 의원을 배정하고 있지는 않음
- 용인시청의 경우 제1부시장 아래 자치행정실, 재정국,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일자리산업국의 1실 4국을, 제2부시장 아래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의 1실 2국의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음. 용인시는 담당관 및 추진단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시장실 아래 시민소통관, 제1부시장 아래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제2부시장 아래 도시기획단과 시민안전담당관 등의 다양한 담당관을 두고 있음
- [시청조직구조와 연계성 높음] 용인시의 상임위원회는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업무 분장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지며, 자치행정과 문화복지위원회는 제1부시장이 관할하는 사무를, 경제환경 및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부시장이 관할하는 사무를 관장함
- 창원시의 경우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의회운영(8명), 기획행정(10명), 경제복지여성(11명), 문화환경도시(11명), 건설해양농림(11명)의 5개 분과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8~11명의 시의회 의원을 배정하고 있음
- 창원시청의 경우 제1부시장 아래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안전건설교통국의 1실 4국을, 제2부시장 아래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해양항만수산물국, 환경도시국의 4국의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음. 창원시는 별도로 시장 아래 시정혁신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을, 제1부시장 아래 공보관과 감사관을 두고 있음
- [시청조직구조와 연계성 낮음] 창원시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과 제2부시장의 관할사무를 중첩하여 관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경우 제1부시장의 경제일자리국과 스마트혁신산업국 그리고 제2부시장의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함. 문화도시건설위원회는 제1부시장의 안전건설교통국과 제2부시장의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함

<표 V-1> 특례시의회조직과 시청본청 조직의 구조적 연계성

	상임위원회	시청 조직구조	연계성
고양	의회운영(8) 기획행정(8) 환경경제(8) 건설교통(8) 문화복지(8)	3실(비서,기획조정,도시교통정책실) 7국(자치행정,일자리경제,복지여성,기후환경,교육문화,시민안전 주택,도시균형개발국) 5관(언론홍보,청년,녹색도시담당관,평화미래정책관,감사) 1단(신청사건립단)	중간
수원	의회운영(10) 기획경제(9) 도시환경(9) 문화체육교육(9) 복지안전(9)	2실(기획조정,도시정책실) 7국(경제정책,복지여성,문화체육교육,환경,안전교통,도시개발,군 공항이전협력국) 6관(인권담당,언론담당,시민소통기획,감사,홍보기획,청년정책) 2단(도시디자인,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중간
용인	의회운영(7) 자치행정(7) 문화복지(7) 경제환경(7) 도시건설(7)	3실(비서,자치행정,도시정책실) 6국(재정,교육문화,복지여성,주택,교통건설국,미래사업추진단) 7관(감사,공보,정책기획,법무담당,청년담당,시민안전담당,시민소 통) 1단(도시기획단)	높음
창원	의회운영(8명) 기획행정(11명) 경제복지여성(11명) 건설해양농림(11명) 문화환경도시(11명)	1실(기획예산) 8국(자치행정,경제일자리,스마트혁신산업,안전건설교통;문화체 육관광,복지여성보건,환경도시,해양항만수산) 4관(시정혁신,시민소통담당;공보,감사관)	낮음

3) 특례시의회의 업무량 현황

□ 특례시의회의 업무량은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은 본회의 등에서의 시정질의 및 5분 발의, 조례발의, 건의결의 등의 활동으로 구체화됨

○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해서 2019년 참여자치지역운동 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1년간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전수 조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이하 의정활동평가보고서)」의 통계 자료⁵⁾를 활용함

- 조사에서 활용한 평가보고서는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첫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로 의회임기가 절반 이상 지난 2021년 현재와는 의정활동 현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전국 단위로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보고서 및 관련 통계를 본 보고서에서는 활용함

-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7대 지방의회가 종료된 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백서의 통계 자료의 활용을 병행함. 지방의회백서는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현황을 입법활동, 발언행동, 및 청원의 처리 등 다양한 성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음. 지방의회백서는 광역과 기초의회의 평균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함

○ 7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의 개최횟수와 회기일수, 그리고 의회에서 처리 및 심사한 의안, 조례안, 청원 등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7기 광역의회는 4년 동안 평균 8.06회의 정례회, 26.6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면, 정례회는 평균 29.1일, 임시회는 평균 10일 동안 운영하였음

- 광역의 시도의회는 4년 동안 평균 75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16건의 청원을 심사하였음

- 7기 기초의회는 4년 동안 평균 7.98회의 정례회, 26.23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례회는 평균 20.8일, 임시회는 평균 6.7일 동안 운영하였음

- 기초의 시군구의의회는 4년 동안 평균 280.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평균

5)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GYFWXZizc-zhZqU97hXWAlfr4kC-VJzyn5fg5yujDpQ/edit#gid=0>

1.3건의 청원을 심사하였음

<표 V-2> 7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황: 의회 입법 활동 실적

	정례회			임시회			의안 및 청원 처리	
	회기(수)	회기(일수)	의안처리	회기(수)	회기(일수)	의안처리	조례안	청원심사
시도의회 (17)	137 (8.06)	3989 (234.65)	7782 (457.76)	452 (26.59)	4518 (265.76)	13677 (804.53)	12838 (755.18)	273 (16.06)
시군구의회 (226)	1804 (7.98)	37590 (166.33)	37496 (165.91)	5928 (26.23)	39944 (176.74)	67846 (300.20)	63447 (280.74)	296 (1.31)

○ 7기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중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감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7기 광역의회는 4년 동안 행정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평균 303.8개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인 시청 및 도청에 대해서는 평균 60.18개의 감사를 실시하였음
- 7기 기초의회는 4년 동안 행정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평균 117.7개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인 시·군·구청에 대해서는 평균 54.48개의 감사를 실시하였음

<표 V-3> 7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황: 행정사무감사 실적

	수감기관수							현장 확인 (개소)
	본청	소속 행정 기관	하부 행정 기관	사무 위탁 법인	교육 행정 기관	공기업/ 공사/ 공단	소계	
시도의회 (17)	1023	1482	227	775	1219	438	5164	396
	60.18	87.18	13.35	45.59	71.71	25.76	303.76	23.29
시군구의회 (226)	12335	4507	8369	696	111	581	26599	2847
	54.58	19.94	37.03	3.08	0.49	2.57	117.69	12.60

○ 참여자치연대가 작성한 「의정활동평가보고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자료로 지방의회의원 5분발언과 시정질의를 통계화하였으며, 결과는 지방의원 1인당 평균 1.99건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광역시의회 의원들의 경우 총 309명의 의원들이 754건의 5분 발언 및 시정 질의를

하여 의원 1인당 발언수는 평균 2.44건이며, 특광역시의 기초의회의 경우 총 1,020명의 의원이 2,194건의 발언을 하여 평균 2.15건의 발언 관련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도의회의 경우 총 515명의 의원들이 1,063건의 5분 발언 및 시정 질의를 하여 의원 1인당 발언수는 평균 2.06건이며, 광역도의 기초의회의 경우 총 1,906의 의원이 3,464건의 발언을 하여 평균 1.81건의 발언 관련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7대 지방의회(2014~2018)의 경우 지방의회의 본회의 질문사항은 시도의 광역의회의 경우 7,704건, 의원 1인당 2.43건(연평균)이며, 시군구의 기초의회의 경우 23,152건, 의원 1인당 1.997(연평균)이며 7대와 8대 초기의 지방의회의 집행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견제활동은 유사함(행정안전부(2020), 지방의회백서 2014~2018)
- 7대 지방의회의 경우 집행부에 대한 견제활동에 있어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간 관심 분야의 차이가 일부 발견되는데, 구체적으로 기초의회의 경우 도시건설 > 지역경제 >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관심을, 광역의회의 경우 교육행정 > 도시건설 >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음

<표 V-4> 7대 지방의회 집행부 견제 및 감시활동 (5분 발의 및 질문 내용별 비교)

	자치 행정	재무	농림 수산	지역 경제	도시 건설	민방위 소방	교육 행정	기타
기초	3396	934	2197	2867	6361	616	1036	5445
	14.67%	4.03%	9.49%	12.38%	27.47%	2.66%	4.47%	23.52%
광역	1710	383	638	880	1165	178	1809	941
	22.20%	4.97%	8.28%	11.42%	15.12%	2.31%	23.48%	12.21%

□ 4개 특례시의회가 8기의 임기를 시작한 최초 1년간 의정활동의 통계는 아래의 표와 같음

- 4개 특례시의회의 의정활동은 시정질의 및 5분 발언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활동과 조례 개정, 제정, 폐지 등의 발의 및 처리의 입법활동으로 구분이 가능함
- 4개 특례시의원 중 평균 34%인 55명의 지방의원은 시정질의 및 5분 발언 활동을 하지 않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활동의 참여율은 높지 않음. 고양시의

경우 견제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창원, 용인, 수원시의 순으로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음

- 조례발의의 경우 새로운 조례 제정 발의 건수는 49건, 기존 조례의 개정은 87건이며, 특례시 의원 평균 0.30건의 조례제정 발의가, 0.54건의 조례 개정 발의를 하였으며, 조례 폐지에 대한 발의 실적은 없음
- 8대 지방의회 초기는 초선과 재선의원의 비율 등에 의해 의정활동의 현황을 대표하기는 어려운데, 중기 이후로 갈수록 조례 발의, 시정 질의, 건의결의 등의 입법 활동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창원시의 경우 전체의원 정수 중 61%가 초선의원으로, 8대 의회(창원시 3대의회) 최초 1년간의 성과와 비교하여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1년 간 의정활동이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발의 건수가 각각 42건과 35건으로 증가하였음. 지방의원의 경력에 따라 입법활동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4년 임기의 의회는 2~3년차에서 가장 입법활동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표 V-5> 8대 지방의회 초기, 4개 특례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황

	의원정수	시정질의 및 5분 발언			조례발의			건의결의안 발의 (건수)
		0건인 의원 수	5분발언 (건수)	시정질의 (건수)	개정 (건수)	제정 (건수)	폐지 (건수)	
고양	33	3	27	51	32	1	0	0
	1인 평균	9%	0.82	1.55	0.97	0.03	0.00	0.00
수원	37	32	4	1	31	28	0	5
	1인 평균	86%	0.11	0.03	0.84	0.76	0.00	0.14
용인	29	10	27	23	15	6	0	4
	1인 평균	34%	0.93	0.79	0.52	0.21	0.00	0.14
창원	44	10	94	9	9	14	0	26
	1인 평균	23%	2.14	0.20	0.20	0.32	0.00	0.59
총계	162	55	152	84	87	49	0	35
	1인 평균	34%	0.94	0.52	0.54	0.30	0.00	0.22

○ 4개 특례시 의원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 활동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음(2019년 기준)

- 고양시의회 의원 총 33명은 27건의 본회의 5분 발언, 51건의 시정질의를 하여 의원 1인당 평균 2.36건의 발언을 하고 있음
 - 수원시의회 의원 총 37명은 4건의 본회의 5분 발언, 1건의 시정질의를 하여 의원 1인당 평균 0.14건의 발언을 하고 있음
 - 용인시의회 의원 총 29명은 27건의 본회의 5분 발언, 23건의 시정질의를 하여 의원 1인당 평균 1.73건의 발언을 하고 있음
 - 창원시의회 의원 총 44명은 94건의 본회의 5분 발언, 9건의 시정질의를 하여 의원 1인당 평균 2.34건의 발언을 하고 있음
 - 4개 특례시의 시의원 1인당 평균 발언건수는 1.65로 7대 지방의회 및 8대 초기 지방의회의 활동과 비교하여, 전체 지방의회 및 광역과 기초지자체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활동보다 적은 수치임
- 「의정활동평가보고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입법활동 자료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발의건수를 통계화하였으며, 결과는 지방의원 1인당 평균 1.94건의 입법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광역시의회 의원들의 경우 총 309명의 의원들이 950건의 조례발의를 하여 의원 1인당 입법활동은 평균 3.06건이며, 특광역시의 기초의회의 경우 총 1,020명의 의원이 1,960건의 조례발의를 하여 평균 1.92건의 발언 관련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도의회의 경우 총 515명의 의원들이 1,261건의 조례발의를 하여 의원 1인당 입법활동은 평균 2.43건이며, 광역도의 기초의회의 경우 총 1,906명의 의원이 3,104건의 조례발의를 하여 평균 1.62건의 발언 관련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7대 지방의회(2014~2018)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안처리 등의 입법활동의 경우 시도의 광역의회는 21,459건, 의원 1인당 6.76건(연평균)이며 조례안의 경우 1인당 연평균은 5.47건임, 시군구의 기초의회의 경우 105,315건, 의원 1인당 9.09건(연평균)이며 조례안의 경우 1인당 연평균은 3.95건임. 7대와 8대 초기의 지방의회의 조례안 평균은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7대 지방의회의 의안처리실적을 기준으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 관련 업무량을 추정함
 - 지방의회가 처리한 의안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일부 차이가 발생함. 구체적으로 기초의회는 광역의회보다 조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의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광역의회는 중요
지자체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심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V-6> 7대 지방의회 의안처리실적 (의안처리 내용별 비교)

	조례	예산 결산	중요재산 취득처분	청원 심사	건의 성명결의	기타
기초	63353	6827	3226	164	3875	27870
	60.16%	6.48%	3.06%	0.16%	3.68%	26.46%
광역	12559	858	916	198	1503	5425
	58.53%	4.00%	4.27%	0.92%	7.00%	25.28%

○ 4개 특례시 의원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의 입법활동 현황은 아래와 같음
(2019년 기준)

- 고양시의회 의원 총 33명은 33건(개정 32건, 제정 1건, 폐지 0건)의 조례발의를 하여 의원 1인당 평균 1.00건의 발언을 하고 있음(2020년의 경우 8건의 조례안 예고)
- 수원시의회 의원 총 37명은 59건(개정 31건, 제정 28건, 폐지 0건)의 조례발의를 하여 의원 1인당 평균 1.59건의 발언을 하고 있음(2020년의 경우 44건의 조례안 예고)
- 용인시의회 의원 총 29명은 21건(개정 15건, 제정 6건, 폐지 0건)의 조례발의를 하여 의원 1인당 평균 0.73건의 발언을 하고 있음(2020년의 경우 10건의 조례안 예고)
- 창원시의회 의원 총 44명은 23건(개정 9건, 제정 14건, 폐지 0건)의 조례발의를 하여 의원 1인당 평균 0.52건의 발언을 하고 있음(2020년의 경우 70건의 조례안 예고)
- 4개 특례시의 시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건수는 0.95건(2020년 0.92건)으로 전체 지방의회와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의 입법활동보다 적은 수치임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집행부 견제 및 입법 활동의 실적을 토대로 살펴 본 결과, 4개 특례시의 의정활동은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의 비교하여 낮은 수치임. 지방의회의 주요 업무인 의정활동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재량에 따라 그 업무량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특례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주요 업무량은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조례 등의 의안 처리 실적과 함께 추가적으로 기존 조례의 정비, 지역주민의 청원에 대한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이 있음

- 기존 조례의 정비와 관련하여, 광역의 경우 의회에 관한 조례와 교육자치에 관한 조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기초의 경우 사회·환경·복지에 대한 조례 정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V-7> 7대 지방의회 조례 정비 성과 (조례 내용별 비교)

	의회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수산	도시 건설 주택	행정 조직 운영	교육 자치	기타	총계
기초	3242	5684	15625	8294	9653	10843	3248	6858	63447
	5.11%	8.96%	24.63%	13.07%	15.21%	17.09%	5.12%	10.81%	100.00%
광역	915	662	2797	1869	1811	2227	1733	824	12838
	7.13%	5.16%	21.79%	14.56%	14.11%	17.35%	13.50%	6.42%	100.00%

-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광역의 경우 사회·환경·복지, 지역경제·농수산, 도시·건설·주택·재해, 행정조직운영에 대한 위원회 활동이 많으며, 기초의 경우 예산결산에 대한 위원회 활동이 많음

<표 V-8> 7대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특별위원회 목적별 비교)

	예산 결산	윤리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 경제 농수산	도시 건설 주택 재해	행정 조직 운영	기타	총계
기초	3932	113	26	71	55	179	108	1383	5867
	67.02%	1.93%	0.44%	1.21%	0.94%	3.05%	1.84%	23.57%	100.00%
광역	308	61	0	99	102	109	59	81	819
	37.61%	7.45%	0.00%	12.09%	12.45%	13.31%	7.20%	9.89%	100.00%

- 4개 특례시가 기초와 광역의회의 중간 형태임을 고려할 때, 4개 특례시의회의 지방의회에 관한 조례와 교육자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위원회 활동의 경우 윤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특별위원회 활동의 증가가 예상됨

2. 특례시의회사무기구 조직 구성 현황 분석

1)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규모 평가

□ 지방의회는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음. 2020년 현재 기초의회 사무기구(사무처)의 직원은 정원 4,158명(일반, 별정직 및 일반임기제, 현원은 4,808명임)

- 지방의회 사무처 정원 4,158명 중 일반직은 3,974명, 별정직은 93명, 일반임기제는 91명임
 - 경기도의 기초의회의 경우 686명을 정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직이 661명, 별정직이 1명, 일반임기제가 24명임
 - 경상남도의 기초의회의 경우 325명을 정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직이 310명, 별정직이 6명, 일반임기제가 9명임
- 지방의회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더하여 의회의 운영을 위한 직원으로 시간선택제, 실무원, 공무원 및 지원근무의 형태로 추가 인원을 활용 중에 있음
 - 전체 기초의회의 경우 현재 650명이 정원 외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시간선택제가 123명, 실무원이 54명, 공무원이 416명, 기타(지원근무)가 57명임
 - 경기도의 기초의회의 경우 148명을 정원 외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시간선택제가 59명, 실무원이 6명, 공무원이 72명, 기타(지원근무)가 11명임
 - 경상남도의 기초의회의 경우 42명을 정원 외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시간선택제가 2명, 실무원이 4명, 공무원이 29명, 기타(지원근무)가 7명임
- 지방의회 중 기초의회의 총정수 2,898명과 비교하면,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규모는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정원 기준 평균 1.43명, 현원 기준 평균 1.66명임
 - 지방의회 중 광역의회의 총정수 794명과 비교하면,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규모는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정원 기준 평균 2.53명, 현원 기준 평균 3.26명임
 - 광역지방의회 중 인구규모가 특례시 기준이 인구 100만에 근접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광역의회의원 정수 22명에 대하여 사무기구의 조직 규모는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정원 기준 2.91명, 현원 기준 3.46명임

- 인구규모가 100만 이상, 150만 이하 광역의회인 광주와 대전의 경우 광역의회 의원 정수 23명, 22명 대비 사무기구 정원은 77명, 85명으로 의원 1인당 정원 기준 각각 3.35명, 3.86명의 의원:사무직원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음
- 광역의회는 기초의회와 비교하여 1.8~2배 정도의 사무직원을 사무기구 내 정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원 역시 2배 정도 많은 인원을 활용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사무처 정원의 구성을 살펴 보면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의 비율은 광역의회의 경우 전문위원이 9.5%, 기초의회의 경우 전문위원이 17.4%임
- 광역의회는 의원 1인당 2.04명의 사무직원, 0.21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기초의회는 의원 1인당 1.14명의 사무직원, 0.24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음
- 전문위원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와 연동한 상임위원회의 수에 대응하며 지방의원의 광역과 기초의 구분 없이 평균 0.2명 정도로 유사하나, 사무직원의 경우는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많은 정원을 가지고 있음

<표 V-9> 의회사무기구 사무직원 현황 - 의원정수와 비교

	의원정수 (A)	사무직원 (B)	전문위원 (C1: 4/5급)	전문위원 (C2: 5/6급)	사무처 정원 (D=B+C1+C2)	B/A	C/A	D/A	B/D
광역	829	1692	109	63	1807	2.04	0.21	2.18	93.47%
기초	2924	3344	436	267	4047	1.14	0.24	1.38	82.63%

□ 4개 특례시의 경우 기초의원정수 대비 사무직원의 규모는 기초의회 평균보다 낮은 수치임

- 특례시의회사무기구의 조직규모는 의원정수 대비 동수(1배)에서 1.27배(정원기준) 또는 1.62배(현원기준)로 광역의회의 평균인 의원 1인당 2.18명(정원기준) 또는 2.84명(현원기준)보다 적은 규모임
- 광역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2.69명, 광역도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1.95명의 사무직원을 두고 있음
- 4개 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평균 1.13명(광역지방의원 정수 829명, 광역의회 사무처 정원 1,807명)으로 광역시의회보다 적은 규모이며, 기초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1.38명(기초지방의원정수 2,927명, 기초의회 사무처 정원 4,047명)보다 적은 규모임

○ 2020년 현재 전체 기초의회 의원:사무직원의 비율이 1.4(정원)~1.6(현원)임에 비하여 특례시의 의원 대비 사무직원의 비율은 정원 기준 최고 1.52, 현원 기준 최고 1.48로 사무기구의 구성이 과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고양시는 시의원 정수 33명 대비, 정원 50명, 현원 49명으로 의원 1인당 정원 기준 평균 1.52명, 현원 기준 평균 1.48명의 비율로 사무기구를 구성하고 있음
- 수원시는 시의원 정수 37명 대비, 정원 43명, 현원 42명으로 의원 1인당 정원 기준 평균 1.16명, 현원 기준 평균 1.14명의 비율로 사무기구를 구성하고 있음
- 용인시는 시의원 정수 29명 대비, 정원 37명, 현원 37명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28명(정원 및 현원)의 비율로 사무기구를 구성하고 있음
- 창원시는 시의원 정수 44명 대비, 정원 46명, 현원 46명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05명(정원 및 현원)의 비율로 사무기구를 구성하고 있음

<표 V-10> 4개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구성 현황

	의원정수 (A)	직원정원 (B)	직원현원 (C)	정원 과부족 (B-C)	의원:정원비 (A:B)	의원:현원비 (A:C)
고양	33	50 (임기제 1)	49 (시간선택제 2; 무기계약제 1)	-1	1.52	1.48
수원	37	43 (임기제 1)	42 (시간선택제 5; 기간제 2; 무기계약제 4)	-1	1.16	1.14
용인	29	37 (임기제 2)	37 (시간선택제 6; 기간제 1; 무기계약제 6)	0	1.28	1.28
창원	44	46 (임기제 3)	46 (시간선택제 1; 무기계약제 5)	0	1.05	1.05

2)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구성 평가

□ 특별시,광역시,자치시의 광역의회사무처는 의원정수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전문위원을 기구로 설치함

○ 의회사무처장은 의회사무기구를 대표하며, 의회사무처장 직속으로 의정담당관과 전문위원실을 설치하며, 의정담당관은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기구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을 주로 담당하며, 광역시의회의 상황에 따라 의정담당관을 대신하여 의사담당관, 의정정책관 등을 두기도 함

-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에 연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최소 1인의 4급 및 4급 상당의 일반경력 및 별정직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성격 및 사무를 고려하여 추가로 일반경력직 5급 및 5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음.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은 교육청의 정원으로 분류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공무원이 전문위원의 직무를 수행함

○ 광역시의회의 평균 규모는 의원정수 기준 38.63명, 광역시의회사무기구의 평균 규모는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 115.25명(직제상 정원 기준 104명)이며, 의원 1인당 평균 2.98명의 사무직원을 두고 있음 (행정안전부, 2021: 8기 후반기 지방의회 현황)

- 의원 1인당 사무직원의 비율이 평균 보다 규모가 큰 특별 및 광역시의회는 서울(3.12), 광주(3.09), 대전(3.86) 등며, 이 중 광주와 대전은 의원 정수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의 전문위원을 운영하고 있음

- 비교하여, 평균 보다 규모가 작은 세종(2.50), 부산(2.60), 인천(2.70) 등은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은 규모의 전문위원을 운영하고 있음

○ 광역시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시의회는 의정과(사무기구운영, 행정지원)와 의사입법(의회기록관리, 입법정책연구) 담당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별도로 총무와 언론홍보를 담당관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에 있음

- [2담당관제] 의정담당관 이외에 입법정책담당관을 두고 있는 울산시의 경우 의정과 입법정책의 2개 대분류 기능을 총무, 의사, 공부 및 입법정책 1과 2의 5개 중분류 기능을 세분화하고 있음

- [3담당관제]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으로 구분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을 두고 있는 대전시와 광주시의 경우 3개 대분류 기능 아래에 총무, 공보, 의사, 의

안, 입법정책(또는 입법 & 정책)의 5개(또는 6개) 중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3담당관제 II] 의정담당관을 의정정책담당관과 홍보담당관으로 구분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을 두고 있는 대구시의 경우 3개 대분류 기능 아래에 총무, 의사, 공보, 시민소통, 입법정책의 5개 중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4담당관제] 의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으로 구분하고, 별도로 홍보와 입법정책담당관을 두고 있는 부산의 경우 4개 대분류 기능 아래에 총무, 관리, 의사, 의안기록, 홍보, 보도, 소통민원, 입법지원, 정책연구의 9개 중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6담당관제] 서울시의회는 의회사무기구를 복잡하게 운영 중에 있는데, 의정, 의사, 시민권익, 언론홍보(실로 운영 중), 입법, 예산정책의 6개 대분류, 언론, 홍보, 영상미디어, 총무, 의정지원, 교류협력, 시설관리, 의사, 의안, 의안정보화, 기록, 민원행정, 민원관리, 입법정책, 법제관리, 지방분권지원, 의정자료, 예산분석, 정책조사, 사업평가의 20개 중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표 V-11> 광역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구성 현황

	의원 정수	사무직원정원 (8기 전반기)	전문위원 (상임위원)	사무처 조직구성
서울	110	343 (298)	20 (10)	1실(언론홍보), 5담당관(의정,의사,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 20담당(팀)(언론,홍보,영상미디어;총무,의정지원,교류협력,시설관리; 의사,의안,의정정보화,기록;민원행정,민원관리; 입법정책,법제관리,지방분권지원,의정자료;예산분석,정책조사,사업평가)
부산	47	122 (114)	7 (7)	4담당관(총무,의사,홍보,입법정책), 7전문위원 9담당(팀)(총무,관리,의사,의안기록,홍보,보도,소통민원,입법지원,정책연구)
대구	30	92 (87)	7 (7)	1정책관(의정), 2담당관(홍보,입법), 7전문위원 5팀(총무,의사;공보,시민소통;입법정책)
인천	37	100 (99)	6 (6)	3담당관(총무,의사,입법정책), 6전문위원 10담당(총무,관리,홍보;의사,의안,기록,입법정책,예산정책,법제지원1,2)
광주	23	71 (67)	7 (5)	3담당관(총무,의사,입법정책), 7전문위원 7담당(총무,공보;의사,의안;입법,정책)
대전	22	85 (76)	6 (5)	1실(입법정책실), 2담당관(총무,의사), 6전문위원 4담당(팀)(총무,공보;의사,의안,기록,입법정책1,입법정책2)
울산	22	64 (56)	7 (6)	2담당관(의정,입법정책), 7전문위원 5담당(총무,의사,공보;입법정책1,2)
세종	18	45 (35)	4 (4)	2담당관(의정, 의사입법), 4전문위원(+교육청 1) 4담당(총무,공보,의정,입법정책)

- 광역도의회 의원정수 기준 57.78명, 광역도의회사무기구의 평균 규모는 직제상 정원 기준 120.8명이며, 의원 1인당 평균 2.09명의 사무직원을 정원으로 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2021: 8기 후반기 지방의회 현황)
 - 의원 1인당 사무직원의 정원의 평균 보다 규모가 큰 광역도의회는 충청북도 (2.44명), 전라북도(2.41명), 제주도(3.05명) 등임
 - 이 중 제주도의 경우 사무직원의 정원 중 전문위원의 비율이 6.1%로 광역도의회가 평균 9.4% 규모로 전문위원을 두는 것과 비교하여 사무직원의 정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평균 보다 규모가 작은 광역도의회는 경기도(1.85명), 강원도(2.09명), 전라남도 (1.79명), 경상남도(1.95명), 경상북도(1.97명) 등임
 - 이 중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경우 사무직원의 정원 중 전문위원의 비율이 10% 이상으로, 사무직원 대비 전문위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음
- 광역도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사무처장 아래 총무(의회사무기구 운영)와 의사담당관(의회운영보조)을 공통으로 두고 있으며, 추가로 담당관을 운영하는 경우 입법 및 입법정책담당관으로, 그리고 4개의 담당관으로 운영하는 경우 추가로 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 있음
 - 도의회의 규모가 큰 경기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광역의회는 평균 3개의 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총무,의사,입법정책의 3개 대분류임. 이 외에 추가로 의회의 기능을 발굴하는 경우 홍보 또는 민원소통 기능이 추가됨
 - 경기도는 협치지원, 입법정책, 예산정책 등의 기능을 의회의 기능으로 추가 발굴하여 관련 조직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정책 및 분석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였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가짐

<표 V-12> 광역도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구성 현황

	의원 정수	사무직원정원 (8기 전반기)	전문위원 (상임위원)	사무처 조직구성
경기	142	259 (233)	27 (13)	7담당관(총무,공보,의사,도민권익,협치지원,입법정책,예산정책) 23담당(팀)(총무,의전,회계,청사관리;공보,언론,미디어;의사,의안,기록; 권익행정,민원관리,역량개발지원,현장소통,교육협력; 협치기획,협치분석;입법정책,입법운영;예산정책,예산분석)
강원	46	96 (81)	7 (6)	2관(의정,의사), 2담당관(홍보,입법정책), 7전문위원 16담당(총무,경리의장비서,의사,기록,공보기획,미디어홍보,입법지원,정책지원)
충북	32	78 (73)	6 (6)	3담당관(총무,의사,입법정책), 6전문위원 7팀(총무,홍보,미디어;의사,기록;입법운영,정책1,정책2)
충남	42	91 (79)	7 (7)	4담당관(총무,의사,입법정책,예산분석), 7전문위원 7담당(팀)(총무,기획홍보,비서,의사,기록,입법정책,정책지원,예산분석1,2)
전북	39	94 (89)	7 (5)	2담당관(총무,의사), 7전문위원 5담당(팀)(총무,공보,비서;의사,기록)
전남	58	104 (84)	15 (8)	3담당관(총무,의사,정책), 15전문위원 10담당(총무,경리,홍보,비서;의사,의안,기록;정책,예산분석,입법연구)
경북	60	117 (107)	17 (8)	3담당관(총무,의사,입법정책), 17전문위원 11담당(총무,경리,공보;의사,의안,기록;입법기획,입법지원(3),예산분석)
경남	58	114 (99)	8 (7)	3담당관(총무,의사,입법정책), 8전문위원 10담당(총무,경리,공보,미디어홍보,의사,기록,입법지원,예산분석,정책,연구)
제주	43	131 (169)	8 (7)	4담당관(총무,의사,입법,민원홍보), 8전문위원 9담당(총무,경리;의사,기록;입법정책,법제지원,공보,미디어,민원)

□ 특례시의 의회사무기구 조직은 광역(시·도)의회와 비교하여 사무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1담당관(의정담당관), 5팀(창원은 4담당)의 행정지원과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과 전문위원에 대한 지원인력(입법정책지원)의 입법지원의 기능을 구분하여 의회사무처를 구성하고 있음

○ 특례시의회사무기구는 상임위원회 입법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5급 또는 6급의 전문위원은 임기제 및 일반행정직의 신분을 가지며 이들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고 있음

○ 4개 특례시의회의 의회사무기구의 현원을 행정지원과 입법기능으로 구분하여 보면 입법지원 대비 행정직원의 비율이 최소 2.06에서 최대 4.11로 나타남

- 고양시의 경우 현원 기준 총 49명의 사무기구 구성원 중 16명(32.7%)이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여 행정직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수원시의 경우 현원 42명 중 9명(19.6%)이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여 행정직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용인과 창원시는 각각 25%와 24.1%의 사무직원이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행정직원과 입법직원의 기능 배분이 3:1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V-13> 4개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현원 현황

	사무국(A) (전문위원실 제외)	전문위원(B)	전문위원실(C)	소계 A (사무국(A)+ 전문위원실(C))	소계 B (사무국(A)+ 전문위원실(C)+ 전문위원(B))	행정:입법 (A:(B+C))
고양	33	6	10	43	49	2.06:1
수원	37	5	4	41	46	4.11:1
용인	39	6	7	46	52	3:00:1
창원	3544	5	9	53	58	3.14:1

자료: 4개 특례시의회 홈페이지 내 조직현황의 내용을 재구성(현원 자료와 내용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음)

<표 V-14> 4개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사무직원 현원 현황

	사무국	담당관	비서실	의정	의정기록	의사	의회홍보	입법지원	계
고양	2 (비서 1)	1	3	11	5	3	5	3	49
수원	1	1	8 (부의장 3)	10	5	5	8	3	42
용인	2 (비서 1)	1	4	11	4	3	7	3	37
창원	1	1	4	10 (속기 분담)		5	7	4	46

자료: 4개 특례시의회 홈페이지 내 조직현황의 내용을 재구성(현원 자료와 내용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음)

- 특례시의회는 의회사무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 아래 의사, 의정, 기록, 입법지원의 4개 담당을 공통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추가로 홍보 담당을 두는 시의회도 있음
- 입법지원의 기능은 조례안의 작성 및 정비와 같은 법제 기능이며, 입법을 위한 연구조사 및 예산분석/평가 등의 기능은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례시의회의 입법을 위한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 등은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위원별로 1인에서 2인의 사무직원이 보좌 인력을 배치함

- 특례시의회의 의원정수의 변화 또는 지자체의 특례시로의 지위 재정립에 따른 권한의 추가 발굴과 기능 확대의 환경 변화의 발생에 따라 특례시의회 조직 및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 정책보좌인력이 의원정수의 50% 규모로 추가 증원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특례시의회의 사무기구의 조직 규모는 제도 변화에 따라 정원의 자연적인 증가가 예상됨
 - 이에 더하여, 특례시의회에 추가되는 자치권한의 행사를 위한 입법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입법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임
 - 의회조직의 변화와 별개로 의회 및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규모의 확대 및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위임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기구 내 인적 자원 및 재정 자원에 대한 관리가 의회사무기구에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특례시의회의 사무 분장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특례시로의 전환에 따라 일부 사무 및 기능의 강화, 유지, 축소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역시 아래의 표에 수록
 - [의회조직 확대] 특례시는 지자체로서의 지위 변화에 따라 광역 지자체로부터 권한을 공유 및 이양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음
 - 특히,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광역 지자체와 독립적 또는 협업의 방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김에 따라 지역주민의 권익 강화 및 민원·청원 등에서 의회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 예상
 - [의회사무기구 확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의회사무기구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의 확보와 의회 조직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회사무기구의 기능 및 조직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행사 주체가 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인적 자원의 관리 기능이 의회사무기구 내에 강화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운영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함
 - 조직운영은 인적자원 및 재정자원의 관리적 목적에서 대내 인사, 총무, 회계 업무 수요의 증가와 특례시로서의 지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대외 업무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기능 강화가 필요함
 - 특례시의 입법 활동이 권한 확대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위원실

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원회별 입법 기능의 강화와 사무기구의 자체적인 입법지원 역량 강화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V-15> 4개 특례시의회 직무 내용 및 평가(가안)

구분	직무 내용	직무			변화 방향
		강화	유지	축소	
사무국장	의회업무총괄		○		• 직급 조정: 4급에서 2~3급
의정(화)담당관	의회담당 업무총괄		○		• 직급 조정: 4~5급 직급 부여
전문위원	상임위원회 업무총괄	○			• 상임위원회 추가: 전문위원증원 • 직급조정: 4~5급 직급 부여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 업무지원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의원정책개발지원	◎			• 전문위원실 운영 2원화 • 행정지원: 일반경력직 공무원 • 입법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전문위원실 배치 후 기능 강화
비서팀	비서업무 총괄 비서업무 수행(의장 및 부의장)		○		• 현행 유지
의정팀	의정업무총괄 사무국 서무, 회계, 기록물 관리 사무국 인적자원관리 의회시설(정보통신 방송) 및 차량관리 의원 재산등록, 연수 및 교육 의전수행(의장) 의전수행 및 업무차량 운행 의원실 비서업무	○			• 행정지원 기능 강화 • 사무기구 운영지원 부문 기능 강화 • 사무기구의 인적자원 관리 기능 • 사무직원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 의회예산자율권 확대 대비 재정적 자원 관리 기능 강화 • 지방의회의 정보화 대응 • 스마트의정 대비
의사팀	의사업무 총괄 본회의, 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		• 지방의회 입법지원 • 행정지원 기능 중심 현재 유지
의정기록팀	의정기록업무 총괄 본회의,위원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전자회의록 등록		○		• 지방의회 입법지원 • 행정지원 기능 중심 현재 유지 등 ICT 기술 도입 대비
입법지원팀	입법지원업무 총괄 입법업무 지원, 의안검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연구활동 지원	◎			• 입법지원기능 강화 • 정책지원전문인력 • 입법조사/예산분석 기능 강화
홍보팀	홍보업무 총괄 언론 및 보도사항 홈페이지, 유튜브 및 SNS 홍보자료 수집 및 제작	◎			• 특례시전환에 따른 의회 활동의 대내외 적극 홍보 필요성 증가 • 공보 및 민원소통 분야기능의 별도 분리(시민권의 전담부서화)

3. 특례시의회 및 의회사무기구의 인력 수요 및 조직 진단 결과(소결)

1) 특례시의회 적정규모 추정

□ 특례시의회는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로 정의되며, 시의회의 의원정수(시의회 규모)는 당해 광역지자체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광역지자체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해 결정됨

- 현재 『공직선거법』의 제23조2항에서는 기초지방의회(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최저선을 정하고 있으며, 최소정수는 7인임
 -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은 지방의회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지방의회의 선거구가 새로 확정된 경우에만 한정함
 - 기초지방의회의 의원의 총정수는 광역지자체의 관할구역 안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함
- 특례시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시·군·구의회의 의원정수는 지역인구의 변화율(증가율)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음
 - 증원된 기초의회 총의원정수는 다시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해 지역별로 배분되며, 선거구 및 행정구에 따른 기초지방의회의 규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최소정수 7인을 우선 보장하고, 그 이후 인구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의원정수를 배분하고 있음
 - 현재의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은 특정 기초지방의회의 인구 대비 소극적 대표성의 한계와 지역 간 의원정수의 불균형한 배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 규모의 증가 대비 적정한 기초지방의회의 증원에 있어서 시의적절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초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결정을 광역지자체의 선거구 및 행정구 단위로 총량으로 정한 후 배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기초지자체의 선거구 및 행정구의 인구 비례로 산출한 후 광역 단위로 합산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인구 비례에 따른 기초지방의회의 적정한 의원정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추정할 수 있음

- 첫 번째 시나리오는 8기 (전반기) 지방의회의 기초지방의회의 구성에 있어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추정하는 것임
 - 8기 전반기 지방의회(2019년 3월 현재)는 기초지방의원 1인이 17,370명의 지역 인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 고양시의 적정 의원정수는 60.0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의원정수에서 27명을 증원하여야 함
 - 수원시의 적정 의원정수는 70(69.2)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의원정수에서 33명을 증원하여야 함
 - 용인시의 적정 의원정수는 58(57.8)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의원정수에서 29명을 증원하여야 함
 - 창원시의 적정 의원정수는 61(60.9)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의원정수에서 17명을 증원하여야 함
-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특례시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추정하는 것임
 -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의원 1인이 21,526명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특례시의 적정 의원정수는 고양시 49명, 수원시 56명, 용인시 47명, 창원시 50명임
 - 대전광역시의 경우 시의원 1인이 23,845명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특례시의 적정 의원정수는 고양시 44명, 수원시 51명, 용인시 43명, 창원시 45명임
 - 울산광역시의 경우 시의원 1인이 23,308명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특례시의 적정 의원정수는 고양시 45명, 수원시 52명, 용인시 44명, 창원시 46명임
- 세 번째 시나리오는 광역의회 중 특례시와 같은 단층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종과 제주도의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추정하는 것이며, 세종이 15,561명, 제주가 15,281명의 의원 1인당 인구수임을 고려하여 15,500명을 기준으로 의원수를 추정함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광역의회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특례시의 적정 의원정수는 고양시 68명, 수원시 78명, 용인시 65명, 창원시 69명임
- 네 번째 시나리오는 특례시가 속한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의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추정하는 것이며, 경기도의 기초의원은 1인당 28,938명을, 경상남도의 기초의원은 1인당 12,939명을 대표하고 있음
- 당해 광역지자체 내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특례시의 적정 의원정수는 고양시 37명, 수원시 42명, 용인시 35명, 창원시 82명임

<표 V-16> 4개 특례시의회 적정 규모 추정(안)

구분	인구 ⁺	의원 정수	의원 1인당 인구수	인구비례별 적정 의원정수 추정(2019년 3월 기준)			
				기초의회 _1인당 평균	광주/대전/울산 _1인당 평균	세종/제주 _1인당 평균	해당광역지자체 _1인당 평균
				17,370	21,526	15,500	28,938/12,939
고양	1,080,507	33	32,743	60.0	43.7~48.4	67.2	36.01
수원	1,218,821	37	32,941	69.2	50.4~55.9	77.6	41.56
용인	1,092,895	29	37,686	57.8	42.1~46.6	64.8	34.70
창원	1,034,527	44	23,512	60.9	44.3~49.1	68.2	81.69

주: 4개 특례시의 지역인구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료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함

□ 의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특례시의회의 적정규모를 추정할 경우, 특례시로 이양되는 지자체의 사무 및 기능에 대한 추가 자료 조사가 필요함

- 현재 특례시와 광역도 간의 권한 배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례시의회의 의정활동의 변화 방향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추산할 계획임
- 특례시의회의 관장 사무 중 교육(광역교육감에 대한 견제 필요), 안전(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응), 건설교통(특례시 자체 개발을 위한 의결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사무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위해 최소 1개의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무량 증가를 상임위원회 증가와 연결할 경우, 상임위원회 1개 추가에 따른 지방의원정수의 증원이 필요하며, 이 경우 광역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평균 9명의 지방의원을, 기초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평균 7명의 지방의원을

운용함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지방의회정수의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음

<표 V-17> 4개 특례시의회 적정 규모 추정(안)

구분	인구	의원 정수	의원 1인당 인구수	추가 기능별 적정 의원정수 추정				
				상임위원회 추가 (광역 평균 8.85)		상임위원회 추가 (전체/기초 평균 64)		추가
				+9		+7		
고양	1,080,507	33	32,743	42	25,727	40	27,013	교육,안전,건설교통
수원	1,218,821	37	32,941	46	26,496	44	27,700	교육,안전,건설교통
용인	1,092,895	29	37,686	38	28,760	36	30,358	교육,안전,건설교통
창원	1,034,527	44	23,512	53	19,519	51	20,285	교육,안전,건설교통

2)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적정규모 추정

□ 본 연구는 특례시의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의회조직의 적정규모 추정과 같은 ①타시도 대상 벤치마킹과 ②광역시도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을 통한 규모 추정을 실시함

○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의 적정 인원의 규모는 특례시의회의 구성 변화에 의해 유동적일 수 있으나, 특례시의회의 입법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기능의 강화와 향후 증원이 예상되는 정책 지원 인력에 의해 향후 증가가 예상됨

- 본 연구에서의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의 적정 규모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제외한 사무직원(사무국 소속 및 전문위원실 소속 포함)을 중심으로 추정되었음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규 충원에 따른 규모의 확대는 제도 변화에 따른 내용이며, 본 연구는 현재의 행정 및 입법 기능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추정하였음

-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활용 방향에 따라 적정 규모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충원 규모(의원정수 대비 1/4 및 1/2 규모)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특례시의회사무기구의 현황은 의원 1인당 1.3명 이하의 사무직원의 정원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사무직원 수와 비교하여 과소한 규모임

- 2019년 5월 기준 광역시의회의 의원 1인당 사무기구 직원의 정원은 평균 2.18

명, 기초의회의 의원 1인당 사무직원의 정원은 평균 1.38명임(행정안전부, 2019: 8기 전반기 지방의회 현황)

- 2021년 3월 현재,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총수는 2,587명, 정원은 2,006명(일반직, 별정직, 일반임기제 등)이며, 이를 반영하면, 광역의회의 의원 1인당 사무직원 정원의 평균은 2.42명임 (행정안전부, 2021: 8기 후반기 지방의회 현황)
- 광역의회 중 광역시의회는 지방의원 1인당 평균 2.26명의 사무직원 정원수, 광역도의회는 지방의원 1인당 평균 1.69명의 사무직원 정원수를 보유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2021: 8기 후반기 지방의회 현황)

○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의 사무직원 정원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사무직원 정원의 비율에 비례하여 증원할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은 인력 수요 추가가 예상됨

- 아래의 표는 의원 1인당 사무직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례시의 사무기구의 정원을 추정한 결과로, 광역 평균 2.18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시의 2.55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 단층제인 세종시와 제주도의 1.94와 3.93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 등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임
- 벤치마킹 대상인 울산, 세종, 제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및 인구 규모 등의 차이점으로 울산과 제주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의원 대비 사무기구직원의 정원의 비율이 높으며, 세종은 낮음. 비교적 신설 지자체인 세종시의 경우 기존 기초지자체의 통합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비율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확정된 것으로 보임
- 이상의 벤치마킹 이외에, 최소 기준으로 기초 지자체의 평균비율인 1.38의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4개 특례시는 3에서 8명의 정원 확대의 필요가 발생함

<표 V-18> 4개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적정 규모 추정(1안)

구분	사무직원 총수	의회사무기구 사무직원 총수 적정 규모 추정				
		광역 평균 적용(2.18)	기초 평균 적용(1.38)	벤치마킹 A (울산: 2.55)	벤치마킹 B (세종: 1.94)	벤치마킹 C (제주: 3.93)
고양	50	71.93	45.63	106.91	81.67	165.07
수원	43	80.65	51.16	104.36	79.72	161.14
용인	37	63.21	40.10	89.09	68.06	137.56
창원	46	95.91	60.84	112.00	85.56	172.93

□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의 사무직원 정원의 규모 추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함

○ 인력규모 추정에 있어서 회귀분석의 목적은 조직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추정한 이후 각 변수의 현황을 고려할 때의 인력규모의 예측치를 추정하는 것으로 조직 규모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력을 평균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회귀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인구 10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인구 100만 이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입법 관련 통계자료의 활용이며,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7개 광역시도와 4개 특례시를 포함함

- 본 연구에서는 사무기구의 적정 규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시 또는 도), 재정자주도(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의원 1인당 인구수(행정안전부 「8대 전반기 의정백서」), 지방직 중 일반직 공무원의 수(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의회의 활동 실적(조례개정발의, 건의결의안 발의, 시정질의참여 등) (참여자치연대 「2019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을 고려하였음

- 재정자주도 이외의 연구의 주요 변수(독립 및 종속변수)는 2019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 분석 자료를 통하여 탐색된 의회사무기구의 적정 규모에 대한 추정 모형은

$$\begin{aligned} \text{사무기구 정원규모} = & -50.23 - 64.76 * \text{시} + 1.21 * \text{재정자주도} \\ & + 0.001 * \text{의원1인당인구수} + 0.012 * \text{일반직공무원수} \\ & + 0.627 * \text{조례개정발의건수} + 0.429 * \text{건의결의안발의건수} + 0.253 * \text{시정질의참여의원수} \end{aligned}$$

로 도출됨

- 구체적으로, 도에 비하여 시의 자치단체가 적은 수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원 1인당 인구수, 일반직 공무원, 조례개정발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9 > 의회사무기구 적정규모 추정: 회귀분석 결과

Predictor	Estimate	SE	t	p	Stand. Estimate
Intercept *	-50.22956	52.48536	-0.957	0.356	
시도:					
시 - 도	-64.75903	25.09189	-2.581	0.023	-0.6802
재정자주도	1.21307	0.98297	1.234	0.239	0.1516
의원1인당인구수	0.00115	3.13e-4	3.673	0.003	0.2770
일반직공무원	0.01223	0.00476	2.566	0.023	0.2444
조례개정발의(건수)	0.62687	0.19809	3.165	0.007	0.4677
건의결의안 발의(건수)	0.42914	0.36221	1.185	0.257	0.0732
시정질의참여의원수	0.25291	0.37710	0.671	0.514	0.0555

* Represents reference level

□ 타지방자치단체와의 벤치마킹 및 회귀분석 결과로 추정할 수 있는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적정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4개 특례시 모두 사무직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사무직원의 수보다 적은 규모로 특례시의회사무기구를 구성하고 있음
-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창원시를 제외한 3개 특례시의 사무기구 정원규모는 광역과 기초의회 사이의 중간 수준이 되며, 창원시는 기초의회 평균과 가까워짐
- 아래 표에서의 회귀분석 결과의 추정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추정한 연구 모형에서 특례시의 현황 자료를 추가하여 재분석한 후 추정한 모형으로 위 회귀분석 모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4개 특례시 중 창원시는 타시도에 비하여 의원1인당 사무직원의 비가 1:1로 적은 규모를 가진 의회사무기구에 해당하며, 창원시를 포함한 회귀모형을 통한 정원 규모는 4개 특례시를 제외한 모형과 비교하여 과소 추정될 수 밖에 없음
- 특히, 회귀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 시인 경우 정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예측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4개 특례시를 광역지자체로서의 시와 동일하게 고려할 경우 의회사무기구의 적정 규모는 적은 규모로 추정됨

-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4개 특례시의 도시지역 거주 인구비율을 시도의 특성에 대한 가중치로 적용하여, 적정 규모를 추가로 예측하였음. 그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이 행정구역 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인시 및 창원시에서의 적정 인원의 예측치가 일부 증가함을 보여 줌

<표 V-20> 4개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적정 규모 추정(2안)

구분	현황		회귀분석 모형 1: 17개 시도		회귀분석 모형 2: 21개 시도 및 특례시		규모예측 가중치 추가 행정구역 도시인구비율	
	사무직원 정원	의원정수 (의원 1인당 사무직원수)	예측 직원총수	의원 1인당 직원비	예측 직원총수	의원 1인당 직원비	예측 직원총수 (도시인구비율)	의원 1인당 직원비
고양	50	33	58.47	1.77	58.51	1.77	58.47 (100%)	1.77
수원	43	37	57.05	1.54	57.08	1.54	57.05 (100%)	1.54
용인	37	29	57.41	1.98	57.45	1.98	60.99 (94.48%)	2.10
창원	46	44	60.65	1.38	60.67	1.38	65.32 (92.78%)	1.48

□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적정 규모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사무기구의 조직 규모의 확대를 제안함

○ 4개 특례시의 사무기구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행정 활동의 수요에 대응하여 확대되는 것이 적절함. 지방의회의 활동 실적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경우 4개 특례시에 적합한 규모는 다음과 같음

- 고양시의 경우 현재 50명에서 57명으로 7명의 인원 순증가가 필요하며, 이 경우 의원 1인당 사무기구의 직원 비율은 1.52에서 1.73으로 증가하게 됨
- 수원시의 경우 현재 43명에서 58.5명으로 15~16명의 인원 순증가가 필요하며, 이 경우 의원 1인당 사무기구의 직원 비율은 1.16에서 1.58로 증가하게 됨
- 용인시의 경우 현재 37명에서 57.5명으로 20~21명의 인원 순증가가 필요하며, 이 경우 의원 1인당 사무기구의 직원 비율은 1.28에서 1.98로 증가하게 됨. 용인시는 의원 정수에 비하여 사무기구의 적정 규모가 과다 추정되어 도시 거주인구비율의 가중치 적용을 예외로 함
- 창원시의 경우 현재 46명에서 65.3명으로 19~20명의 인원 순증가가 필요하며, 이 경우 의원 1인당 사무기구의 직원 비율은 1.05에서 1.48로 증가하게 됨

4. 특례시의회사무기구의 조직 적정성 분석 및 조직모형 발굴

□ 특례시의회사무기구는 특례시의 지위 변경과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의 확대 및 기능의 추가가 필요한 상황임

- 특례시의회사무기구의 전체 조직은 의장(비서)실, 부의장(비서)실, 전문위원실 등을 포함하나,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음
- 특례시의회사무기구는 현재 특례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의정담당관과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이원체제를 가지고 있음
 - 의정담당관은 현재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기획조정, 운영지원, 인적 및 물적자원, 의정연수 등)를 담당하는 행정관리기능과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을 위한 사무(의사진행, 의안관리, 회의록 작성, 입법지원)를 담당하는 입법지원기능을 총괄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관리기능은 통상 의정, 의사, 의정기록 등으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 지원은 입법지원기능으로 분류되며, 이외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기록 및 홍보를 위한 기능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음
 -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직무로 하여, 안전심사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지원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주로 담당함

□ 특례시의회사무기구의 재설계는 조직관리시스템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기능과 기구 및 인력의 재설계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재설계의 원칙 및 방향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음

- 의회사무기구에 부여된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의 기능, 기구 및 인력은 의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설계의 최적성이 유동적이며, 이에 따라 기구의 재설계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의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제도의 주요한 변화는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인사자율성 및 예산편성의 자율성 강화로 요약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예산, 인사, 정보화시설 등의 시설관리, 국제교류, 민원 등의 기능 강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례시

의 경우 도시 규모 확대에 따른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등에 대한 사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례시의회사무기구의 재설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①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②의회기능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기능강화를 반영하여야 함
 -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배치 및 활용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지원 사무기구를 중심으로 한 입법지원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과 전문위원의 입법지원을 중심으로, 사무기구의 경우에는 법제지원, 정책조사, 사업평가 등의 입법지원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함
 - 의회사무기구의 기능 강화는 행정관리기능과 입법지원기능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음. 행정관리기능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 및 회계관리, 계약 및 입출금 관리를 중심으로, 입법지원기능은 의사, 민원, 입법,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 특례시의회사무기구의 조직 모형으로 아래의 2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제1안: 행정관리와 입법지원 기능의 구분
 - 특례시의회사무기구는 의정담당관과 입법담당관을 설치하고, 행정관리기능은 의정담당관으로, 입법지원기능은 입법담당관으로 배분함
 - 의정담당관은 의회의 운영 지원을 위한 기획예산, 의정, 언론홍보, 시설관리 등의 기능을 주관 사무로 함
 - 인사권의 독립에 따른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관리기능과 지방의회의 예산자율성 강화에 따른 회계 및 계약 관리 등의 의회의 재정적 자원의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운영지원팀을 신설하도록 함. 그 이외 시설 관리 및 정보 자원 등의 관리도 운영지원팀에서 담당함 (기존 의정팀 업무 유지 + 추가 기능(인사 및 예산) 강화)
 - 특례시 지위 변경에 따른 시민 체감도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언론홍보 및 공보 기능의 중요성 확대를 반영하여 의정홍보팀을 신설하도록 함.
 - 그 이외 대외협력(국회 및 국내외 타지자체 관련 업무 포함)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 관련 기능을 추가 강화하도록 함 (홍보팀 기능 유지 + 민원 관리 기능 추가)

- 입법담당관은 입법정책, 법제지원, 예산분석, 정책조사, 사업평가 및 의사, 기록 등을 주관 사무로 함
- 입법담당관 아래에 의사팀을 두고 기존의 의사 진행 지원 및 기록 관리 기능을 유지하며, 의회의 기능 강화 및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속기사의 인원 증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추가적으로 AI 기능의 발전에 따른 속기 및 의회기록물 관리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입법팀의 기능을 추가 확대하여 입법정책팀과 예산정책팀을 추가 신설하도록 함. 입법정책팀은 입법지원 및 의안검토 기능을 담당하며, 예산정책팀은 예산 및 정책별로 예산분석, 정책조사, 사업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를 추가 분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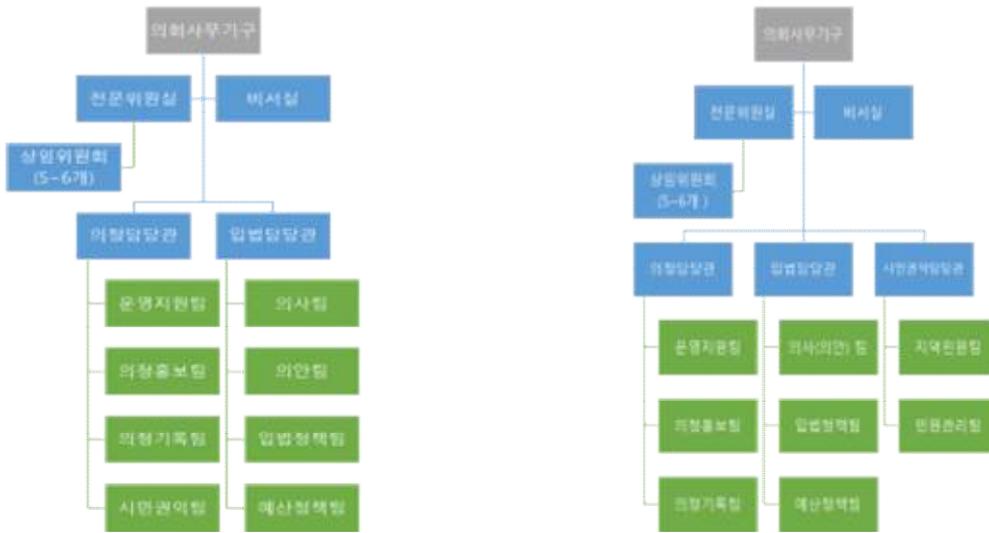
○ 제2안: 행정관리와 입법지원 기능의 구분 + 시민권익기능의 신설

- 제1안의 의정담당관(운영지원)과 입법담당관(입법지원)의 기능 분리에 더하여 특례시 지역 주민의 민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
- 시민권익담당관은 특례시 전환에 따라 광역도에 대한 민원과 특례시에 대한 민원을 구분하고, 특례시 사무와 관련한 민원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의 정확한 분석과 형평성이 동반되는 민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민권익담당관의 업무는 신설로 민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민원통계분석과 여론조사, 읍부즈만 기능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민권익담당관의 업무는 의정활동 지원(constituent services)로 지방의회의원과 유권자 간의 관계 형성 및 유권자의 민원이 지방의회에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지원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담당관을 신설하도록 함
- 시민권익담당관의 업무 강화를 위해 지역민원팀과 민원관리팀을 두도록 하며, 지역민원팀의 경우 의원공약실천, 행정사무감소, 민원해소자문 등의 업무를, 민원관리팀의 경우 일반 및 의원 민원의 응대 및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림 V-1> 특례시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 대안

1안: 행정관리 + 입법지원 기능 구분

2안: 행정관리, 입법지원, 시민권익 기능 구분



□ 특례시의회는 광역도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음으로써, 광역의회와 대등한 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특히, 중앙정부 등과의 관계에서 특례시는 광역도와 협력 및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특례시의회의 조직개편은 의회사무기구의 기능 강화 및 대외 관계에서의 직급의 상향 조정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함

○ 특례시의회는 광역의 지방의회와 유사 또는 동등한 사무에 대한 입법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광역의회와 동등한 수준의 의회사무처 (또는 의회사무국)로의 지위 변경 및 직급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특례시의회의 사무기구의 장을 2급 또는 3급의 사무처장으로 하며, 사무기구의 장의 직급에 따라 전문위원 및 담당관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의회사무처를 두고 2~3급으로 기구의 장의 직급을 정급하고 있음
- 현재의 의회사무기구의 직급기준은 서울, 부산, 기타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를 수직적 계층으로 구분하여 정급을 하고 있는데, 이 중 기타 광역 시도와 특례시 간의 경계가 불명확함. 특례시가 광역도로부터 광역행정을 위한 사무 이외의 사무를 위임 받을 경우, 특례시의회와 광역시도의회의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짐. 이에 따라,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광

역도의회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사무기구의 장을 사무처장으로 정하고, 2급 또는 3급을 정급하도록 함

- 의회사무기구는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아래에 실·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담당관을 설치하도록 함

○ 특례시의회의 확대 방향에 따라 특례시의회는 사무처장 아래의 2담당관 8팀 또는 3담당관 8팀의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 2담당관의 직급은 4~5급으로, 담당관 직속의 팀장의 직급은 5~6급으로 복수직급으로 지정하며, 의정담당관을 선임담당관으로 지정하며, 운영지원팀장, 의사팀장, 지역민원팀장을 선임팀장으로 지정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이 중 입법정책담당관과 시민권익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처장 및 담당관의 직급은 집행기관에 대한 기능 및 균형성, 업무의 양과 난이도, 시도 간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례시의 주요 직위과장에 대응하여 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직급을 4~5급으로 정하고, 특례시의 주요 팀장에 대응하여 담당관 아래 팀장을 두고 직급을 5~6급으로 복수직급을 정하도록 함

<표 V-21> 4개 특례시의회사무기구 정원(안) - 팀장급 이상(1실, 3담당관, 8팀)

	2~3급	4급	5급	6급	비고
의회사무처장	1				2~3급 상당 일반직
의정담당관		1			4급 상당 일반직
운영지원팀			1		4~5급 상당 일반직
의정홍보팀				1	5~6급 상당 일반직
의정기록팀				1	5~6급 상당 일반직
입법담당관		1			4급 상당, 개방형 직위
의사(의안)팀			1		4~5급 상당 일반직
입법정책팀				1	5~6급 상당 일반직
예산정책팀				1	5~6급 상당 일반직
시민권익담당관			1		4급 상당, 개방형 직위
지역민원팀				1	4~5급 상당 일반직
민원관리팀				1	5~6급 상당 일반직
비서실					
의장비서실			1		5급 상당 일반직 및 정무직
부의장비서실				1	6급 상당 일반직
전문위원실					
의회운영		1			4~5급 상당 별정직
기획,행정,지방자치		1			4~5급 상당 별정직
경제,산업,안전		1			4~5급 상당 별정직
도시,교통,건설		1			4~5급 상당 별정직
교육,문화,복지		1			4~5급 상당 별정직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련하여 아래의 2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제1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전문위원실 배치

-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하며,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함. 이 경우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의원정책개발 및 지원활동 관련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며, 전문인력은 상임위원회별 입법조사, 법제지원, 사업평가, 및 예결산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정책 대상별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정책전문인력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상임위원회별 입법활동에 대한 입법지원기능을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장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직위이고,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위원은 의회

사무기구의 사무직원과 구분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적인 보좌 인력을 직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보좌 전문인력을 각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별로 배분하여, 의원 1인당 입법지원기능 제공하는 보좌인원을 증원하여 의안검토 등과 관련된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사와 연구기능이 가능한 전문성 및 역량 기반으로 지방의회가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입법조사관, 정책자문위원,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정책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위원실을 확대 및 강화하도록 함

○ 제2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입법담당관실 배치

-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입법담당관실 내 입법정책팀과 예산정책팀에 배분하며, 입법정책팀과 예산정책팀은 각각 국회의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 상응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능을 분담함
- 입법정책팀은 입법조사, 법제지원, 정책연구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정책팀은 사업평가 및 예결산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별로 전담팀을 만드는 방안과 입법 및 예산정책의 과정별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연구 및 분석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정책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정책 및 예산정책의 직무를 분장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자체의 입법조사역량을 확대 및 강화하도록 함
-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정책조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아닌 의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활용은 의회사무기구 내의 사무직원 중 연구조사직군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음

VI.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운영 방안

1.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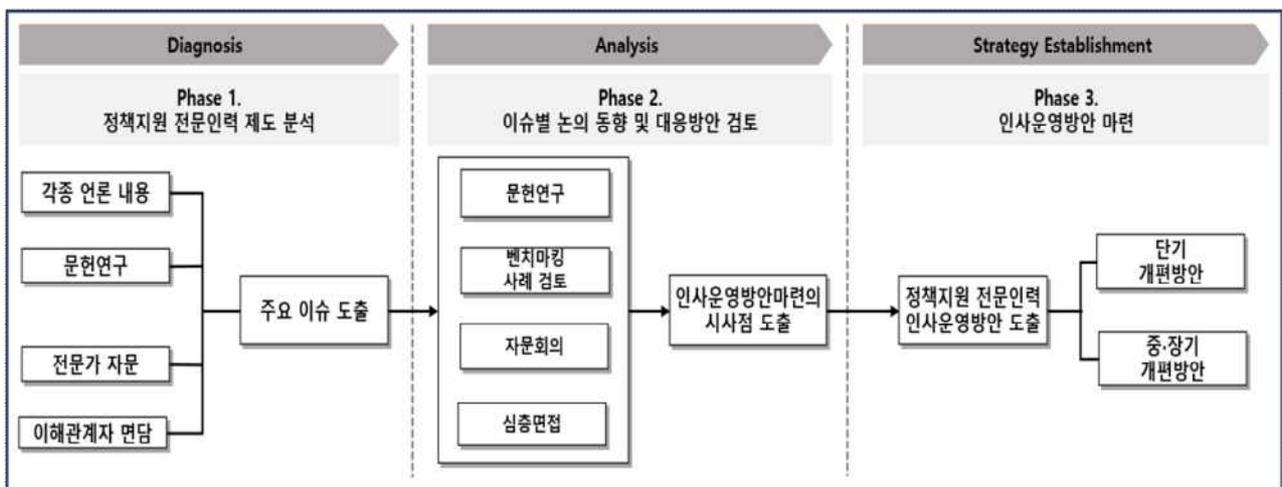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을 대비한 인사운영 방안의 모색에 있음

□ 본 연구의 수행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사행정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인사행정의 주요 활동 국면들을 도출하고 해당 관점에서 현재 지방의회 인사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진단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한 이슈들을 도출하고자 함
- 특례시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와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해 특례시의회에 보다 적시성을 가질 수 있는 인사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그림 VI-1> 본 연구의 추진전략



2.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관

□ 202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2022년 1월부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임.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서 부여되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신설됨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1조 제1항). 그러나 인원 충원 시 일시선발에 따른 재정 및 행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되도록 규정하고 있음(부칙 제6조)

<표 VI-1>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구분	내용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인력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 이에 따라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이 포함될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임. 하지만 지방의회의 특수성 및 지역적 맥락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은 지방의회의 관점에서 마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관점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주요 이슈

□ ‘조직차원의 보좌인력’ vs. ‘개인차원의 보좌인력’

- 국회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유급보좌인력은 유형별로 ‘조직차원의 보좌인력’ 과 ‘개인차원의 보좌인력’ 으로 구분 가능함. 먼저, 국회의 유형별 유급보좌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조직차원의 보좌인력)**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연구관, 국회예산정책의 예산분석과, 국회사무처의 법제관 등이 여기에 해당함
- **(개인차원의 보좌인력)**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이에 해당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좌직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고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정원과 보수를 ‘국회의원에 게 지급하는 수당 체계’ 에서 정하고 있음
- 유형별 보좌인력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VI-2> 유형별 보좌인력의 특성

조직차원의 보좌인력	개인차원의 보좌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인사위원회의 공적(公的)인 채용과정과 공적인 지휘명령 체계를 따름 •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조직의 공적(公的)인 지휘명령 체계를 따름 • 의정활동 지원 대상인 개별 의원의 평가가 아닌 조직 내 공무원에 의한 공적(公的)인 평가를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의원의 사적(私的)인 추천 및 제청과 임용권자에 의해 공적(公的)으로 임용됨 •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일반적인 복무관리는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조직의 공적(公的)인 지휘명령 체계에 속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실 소속으로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사적(私的)인 지휘명령에 따름 • 평가관계는 공적(公的)인 성과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의원의 임용의 계속여부를 평가받음

자료 : 최춘규(2021) p.173의 내용을 재구성

- 한편, 지방의회의 조직차원의 보좌인력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차원의 보좌인력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개인차원의 보좌인력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음
- 개정 「지방자치법」상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법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조직차원의 보좌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조직차원의 보좌인력’으로 상정할 경우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인사위원회 구성)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 승진, 징계, 교육, 훈련 등 인사 전반에 관한 권한을 지방의회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해짐. 이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인사위원회의 공적(公的)인 채용과정을 거쳐야 함.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의회 위원은 인사위원회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향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제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 제한에 따른 다양한 갈등 발생의 소지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음
 - (평가)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근무실적 평가 역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지휘명령 체계)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소속으로 조직의 공적인 지휘명령 체계를 따라야 함. 해당 관점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간 지휘명령 체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은 주요 이슈로 제기될 수 있음

3. 이론적 고찰: 지방의회 인사행정의 의의와 구성요소

□ 인사행정(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혹은 공공 인적자원관리(public human resource management)란 공공부문이나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행동과 태도를 통제하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동태적인 관리활동이나 체제를 의미함(강성철 외, 2019). 즉, 인사행정은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활동’ 이라 할 수 있음

- 인사행정은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이며 보좌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인사관리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기구의 인력 관리 활동이란 점에서 차이를 지님(유인석, 2005)

□ 이러한 관점을 차용해 지방의회의 인사행정에 적용시키면 ‘의회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활동’ 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즉, 지방의회의 인사행정은 지방의회의 인사행정은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함
-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조직의 활동은 본연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됨.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인적자원관리 역시 그 개념이나 목표,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이 중요하게 부각됨(방희범, 2010)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등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함. 지방의회의 인사행정은 지방의회의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황아란, 2003)

□ 지방의회 인사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범주화될 수 있지만, 인사행정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로서 크게 6개 영역 인력계획, 공직구조의 형성, 충원, 능력발전, 동기부여, 그리고 규범과 통제 등으로 구분됨(이종수·윤경진 외, 2002)

<표 VI-3> 인사행정 구성요소

구분	내용
인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직에 필요한 인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단계 • 지방의회 경우, 의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장기 수요의 예측에 따라 파악된 인력 수요를 직급별, 직종별로 공급과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지방의회의 자주적인 인력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현행체제는 의정지원에 필요한 유능한 인력공급에 한계를 지님
공직구조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증감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직위에 대한 직무설계 단계 •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구성은 대체로 일반행정 관리에 치우쳐 있으며, 의회 지원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문위원실 등 실제적인 의정활동 지원조직이 매우 빈약한 것은 집행기관 중심적인 사고가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지배하고 있음을 시사함
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기구의 구성원을 선발하는 단계 • 지방의회 및 사무기구의 인력 충원은 대부분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을 통한 내부임용 중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전문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무기구 직원의 경우 전문성 확보차원에서의 임용방법 개선이 요구됨
능력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을 의미 • 능력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과 전직, 전보 등이 포함됨
동기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의욕, 사기가 조직 구성원의 능력발휘에 중요 변수로 간주
규범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써 정치적 중립은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공평성을 의미함

4. 사례분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제도

(1) 정책연구위원 제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39조에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 지원 및 도의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제도는 사실상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모델이 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의 전반적인 인사행정관련 사항은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에 규정하고 있음

○ (직급 및 정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정책연구위원)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정책연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됨⁷⁾

6)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7) 제4조(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②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그림 VI-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도



- **(채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은 각 전공별 석·박사급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의회사무처에서 전국 공개모집을 통해 의회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독립적으로 선발하여 임명하고 있음
- **(임용권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⁸⁾
- **(의회인사위원회)** 동법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관), 제5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기관 그리고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8)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임용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1.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표 VI-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인사위원회 관련 사항

구분	내용
의회인사위원회 설치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② 의회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의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1.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1. 지방의회의원
의회인사위원회 기관	제4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회인사위원회 기능	제5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의회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총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1.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1.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1.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 (임용과 시험) 동법 제8조(임용의 기준)⁹⁾, 제9조(신규임용)¹⁰⁾, 제10조(시험의 공고)¹¹⁾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문을 중심으로 채용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임용자격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문화예술경영분야 정책자문위원 공고문에서 임시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9) 제8조(임용의 기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10) 제9조(신규임용) 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의한다.
 ② 신규임용시험은 의회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 게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1) 제10조(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에 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표 VI-5> (예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예술 경영분야 정책자문위원 임용자격 기준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 기준
문화예술 경영분야	지방행정5급 (일반임기제)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학 위>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해당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문화예술 경영분야 정책 수립 및 조사 업무 등 문화예술경영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채용방법)**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각 전형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VI-6> (예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예술 경영분야 정책자문위원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2차 시험: 면접시험	• 면접시험을 통해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지휘관계 및 성과평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 제4항에서는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정책자문위원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으로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 한편 「제주특별법」 제39조는 정책자문위원에 대하여 ‘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소속으로 전문위원의 지휘감독과 별개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개별의원의 지휘명령 관계 또한 성립 가능함. 이와 같이 이원화된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 지방공무원 평가방식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전문위원’과 ‘사무처장’의 조직 내 상급자 평가와 함께,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의 다면평가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특이점이 있음(최준규, 2021)

- 「제주특별법」상의 법령을 근거로 전문위원 및 사무처장외에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에 의해 연간 1회 근무성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근무실적평가는 성과급 뿐만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 연장평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제도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VI-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제도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 제주특별법
임명권자	• 도의회 의장(공개채용)
직 급	• 임기제 또는 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
정 수	• 최대 21인(위원회별 1~3인)
지휘관계	•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 의원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지휘감독
법적성격	• 정치 중립 의무 • 의원 의정활동 직접 지원 시 국회의 ▲입법조사연구관, ▲법제관, ▲정책연구위원, ▲정책보좌관 역할을 두루 담당 • 상임위원회 지원 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역할 담당
기 능	•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자료 : 최춘규(2020) p.174~175의 내용 재구성

(2) 정책연구위원 제도의 시사점

□ 지휘관계 및 성과평가

-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주특별법」상의 법령을 근거로 전문위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 이원화된 지휘명령 체계에 있음
- 이러한 이원화된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시 전문위원과 사무처장의 조직 내 상급자 평가와 함께,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의 다면평가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의원을 배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책연구위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방안

1) 특례시의회 조직 개편

□ (가칭)특례시의회인사위원회 설치

- 지방의회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의회 내에 이를 전담하는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고 있음.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일부 사무직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했음.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기구정원규정상 인사위원회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해짐
-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관리 전반을 담당할 (가칭)특례시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가칭)특례시의회인사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원칙과 기준이 확립되어야 함. 이와 관련해 다음의 사항에 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는 채용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또는 임용에 대한 정무적 판단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해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정당법상 당원’을 인사위원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음. 해당 관점에서 (가칭)특례시의회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
 - 하지만 이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본연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평가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보장됨으로써 각 시도의회 인사위원회의 설치가 현실화됨. 따라서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위원회 규정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공무원에 대한 평가규정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칭)인사교류심의위원회 설치

- 국회의장의 경우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 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 등을 위해 국회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는 신규충원이 아닌 제도적 방법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임. 특히, 인사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은 각기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문제해결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보다 다양성을 띄며 발현되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옴
- 지방의회 간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교류체계 구축은 각 지방의회의 정책기획능력 및 현장경험에 대한 공유를 가능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지방의회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특례시 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가칭)인사교류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2)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형태

□ 신분 및 직급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현행 공무원 구분체계(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별정직’ 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 인력

수급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각 방안별 적합성에 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함 12)

- **(일반직 공무원)** 의회직렬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 채용은 전입을 통해서 가능함. 이 경우 의회 공무원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의회 전체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이해력을 갖게 함으로써 의회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업적 연대의식과 일체감을 갖게 함. 특히, 집행기관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대한 경험과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 활동에 대한 보좌·지원 기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정원규모가 작은 데서 비롯되는 인사적체 및 승진상의 불이익 등과 같은 문제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로의 원활한 유입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일반행정가(generalist)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specialist)로서의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존재함.
- **(별정직)** 별정직으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 책임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보장에 따른 유능한 민간 인재의 폭넓은 공직 유치라는 긍정적 효과 및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 특정 분야에 한정해 정년까지 채용하는 것은 자칫 변화에 뒤처질 수 있으며, 신분보장에 따른 무사안일이라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 및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해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신분보장과 무사안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이운경(2014)의 연구에 따르면, 신분보장이 무사안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신분보장이 관료들의 무사안일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것임
- **(임기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제도의 취지는 민간 영역의 우수한 인재를 공공부문에 유입하여 공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또한 강한 신분보장으로 편익 대비 비용이 높은 기존의 직업공무원제도를 개선하여 공직인사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함임.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의 순기능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임기제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경우 정책자문위원을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책자문위원의 신분은 계약에 따라 5년 단위로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임기제 공무원임

공무원의 임기는 최대 5년이며, 그 이상으로 근무를 원한다면 다시 필기, 면접시험을 치루고 신입으로 임용이 됨. 이에 따라 호봉을 쌓을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함. 즉, 불안정한 신분 및 불공정한 처우로 인해 유능한 인재의 영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아래의 <표 VI-8>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평가결과를 보여줌

<표 VI-8> 전문가 평가결과

구분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전문성	낮음	높음	높음
효율성	보통	보통	높음
인력수급의 용이성	낮음	높음	보통

- 전문가 평가결과, 전문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적시성을 가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은 임기제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인력수급의 용이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이라는 대안을 제시함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신분불안 해소 및 우수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위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유능한 민간 인재의 폭넓은 공직 유치를 통해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해당 관점에서 의회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유능한 민간 인재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세부적으로 1) 우수성과자 선발을 위한 성과평가체계의 구축, 2) 전환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직급설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먼저, 직무평가의 측면에서 직무 수행의 곤란성, 책임성, 복잡성,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함. 이와 더불어 기존

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직급 계층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이상의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자문위원의 직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즉,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 경우 인사교류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직무경험을 축적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증대되어 왔음. 지방의회 간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교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인사교류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직급의 동일성임
 - 현행 「지방자치법」은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원 정수에 따라 지방의회 간 전문위원 직급의 수직적 차이가 존재함.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전문위원의 직급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지방의회 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인사교류는 지방의회 정수가 유사한 의회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만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이와 같은 한계를 노정하게 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설정에 따른 입법과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례시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에 대한 규정을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입법 과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임기와 재임용

- **(임기)** 우리나라의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은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근무 가능함. 하지만 5년 범위에서 구체적인 근무기간 연장을 어떻게 설정할지의 여부는 상위 공무원임용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실제 인사실무 현장에서는 1년 단위 연장 계약, 2년 계약 이후 3년 연장, 3년 계약 이후 2년 연장, 1년 계약 후 4년 연장, 1년 계약 후 2년 단위 연장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 임기제공무원의 원칙적 근무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됨. 이에 따라 최초 임용 시 1년 약정 후 이후 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함
- 1년 단위 연장은 단기사업 수행이라는 형태에는 적합하나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 활용과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측면에서 1년 단위 연장은 제도의 본래 취지인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의 유입을 통한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1년 단위 연장방식은 임기제공무원들의 신분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해 업무성과에 집중하기보다 기간 연장여부에 눈치를 보는 소신 없는 공무원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임기제공무원의 폭넓은 활용현황, 장기 근무현상, 공직에 대한 높은 취업수요, 임기제공무원의 업무몰입, 소요되는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임기와 관련해 최초 2년 임용 후 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해 3년을 연장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재임용)** 임기제공무원은 최대 5년의 근무기간을 원칙으로 함.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기제공무원들의 경우 5년의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법정책연구원(2019)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8년 8월 기준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5년 이상 근무자 비율이 5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하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공무원임용령의 하위 규정인 공무원임용규칙에는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동일한 직무에 재임용되어 근무가 가능함을 전제로 근무기간이 종료된 자가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공무원임용규칙 제105조 제3항)
 - 근무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를 통한 재임용 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1) 신규 지원자들의 들러리화, 2) 재임용 시 연봉의 초기화 내지 삭감, 3) 적기(適期) 기간연장의 실패로 인한 신분 불안 발생 등이 있음(사법정책연구원, 2019)
-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에 관한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재임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될 경우 유능한 인재의 유치

와 더불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임기만료 인제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임용 관련 규정 마련 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과 관련해 제기되는 주요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임용 절차의 공정성 문제임. 따라서 동일한 임용절차에 지원한 다른 후보자들이 임용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예를 들어 임용결과를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임용절차의 투명성 보장 측면에서 유효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이 동일한 직위에 재임용되는 경우 기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연봉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사규정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만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이 지방의회별로 차등화 될 경우 재임용 과정에서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시 기초의회에서 경력을 쌓은 인력들의 상위 지방자치단체로의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존재함

□ 소속과 지휘관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방안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함. 첫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동일하게 상임위원회에 두는 방식임(이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델). 그리고 둘째는 서울시의회와 유사하게 입법 및 예산정책의 담당관을 두고 팀제로 운영하는 방식(이하 서울시의회 모델)을 고려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모델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및 의원의 지휘·통제를 받게 됨. 이 경우 조직 차원에서 특별한 직제개편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들이 기존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인사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지님. 특히,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고 각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에서 인력 수요 예측에 용이함
- 서울시모델은 입법, 예산정책 등의 담당관을 두고 그 하위에 팀을 구성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임. 이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담당관 및 팀장의 지휘·통제를 받게 되며 지방의회의 중장기 계획에 맞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님

<표 VI-9> 모델별 특성 비교

구분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모델	서울시의회 모델
조직도		
지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의원의 지휘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담당관실 내 개별팀 소속 소속 담당관 및 개별팀장의 지휘감독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회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용이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인력수요 예측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차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 지방의회의 중장기계획에 맞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유연하게 활용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회 위원들의 개인 비서화 우려 존재 상임위원회 내 의회 공무원들과의 업무분장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제 개편에 따른 의회 사무처 직원 증원 필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제약
입법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사무처 직원 증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 규정 개정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형태는 각 의회마다 다를 수 있고, 동일 의회라 하더라도 시기별로 달리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형태를 달리하는 절충형을 제안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되는 초기에는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배치(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모델)’의 형태가 적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동 제도의 정착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의 측면에서 ‘의회사무국 배치(서울시의회 모델)’가 보다 적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평가

-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은 전술한 지휘관계와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평가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델과 서울시의회 모델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델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사무처장의 조직 내 상급자 평가와 함께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의 다면평가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의회 모델)** 서울시의회모델의 경우 소속 담당관 및 팀장, 사무처장의 조직 내 상급자 평가가 가능함
- 이와는 별개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성과평가를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성과평가의 내부적 요인의 배제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함.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전문가에 의한 성과평가는 자칫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조직 내 상급자들의 지휘·통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성과평가체계의 구축도 일정 부분 적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성과와 보상의 연계)** 임기제공무원들의 경우 임용기간 내 특별한 금전적 인센티브 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게 됨. 즉, 임용기간 동안 급여인상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동기부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와 보상의 연계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업무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성과평가 결과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계약기간 연장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채용의 공정성을 감안했을 때 재임용 과정에서 기존 성과평가 결과를 어떻게 고려할지에 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6.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방안

1) 사례분석

(1) 국회사무처 인사제도

-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에 의거하여 국회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국회공무원의 전반적인 인사행정관련 사항은 「국회인사규칙」에 규정하고 있음
- **(채용)** 「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 및 「국회인사규칙」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에는 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국회공무원은 입법고시, 8급, 9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선발함
 -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를 설치함
- **(전직)** 국회인사규칙에 따르면 전직 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다른 직렬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당해 직렬에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 **(승진임용)** 국회인사규칙에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임용의 제한, 급수별 승진, 특별승진 임용, 근속승진 요건을 규정하고 승진 관련 절차를 총괄하는 승진심사 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음
 -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4급 이상은 3년 이상, 5급은 4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7급 및 8급은 2년 이상, 9급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근속승진 기준은 7급은 11년 이상, 8급은 7년 이상, 9급은 5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승진심사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적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성적평정에는 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사교류)** 의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 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국회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신분보장)** 강임, 육아휴직, 시간제근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민간근무휴직, 휴직자 복무관리, 질병휴직 등에 대한 범위 및 대체인력의 수급 등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신분보장 관련 제도의 권한은 의장이 지니고 있음

(2) 법원행정처 인사제도

-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 제19조에 따라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송무,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부사,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법원공무원의 전반적인 인사행정관련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 규정하고 있음
- **(채용)** 법원공무원은 법원행정고등고시, 9급의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선발함
 - 법원행정고등고시는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1차·제2차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되는데, 그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함
 - 경력경쟁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법률 또는 규칙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시험으로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이 선발됨

- (전직 및 전입) 법원공무원규칙 제28조(전직시험)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을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하며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 직제나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 국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승진임용) 법원공무원규칙에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임용의 제한, 급수별 승진, 특별승진 임용, 근속승진 요건을 규정하고 승진 관련 절차를 총괄하는 법원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인사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음
 -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해 2급은 1년 이상, 3급은 2년 이상, 4급 및 5급은 4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7급 및 8급은 2년 6개월 이상, 9급은 2년 이상, 연구사는 7년 이상으로 규정함
 - 근속승진 기준은 7급은 11년 이상, 8급은 7년 이상, 9급은 5년 6개월 이상으로 선정함
 - 승진심사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적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에는 승진심사 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겸임 및 파견) 겸임은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짐
 - 파견근무는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

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 의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사법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짐

-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며,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3) 시사점

- 국회사무처 및 법원행정처의 인사제도를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1) 조직 구성원의 임명권은 조직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2) 조직 구성원의 임용단계별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지방의회 사무처 구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단계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특례시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인사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7. 특례시의회 임용단계별 인사제도 개편 방안

- (신규채용)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며, 채용후보자에 대한 시보임용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규채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함. 먼저, 장기적으로 지방의회 직렬이 신설될 경우, 그리고 집행부 전입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의회 직렬이 신설될 경우 공개경쟁채용은 7급과 9급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현재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은 5급, 7급, 9급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과 국회공무원의 경우 각각 7급과 9급, 8급과 9급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음
 -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회 직렬 신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우려 가운데 하나는 내부적체의 문제임. 즉, 의회사무직의 성격상 정원 규모가 작은 데서 비롯되는 이른바 소수 직렬이 가지는 인사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인사교류는 내부적체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 직렬이 신설되더라도 집행부와 유기적인 인사교류를 위한 별도의 급수체계를 설정하기보다는 7급과 9급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승진임용)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도 공무원임용령과 국회인사규칙을 참고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임용의 제한, 급수별 승진, 특별승진임용, 근속승진요건을 규정하고 승진 관련 절차를 총괄하는 승진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4급 이상은 3년 이상, 5급은 4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7급 및 8급은 2년 이상, 9급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선정함
 - 특별승진은 국회인사규칙을 참고하여 지방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전술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경우 인력풀이 많지 않아 집행부 조직보다 승진에 제약을 받게 돼 근무기피가 예상됨.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승진에 관한 규정마련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회행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승진심사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적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성적평정에는 동료 및 하급자 등의 다면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사교류)** 지방의회 의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각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인사교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의회사무직에 대한 인사교류 역시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국회 및 타 지방의회 사무기구 간의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인사교류의 주체에 따라 인사교류의 유형을 ‘의회 간 인사교류형’, ‘의회-집행기관 간 인사교류형’으로 구분함

- **(의회 간 인사교류형)** 먼저 ‘의회 간 인사교류형’은 인사행정의 범위를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임. 해당 방안의 경우 인력운영범위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짐. 그러나 권역별로 통합·운영되는 사무기구의 임명권을 실제로 어느 지방의회에서 갖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근무지의 변경과 우수인재에 대한 인사교류 회피 등 현행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됨.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제도하에서보다 인적교류가 제한됨으로써 오히려 의회사무직을 더욱 회피할 가능성도 예상됨

- **(의회-집행기관 간 인사교류형)**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기관분리형을 채택·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의회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 등 인적자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일본은 ‘슛코우’라는 인사제도를 이용해 단체장이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지방의회로 파견하고 있음. 이러한 ‘의회-집행기관 간 인사교류형’의 장점으로서는 인사교류확대를 통해 소수 직렬 인사체계의 폐쇄성에 따른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과의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업무 및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또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취약해질 수 있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협력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집행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지방의회로 파견됨으로써 지방의회 사무직원이지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과 집행기관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장기간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의회 사무직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의회 사무직원이 집행기관을 의식하면서 사무의 중립성과 일체감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

<표 VI-10> 유형별 특성 비교

구분	의회 간 인사교류형	의회-집행기관 간 인사교류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운영범위 적정성 확보 지역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 직렬 인사체계의 폐쇄성 극복 집행기관의 업무 및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높임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로 통합·운영되는 사무기구의 임명권 문제 근무지의 변경과 우수인재에 대한 인사교류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 소속감 결여 적극적인 의정보좌 미흡

VII. 특례시 의회 인터뷰 주요 안건

□ 제도 및 의회 구성

○ 예산 관련 조직 필요

- 의회에서 예산 편성 권한 필요

○ 권익담당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필요

- 공약 추진사항들을 전담하는 등 시민들의 요구를 담당

○ 특례시 기관 구성

- 구청장 직선제나 의원 중에 선임, 시범적으로 운용 계획

○ 의원 정수 기준

- 인구수 기준 형성 불합리, 변경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일반구 변경사안

- 일반구를 자치구로 바꿀 경우 변경될 사안에 대한 법률개정사항등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지원인력 및 체계

- 의회 인력 부족 보충 필요
- 담당관 확충 필요
- 인사권 담당 전담부서 신설 필요, 단기 로드맵 제시
- 의원정수 X2.9의 규정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 제시
-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지원인력 부족, 확충 필요
- 현재 수원시의회의 ‘사무국’ -> ‘사무처’ 변경

□ 의원 처우 문제

○ 광역 수준 확대

-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은 공무원에 비해서도 처우가 열악함
- 의정활동비를 광역 수준으로 확대 요구

□ 인사권 독립

○ 의회직 신설

- 단기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 높여가는 방향
- 의회직 신설을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 중장기적 문제로 법률개정사안이나 규정개정사안으로 방향성 제시

○ 인사권 재량, 인사위원회 구성

-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인력 부족문제, 의회 자체에 재량행위 부여 방향성 제시
- 인사위원회 구성 제시 필요
- 시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광역시에 의존하는 부분 문제 해결

VIII.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제시

1. 4개 특례시 시의회의 권한 발굴

□ 특례시의회 인사권 강화

○ 지방자치법 개정

-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이러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 지방의회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의회 공무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의회공무원에 대한 특례시의회의 독립적 인사권의 구체화가 필요함

○ 특례시의회 인사권 강화의 방향

- 특례시의회의 인사권 강화는 근본적으로 향후 특례시의회가 가진 위상과 전문성 제고를 기초로, 실질적인 특례시의회의 입법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이를 위해 특례시의회의 인사권 강화는 현행 전문위원제도를 유지하면서,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조사관 등 전문인력의 충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중·장기적인 방향은 제도적으로 의회직렬의 신설과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된 입법지원기관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음

<그림 VIII-1> 인사권 강화 방향의 Frame work

권한강화 내용	특례시 의회 독립적 인사권 강화	
목표	의회 인력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의회의 입법기능 강화	
인사권 강화 방안	의회직 신설	입법지원 전담기구 신설
세부 내용	관련 법령·조례 개정사항 도출	

○ 의회직 공무원 신설

- 2021년 1월 12일 전면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충원 및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은 입법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현황에서 분석했듯이 현재 각 특례시 의회의 입법지원인력은 의회사무국 소속의 전문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의회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질 경우 이들 공무원을 직접 충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현행 특례시 의회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르면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상 의회사무직원 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독립된 인사권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질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례시의회 의장의 인사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의 신설이나 기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개선의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과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을 개정하거나 의회직 공무원의 근거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음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단기)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사무직원의 겸임업무) 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 5.]

개정(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사무직원의 겸임업무) 삭제

현행] 제6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91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

개정(안) 제6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 삭제

2.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의회직 지방공무원 근거 규정 신설(중·장기)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② 지방의회 의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신설)

3. (가칭)지방의회 사무처법 제정(중·장기)

- 현행 ‘국회사무처법’에는 국회사무처의 직무, 공무원의 임용, 사무처 구성,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회사무처법’을 모델로 하여 ‘(가칭)지방의회 사무처법’ 제정하는 방안 고려(가칭)지방의회 사무처법의 적용 대상은 시·도·특례시 의회사무처(국)가 될 수 있음

- 구체적인 법률의 구성은 ‘국회사무처법’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대상, 직무, 공무원의 임용

제2장 사무처 : 사무처장, 의장비서실, 조직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전문위원 등

- 이 밖에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임기제 공무원의 충원과 입법지원전담기구의 신설

- 현재 4개 지역의 입법지원인력은 전문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원인력 규모의 부족이 특례시의 지위에 적합한 입법기능 강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입법지원전문인력(입법조사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충원되는 입법지원전문인력은 단기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방법이나 의회사무국 산하 의정팀(입법팀)을 ‘(가칭)의정지원관 혹은 정책지원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입법지원전담기구를 신설하여 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제31조의 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이 요구됨

<p>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단기)</p> <p>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 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제31조의 2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중·장기)</p> <p>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p> <p>1. 시·도</p> <p>2. 시·군·자치구</p> <p>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p> <p>1. 시·도·특례시</p> <p>2. 특례시가 아닌 시·군·구</p>

3. 입법조사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중·장기)

- 벤치마킹 사례로 국회'국회입법조사처법'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제1조 목적	제6조 조직
제2조 지위	제6조의 2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제3조 직무	제7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제4조 처장	제8조 위원회 보고 등
제4조의 2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제9조 자료의 요청
제4조의 3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5조 공무원의 임용	제10조 위임규정

- 중·장기적으로 입법조사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 '(가칭)특례시의회 입법조사전담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특례시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 고려할 수 있음

- 입법조사전담기구의 구조는 국회 입법조사처를 모델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 특례시의회 사무국 기구의 위상 강화

- 특례시의회 사무국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사무국 지위의 설정이 필요함
- 또한 특례시가 아닌 일반시와의 차별성을 위해서도 현재의 시·군·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국의 명칭, 직제 등의 변화가 필요함
- 특례시의 인구는 수원시가 약 119만, 고양시와 용인시가 약 108만, 창원시가 약 104만 정도의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음

- 반면 2020년 기준 광역시로서는 대전 약150만, 광주 약 145만, 울산 약 113만, 제주 약68만, 약36만 등 특례시와 유사한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광역시라는 이유로 사무국의 지위가 우위에 있는 상황임
- 특례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광역시 수준의 사무국 지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법령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지방자치법 개정(중·장기)

현행]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안)]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특례시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특례시가 아닌**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중·장기)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
	이하 생략

2.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 직급기준

구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특례시
의회사무국	특례시가 아닌 시 중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
이하 생략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분		의회 사무처장	의회 사무국장	의회 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특례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특례시 아닌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하에, 담당관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특례시의회 재정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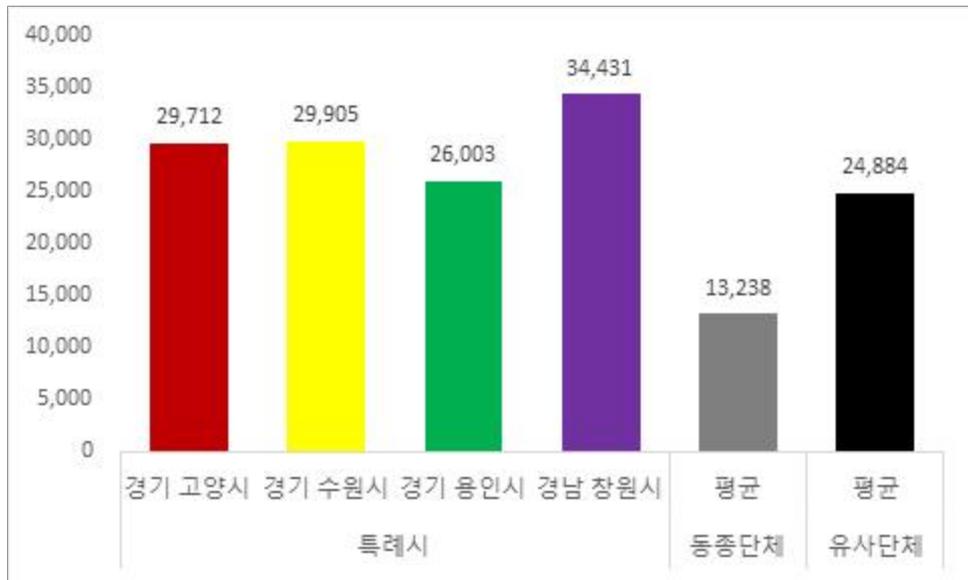
○ 4개 특례시의 예산규모

- 2020년 당초 예산기준 창원시가 3조 4,431억원, 수원시가 2조9,906억원, 고양시가 2조 9,712억원, 용인시가 2조6,003억원 규모임(용인시민신문, 2021.1.5.)
- 4개 특례시의 예산규모는 광역시·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타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월등히 큰 규모임

<표 VIII-1> 4개 특례시의 예산 규모 비교

지역	예산규모	동종단체			단위 : 억원
		평균	동종최고	동종최저	유사단체 평균
경기 고양시	29,712	13,238	35,082	2,559	24,884
경기 수원시	29,905				
경기 용인시	26,003				
경남 창원시	34,431				

<그림 VIII-2> 예산규모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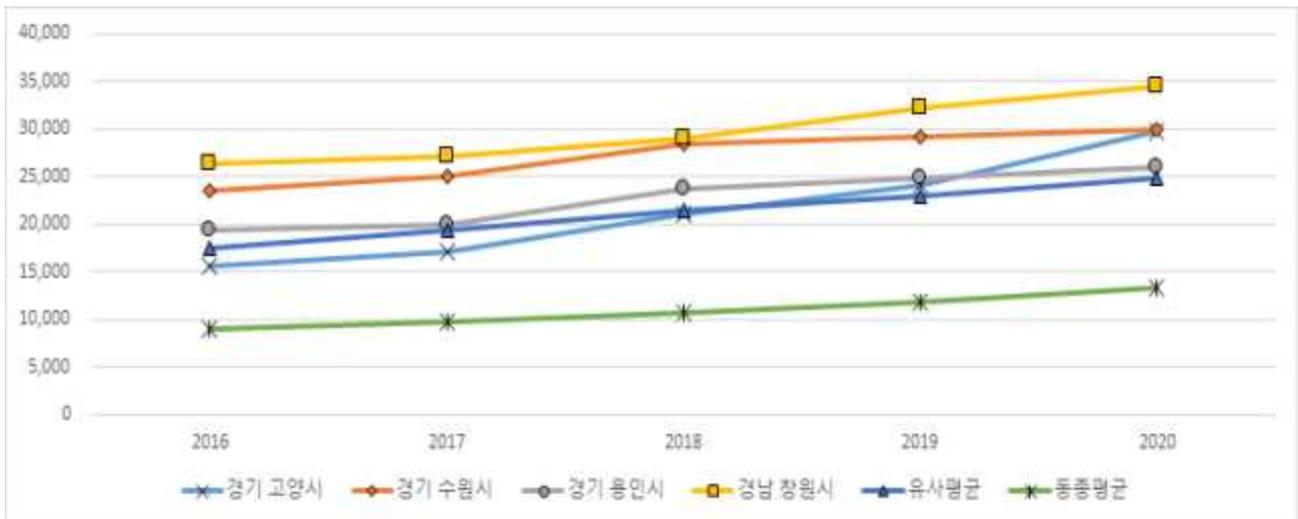


주) ‘동종단체’ 시·도, 시, 군, 자치구 등 동일한 유형의 자치단체

‘유사단체’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

출처 :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시; https://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state/sd002_tg003.xml)

<그림 VIII-3> 4개 특례시의 예산규모 증가폭



- 2016년 이후 4개 특례시의 예산규모는 동종평균이나 유사평균의 증가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증가하는 예산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회역량 강화가 필요함

○ 특례시의회의 재정권 강화 필요성

- 큰 규모의 예산을 가진 특례시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예산감독권한이 더욱 전문화 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례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의회 재정권의 강화 역시 과제로 대두될 수 있음

○ 재정권 강화의 방향

-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감독과 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전문성 제고
- 독립적 인사권의 실질적 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특례시의회 재정권한 강화

○ 재정권 강화의 방안

- 재정전문성 강화방안

1. 예산전담기구 신설(중·장기)

- 특례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감독권 강화를 위해서 예산전담기구의 신설을 제안함
- 현재 4개의 특례시의회 사무국 구조는 의정(의회)담당관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감시·감독하는데 필요한 전담기관은 전무한 상황임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담당관에 예산정책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도 동일한 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각 지역의 예산정책담당관 구조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16명)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20명)	
예산 분석팀 (6명)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총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결산토론회 개최 총괄 등	예산 정책팀 (3명)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및 예산계획 수립, 예산 및 지출, 의안 비용추계 현황관리
정책 조사팀 (5명)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기획·발간(총괄 담당),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 기획·발간(총괄 담당) 등	예산 분석팀 (16명)	예·결산분석(예결산총괄,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등), 교육행정위원회 예결산분석 및 비용추계
사업 평가팀 (4명)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및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총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 총괄 등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9명)			
예산 정책팀 (4명)	예산관련 정책토론회 운영 예산관련 정책 연구용역 수행 의원 재정분석 및 예산관련 정책 연구 지원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도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그밖에 예산정책에 관한 사항	예산 분석팀 (4명)	도 및 교육청 예산·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예산재정 현안 분석 예산재정 연구동향 작성 의안의 비용추계 예산·결산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검토

기타 예산관련 팀이 설치되어 있는 의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 담당관	전라북도·도교육청 업무수행	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 (4명)	집행기관 예산의 분석 및 예산정책에 관한 사항 검토
예산정책 분석팀 (4명)	전라북도·도교육청 핵심 및 쟁 점사업 예산분석 국회 및 타 시도 예산정책 관 련 자료수집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 예산분석담당 (4명)	예산분석담당 업무 기획·조정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 예결산 총괄분석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분석업무계획 수립 교육위원회 소관 예·결산 분석 및 핵심사업 분석 국회 및 타 시도 예산 정책 관련 자료 수집 등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관리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관리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기획조정실), 농해양수산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결산 분석 자료수집 및 핵심 사업 분석 국회 및 타 시도 예산 정책 관련 자료 수집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결산 분석 및 핵심사업 분석 지원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담당내 서무 및 위원회별 언론보도자료 정리		

단기) 담당관 내 (가칭)예산정책(분석)팀 신설

-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방법으로 의정담당관(창원시의 경우 의회담당관) 내에 '(가칭)예산정책팀(창원시의 경우 예산정책담당)'(4명)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중기) 의회사무국 내에 예산정책담당관의 신설

- 중기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충청남도의회의 사례에 따라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함

- '(가칭)예산정책담당관'의 인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 19명, 경기도의회의 20명 보다 충청남도의회의 9명 수준을 기준으로 인력규모를 설정할 수 있음

주요기능	조직구성	
1.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와 분석	담당관 (1명)	
2. 도·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3.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예산 정책팀 (3명)	예산 분석팀 (4~5명)
4. 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5. 지방재정운용 및 경제동향의 분석		
6.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분석		
7.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8.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9. 기타 예산 및 재정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장기) 예산전담기구의 신설

- 국회의 경우 입법조사처와 함께 예산정책처를 따로 두어 예산전문기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조직구조는 기획관리관, 예산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 등의 하위부서를 설치하고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회 내 독립적인 예산전담기구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칭)특례시의회 예산전담기구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국회의 예산정책처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전담기구를 신설함
 -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하여 전문인력을 배치시킴
 - 예산정책팀, 예산분석팀, 경제분석팀 등으로 구성함

2. 지방의회법 제정(장기)

- 현재 지방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방의회법 제정임
-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2020년 발의된 '지방의회법안'(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 발의)은 행정안전위원회 회부되어 있음
-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방의회법안'은 의회경비독립, 교섭단체 법적지위 부여, 인사청문회 도입권, 감사원 감사청구권 등이 명시되어 있음
- 특히 의회경비독립은 지방의회의 재정적 독립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연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례시 의회 역시 4개 지역 의회의장의 적극적인 촉구가 필요함

□ 항만시설의 개발·관리·운영 등에 관한 권한 확보(창원시)

- 창원시의 경우 경기도에 위치한 고양, 수원, 용인 특례시와는 다르게 바다와 접해있다는 지리적 여건으로 항만 관련 시설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설이 될 수 있음
- 항만시설과 관련하여 진해신항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음
 - 진해신항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약 12.4조원이 투입되는 매우 큰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지역발전의 커다란 계기가 될 전망이다
 - 그러나 진해신항개발사업은 신항의 대부분이 창원시의 관할에 포함되는 구역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진해신항개발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 관련 규정에는 항만법, 항만법시행령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운영규정 등이 있으며,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령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제2조 제1항에 심의회 구성인원(위원장 포함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과 제2항 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자격으로는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항만이용을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규정에 의해 실제 진해신항만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창원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자체가 제한을 받고 있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구성)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 항만개발, 항만운영, 도시·군계획, 건축·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기술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 항만공사법과 항만공사법시행령에 의하면 항만공사에 항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항만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항만공사법11조(구성) ①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항만공사법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3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7. 6. 20.>[전문개정 2010. 4. 29.]

- 진해신항만사업을 관할하는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령에서도 창원시의 항만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임
- 창원시의 경우 특례시로서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됨에 따라, 그리고 진해신항만사업의 대부분이 창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

정을 개정하여 향만이 위치한 지역의 특례시의 경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함

- 또한 관련 지방의회 역시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함
- 다음과 같이 법령 개정을 제안함

<p>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구성) ② 중앙심의회 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해양수산부차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례시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 특례시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1명</p> <p>항만공사법11조(구성)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례시장, 해당지역 의회(광역의회, 특례시의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p> <p>항만공사법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장, 해당지역 의회(광역의회, 특례시의회)은 4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7. 6. 20.>[전문개정 2010. 4. 29.]</p>
--

- 항만 관련 원활한 의회의 활동을 위해서 창원특례시 의회에서도 창원시의 사무범위에 항만 관련 사무가 포함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나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등에 창원시가 참여할 경우 이에 대한 감독과 심의를 위해 항만관련 상임위원회의 신설 또한 기존 관련 상임위원회의 확대강화가 필요함
- 창원시의 경우 상임위원회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단기, 장기 방안을 제시함
- 단기적인 방안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의 담당 사무에 항만관리, 심의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 장기적으로 ‘(가칭)해양항만위원회’ 를 신설하여 기존 건설해양농림위원회의 사무 중 해양 관련 사무에 항만사무를 결합하여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 특례시 의장협의회 법적기구화

- 특례시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법적기구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특례시장들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의장협의회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사사례로서 현재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가 있음

사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 유사협의회로서 두 개의 협의회 법적근거가 모두 지방자치법 제169조(전면 개정 이후 기준)로서 협의회 구성이 가능한 대상으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시의회의장 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률개정을 제안함

- 대안** 전국특례시의회의장 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제182조의 개정)
- 지방자치법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 3. 특례시의 시장**
 - 4. 특례시의회의 의장**
 5.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6.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 특례시의회 의원 처우개선 내용

□ 지방의회의원 처우에 대한 기존 논의

- 과거부터 지방의회의원의 처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되어 왔음
- 따라서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 제도개선, 의정비 지급기준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2010년 전라남도의회, 2014년 서울특별시의회, 2018년 전국시도지의회의장협의회 등)
- 현행 지방의회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 최근 4년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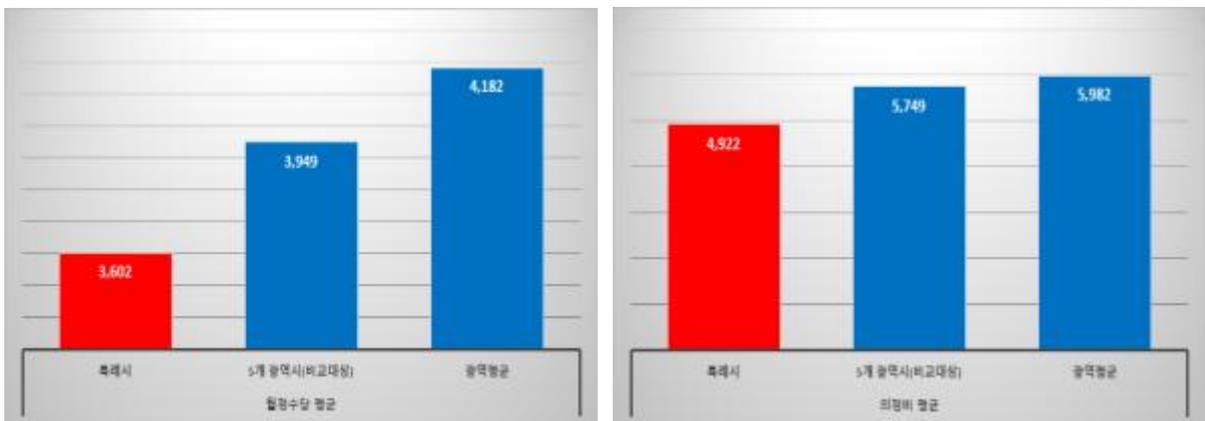
<표 VIII-2> 최근 4년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

		총 평균	광역(평균)	기초(평균)	광역-기초
2018	월정수당	2,841	3,943	2,538	1,405
	의정활동비	1,354	1,800	1,320	480
	합(A)	4,195	5,743	3,858	1,885
2019	월정수당	2,900	4,037	2,634	1,403
	의정활동비	1,405	1,800	1,320	480
	합(B)	4,305	5,837	3,954	1,883
2020	월정수당	2,988	4,090	2,676	1,414
	의정활동비	1,354	1,800	1,320	480
	합(A)	4,342	5,890	3,996	1,894
2021	월정수당	3,060	4,182	2,742	1,440
	의정활동비	1,354	1,800	1,320	480
	합(B)	4,414	5,982	4,062	1,920

- 광역자치단체의 2018년 평균 월정수당은 3,943만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총합인 의정비는 5,743만원이었으며, 2021년에는 각각 4,182만원과 5,982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특례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의 2018년 평균 월정수당은 2,538만원, 의정비는 4,062만원이었으며, 2021년에는 각각 2,742만원과 4,062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월정수당과 총합인 의정비의 차이는 지난 4년 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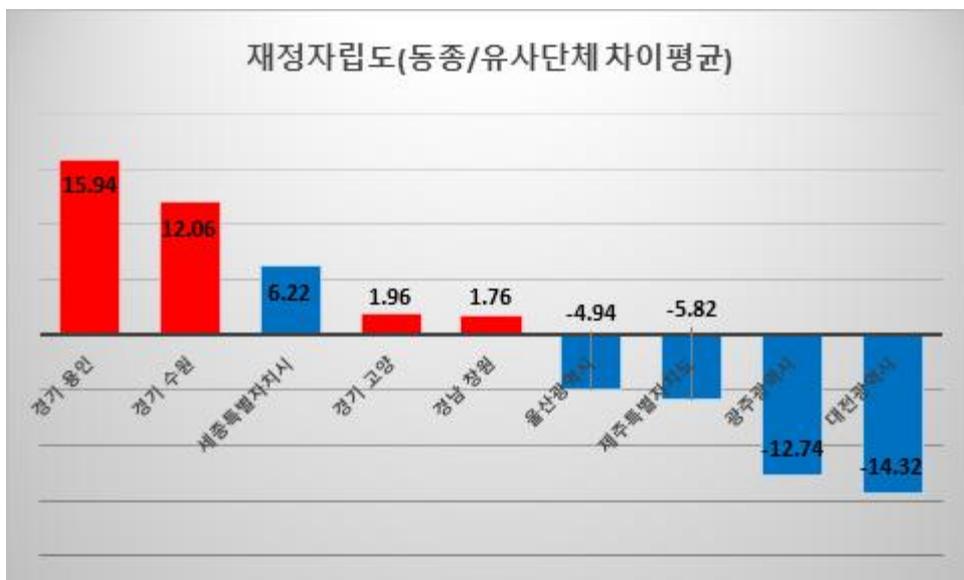
○ 4개 특례시의 지난 4년 간 의정비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VIII-4> 4개 특례시의회의 월정수당 및 의정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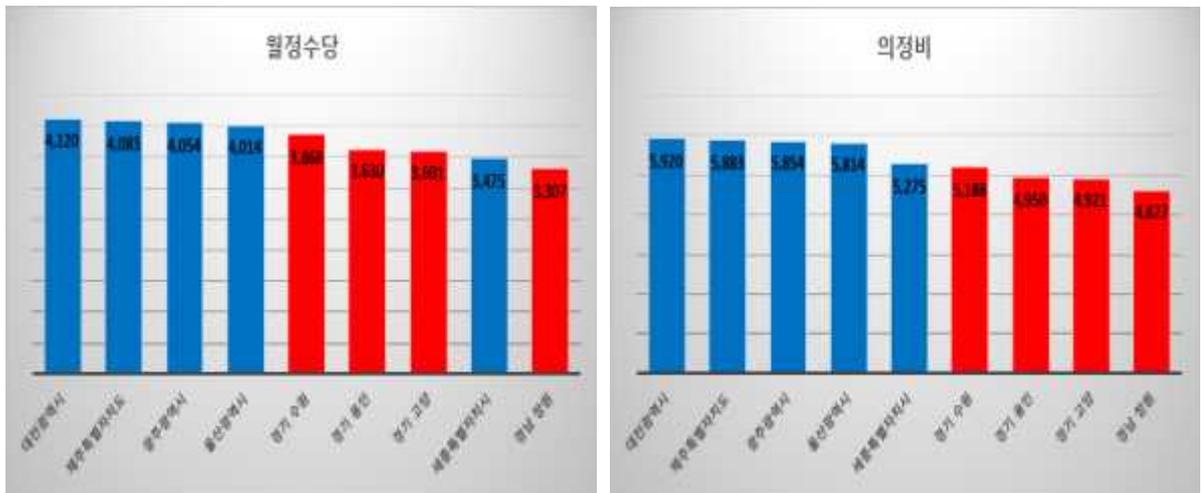
- 4개 특례시의회의 월정수당 평균은 3,602만원으로 광역의회 평균인 4,182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인구규모가 15만 미만인 5개 광역의회(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월정수당 평균은 3,949만원으로 비교적 인구규모가 유사한 지역의 광역의회에 비해 월정수당이 낮음
-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광역의회 1,800만원, 기초의회 1,320만원)을 합치면 특례시의회 평균 4,922만원, 인구 150만 미만의 5개 광역의회 평균 5,749만원, 전체 광역의회 평균은 5,982만원으로 그 차이가 더욱 증가함

<그림 VIII-5> 4개 특례시와 재정자립도 현황



- 위의 그래프는 4개 특례시와 인구 150만 미만 광역시의 재정자립도와 동종/유사단체의 평균 간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임
- 4개 특례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동종/유사단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인구 150만 미만 광역시의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모두 동종/유사단체 평균보다 낮음
- 이러한 결과는 4개 특례시의 재정상황이 비교적 인구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의 재정상황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줌

<그림 VIII-6> 4개 특례시의회의 월정수당 및 의정비 비교



- 4개 특례시 의회와 인구 150만 미만의 5개 광역의회 월정수당과 의정비 액수를 살펴보면 5개 광역의회의 월정수당과 의정비 액수가 4개 특례시의회보다 많음(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결국 이러한 결과는 4개 특례시의 재정상황이 비교적 인구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의 재정상황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줌
-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상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가 유사하고, 재정능력은 더욱 높은 특례시의회의 월정수당이 광역의회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음
- 따라서 월정수당에 있어서 최소한 재정력에 있어서 5개 광역시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의정활동비는 광역의회 1,800만원, 기초의회 1,320만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 역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례시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광역의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사항을 제시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특례시 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3. 4개 특례시의회의 의원정수 조정 방안 연구

□ 적정 의원정수 산정 및 기준

○ 현황과 타 광역시 비교

- 4개 특례시 의원정수

<표 VIII-3> 4개 특례시 의원정수

구분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평균
의원수	37명	29명	33명	44명	35.8명

<표 VIII-4> 타광역시 의원정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인천	광주	세종		평균
의원수	110명	47명	30명	22명	22명	37명	23명	18명		48.3명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의원수	142명	46명	32명	42명	39명	51명	59명	58명	43명	

- 4개 특례시의 의원정수는 평균 35.8명이며,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의원정수는 48.3명으로 나타남

-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과 경기의 의원수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많음

○ 의원정수 산정 기준

- 현행 의원정수 산정기준은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근거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 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 6. 19.>

공직선거법 [별표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27명)

시도	총정수	시도	총정수
서울특별시	423	경기도	447
부산광역시	182	강원도	169
대구광역시	116	충청북도	132
인천광역시	118	충청남도	171
광주광역시	68	전라북도	197
대전광역시	63	전라남도	243
울산광역시	50	경상북도	284
		경상남도	26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조 ① 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이하생략)

②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의원정수의 산정 기준으로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산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별표3]에는 의원 총 정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광역과 기초의회를 구분하지 않고 총 정수만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결국 기초의회의 의원정수는 정해진 총 정수 내에서 광역시·도의회 의원정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정수 중 인구 및 지역대표성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방식이 되고 있음
- 광역시·도의회 의원정수 산정에서는 인구 외에도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위원의 총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개정 2014. 2. 13., 2016. 3. 3.>

- 시·도 의회의 의원정수 산정 기준을 참고하면, 특례시 내의 행정구역, 인구가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특례시 의회의 경우 일반시에 비해 기능적인 측면에서 광역시에 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기능적 측면을 의원정수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례시는 인구규모의 증가와 함께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더욱 전문적인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
- 4개 특례시의 평균 상임위원회 수는 5개인 반면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상임위원회 수는 6.7개로 약 7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음

<표 VIII-5> 4개 특례시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회 당 의원수

구분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평균
상임위원회 수	5	5	5	5	5
상임위원회 당 의원 수	7.4	5.8	6.6	8.8	7.2

<표 VIII-6> 상임위원회 및 의원 수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인천	광주	세종		평균
상임위원회 수	10	7	6	5	5	6	5	4		6.7개
상임위원회 당 의원 수	11	6.7	5.0	4.4	4.4	6.2	4.6	4.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7명
상임위원회 수	12	6	6	7	7	7	7	7	7	
상임위원회 당 의원 수	11.8	7.7	5.3	6.0	5.6	7.3	8.4	8.3	6.1	

- 광역시·도와 상임위원회 수를 비교하면 특례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례시 이후 의정수요의 증가를 고려하면 광역시 평균 수준의 상임위원회 수의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고려하면 1개 상임위원회 당 약 6~7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6명 이상의 의원정수 증가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의원정수 산정 기준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특례시 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 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 6. 19.> **단, 특례시의회의 의원정수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조 ① 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이하생략) **단, 특례시 의회 의원정수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단기-장기 과제 제시

□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 정리

○ Issue1 : 특례시 의회 위원회 확대 개편

- 앞서 언급했듯이 특례시 의회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기능과 역할 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각 특례시의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1.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

현행]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개정(안)]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 위원회 확대개편 방향으로 개정

예)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 제2조 위원회 확대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조정

2.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

현행]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상임위원회와 의원정수)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개정(안)]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상임위원회와 의원정수)

-> 위원회 확대개편 방향으로 개정

예) 건설교통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제35조 위원회 확대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조정

3.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현행]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개정(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 위원회 확대개편 방향으로 개정

예)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 제2조 위원회 확대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조정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

현행]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개정(안)]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 위원회 확대개편 방향으로 개정

예) 교육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 제2조 위원회 확대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조정

○ Issue2 : 의회 사무국 직제 개편

- 특례시 의회의 사무국은 상임위원회의 확대개편과 함께 사무국의 직제 역시 바뀔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은 시·도,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 혹은 사무국의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사무국의 기능강화와 함께 각 특례시의 사무국 운영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사무국 명칭

현행]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장

개정(안)] 사무처의 설치, 사무처장

-> **특례시의회 사무국의 명칭 변경 될 경우 관련 조례 개정**

2. 사무국 직원 정원

현행] 직원의 정원

고양시의회 :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수원시의회 :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04.05.)(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용인시의회 :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13, 2007. 7. 1, 2008. 12. 29, 2010. 8. 2>[중전 제3조에서 이동 <2012. 5. 9>](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창원시의회 :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

개정(안)]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가칭) 00시 의회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 **인사권 독립에 의해서 창원시의회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따로 규정함**

3. 입법조사담당기구(의정지원관 혹은 정책지원관) 신설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및 정원 조례에 입법조사담당기구 신설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

○ Issue3 : 의회직 신설에 따른 근거 조례 제정

-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직 신설을 고려하여 지방의회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 제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방향 제시

○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논의

-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현재 2020년 발의된 ‘지방의회법안’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 발의)이 행정안전위원회 회부되어 있음
-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연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국회법 벤치마킹

- 지방의회법은 국회운영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회법을 모델로 하고 있음
- 국회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VIII-7> 국회법 구성

제1장	총칙	제9장	청원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11장	탄핵소추
제4장	의원	제12장	사직·퇴직·결원과 자격심사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6장	회의	제14장	징계
제7장	회의록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제16장	보칙

○ 지방의회법 제정의 방향

- 위에서 살펴 본 국회법의 구성을 볼 때 현재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방향으로 지방의회법의 제정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재정적 독립성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에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는 ‘기관구성과 경비’가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상을 종합하면 지방의회법 제정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Ⅷ-8> 지방의회법 제정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8장	회의록
제2장	지방의회의 회기와 휴회	제9장	지방의회의 권한 (질문권, 출석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 예산결산심의권, 청문권 등)
제3장	지방의회의 기관과 경비 (예산포함)	제10장	사직·퇴직·결원과 자격심사
제4장	의원	제11장	질서와 경호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12장	징계
제6장	회의	제13장	의회 회의 방해 금지
제7장	회의록	제14장	보칙

IX .특례시 일반구(행정구)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

□ 관계법령 개정 등 방향 제시

○ 각 특례시별 일반구(행정구) 현황

<표 IX-1> 각 특례시별 일반구(행정구) 현황(괄호: 인구수)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덕양구(466,157)	권선구(371,754)	처인구(253,896)	의창구(258,582)
일산동구(297,671)	영통구(368,468)	기흥구(436,679)	성산구(220,945)
일산서구(302,523)	팔달구(175,866)	수지구(369,034)	마산합포구(177,784)
	장안구(278,377)		마산회원구(193,807)
			진해구(193,622)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9.12.31. 현재)」

- 각 특례시의 일반구(행정구)는 광역시의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유사한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음
- 향후 특례시가 정착될 경우 특례시의 일반구(행정구) 역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특례시 일반구(행정구)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일반구의 권한 강화 방안

- 인터뷰 결과 특례시 내 일반구의 경우 자치권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일반구의 경우 독자적인 조례제정권, 자체 조세확보권이 없음
- 따라서 일반구 주민의 요구를 광역시 자치구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일반구의 역할과 권한의 강화가 필요함
- 그러나 일반구의 구청장을 자치구와 같은 직선제로 선출하거나, 일반구에 구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법령으로는 불가능함
- 주어진 상황에서 일반구 구민의 의견에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구청장 일부를 지방의회의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이 역시 단기적으로 실행은 불가능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전제되어야 할 것임

<표 IX-2> 지방의회 의원의 구청장 임명의 장점

지방의회 의원의 구청장 임명의 장점
- 선거를 통한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의견과 수요에 민감하게 대처가능
- 구의 민원업무나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 등에 대해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가능함
- 시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국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반응성 제고, 민원 사업 추진의 동력 확보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구의 권한과 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3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에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의 구청장이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특례시 내 일반구는 특례시가 아닌 시의 일반구에 비해 인구규모나 자체적인 행정업무의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특례시 내 일반구의 고유한 자치사무를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음

부 록

1. 주요 법령(규정) 개정 사항 정리

1) 지방자치법

(1) 특별시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 (지방자치법 2021.4.20. 일부개정 법률 기준)	개정방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특별시(신설) 3. 시, 군, 구

(2) 특별시의회 사무국 기구의 위상강화

현행 (지방자치법 2021.4.20. 일부개정 법률 기준)	개정방안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특별시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특별시가 아닌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3)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법적 근거 신설

현행 (지방자치법 2021.4.20. 일부개정 법률 기준)	개정방안
<p>지방자치법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p>전국특례시의회의장 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제182조의 개정)</p> <p>- 지방자치법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특례시의 시장 4. 특례시의회의 의장 5.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6.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4) 특례시 내 일반구(행정구) 자치권 확대 방안

<p>현행 (지방자치법 2021.4.20. 일부개정 법률 기준)</p>	<p>개정방안</p>
<p>지방자치법 제132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p>	<p>지방자치법 제132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단, 특례시의 경우 각 구의 구청장 1인 이상을 해당지역의회 의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보할 수 있다.</p>
<p>지방자치법 제133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개정(안) 지방자치법 제132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특례시에 속하는 구의 구청장은 특례시장과 협의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사무로 인정되는 사무의 경우 구청장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례시 내 일반구의 자체사무처리에 대해서는 특례시의회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다.</p>

2) 지방자치법 시행령

(1) 특례시 의회 인사권 강화

<p>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2021.1.5. 타법개정 기준)</p>	<p>개정방안</p>
<p>제63조(사무직원의 겸임 업무) 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p>	<p>개정(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사무직원의 겸임업무) 삭제</p>
<p>제6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91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p>	<p>제6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 삭제</p>

(2) 특례시의회의원 처우개선 방안

<p>현행</p>	<p>■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의정활동비 지급범위</th> </tr> <tr> <th>의정자료수집·연구비</th> <th>보조활동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 의 회 의 원</td> <td>월 1,200,000원 이내</td> <td>월 300,000원 이내</td> </tr> <tr> <td>시·군·자치구의회의원</td> <td>월 900,000원 이내</td> <td>월 200,000원 이내</td> </tr> </tbody> </table>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p>개선 방안</p>	<p>■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의정활동비 지급범위</th> </tr> <tr> <th>의정자료수집·연구비</th> <th>보조활동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 특례시 의 회 의 원</td> <td>월 1,200,000원 이내</td> <td>월 300,000원 이내</td> </tr> <tr> <td>시·군·자치구의회의원</td> <td>월 900,000원 이내</td> <td>월 200,000원 이내</td> </tr> </tbody> </table>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특례시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특례시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3) 지방공무원법

(1) 특별시 의회 인사권 강화

현행	개정방안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② 지방의회 의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신설)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특례시 의회 인사권 강화

현행	개정방안
<p>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 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제31조의 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u>지방의회의 의장</u>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2. 시·군·자치구 	<p>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u>특례시</u> 2. <u>특례시가 아닌</u> 시·군·구

(2) 특별시 의회 사무국 기구의 위상강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			
	이하 생략					
	2.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 직급기준					
	구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u>특례시</u>
의회사무국	<u>특례시가 아닌 시 중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u> 지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 제1호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지 아니하는 군
이하 생략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분	의회 사무처장	의회 사무국장	의회 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특례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특례시 아닌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하에 , 담당관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항만관련 법령, 규정 개정사항(창원시)

현행	개정방안
<p>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구성)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중앙심의회 위원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p> <p>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p>	<p>제2조(구성)</p> <p>② 중앙심의회 위원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례시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 특례시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1명</p>
<p>항만공사법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p>	<p>항만공사법11조(구성)</p> <p>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례시장, 해당지역 의회(광역의회, 특례시의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p>
<p>항만공사법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3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7. 6. 20.>[전문개정 2010. 4. 29.]</p>	<p>항만공사법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장, 해당지역 의회(광역의회, 특례시의회)은 4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7. 6. 20.>[전문개정 2010. 4. 29.]</p>

6) 법령(규정, 조례 포함) 제정사항

(1) (가칭)지방의회사무처법 제정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대상, 직무, 공무원의 임용 제2장 사무처 : 사무처장, 의장비서실, 조직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전문위원 등

(2) 입법조사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가칭)특례시의회 입법조사전담기구설치조례)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제6조 조직
제2조 지위	제6조의 2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제3조 직무	제7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제4조 처장	제8조 위원회 보고 등
제4조의 2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제9조 자료의 요청
제4조의 3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5조 공무원의 임용	제10조 위임규정

(3) 예산정책분석전담기구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가칭)특례시의회 예산전담기구설치 조례)

(4)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논의(국회법 준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8장	회의록
제2장	지방의회의 회기와 휴회	제9장	지방의회의 권한 (질문권, 출석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 예산결산심의권, 청문권 등)
제3장	지방의회의 기관과 경비 (예산포함)	제10장	사직·퇴직·결원과 자격심사
제4장	의원	제11장	질서와 경호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12장	징계
제6장	회의	제13장	의회 회의 방해 금지
제7장	회의록	제14장	보칙

2) 의회위원회 관련 구성 현황

구분	의회위원회 관련 구성 현황							
	대분류 소분류	상설위원회	특별상임위원회 조례상 위원정수	위원회 명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정수	위원회 명수	기타	
광역시	인원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		
		행정안전위원회	6명 이내	7	특별위원회 구성 및 정수 일반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 의 위원 정수보다 많게 하고, 기타 특별위원회는 상임 위원의 위원 정수의 유사하게 구성함			
		문화복지위원회	6명 이내	7				
		산업경제위원회	6명 이내	7				
	부산	교육위원회	6명 이내	7				
		통영위원회	13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 이내	13		
		기획재정위원회	6	6	공리특별위원회	7		
		행정안전위원회	6	6				
		복지안전위원회	6	6				
		해양교통위원회	7	7				
출산	도시경제위원회	6	6					
	교육위원회	7	7					
	의회운영위원회	5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			
	행정자치위원회	5	5	에너지특별위원회				
특별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5	5	공리특별위원회	9			
	산업경제위원회	5	5	청년경제특별위원회	5			
	교육위원회	6	6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7			
특별시	인원	의회운영위원회	13명 이내(최소 9명 이상)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 이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칭 및 명기 보류) 25명 이상에 2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 정책위원회 (명칭 및 명기 보류) 3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	
		행정자치위원회	13명 이내(최소 9명 이상)	12	공리특별위원회 15명 이내			
		기획재정위원회	13명 이내(최소 9명 이상)	12				
		문화복지위원회	13명 이내(최소 9명 이상)	13				
		환경안전특별위원회	13명 이내(최소 9명 이상)	11				
		도시경제위원회	13명 이내(최소 9명 이상)	9				
		도시경제위원회	13명 이내(최소 9명 이상)	13				
		도시경제위원회	13명 이내(최소 9명 이상)	13				
		교육위원회	13명 이내(최소 9명 이상)	11				
		교육위원회	13명 이내(최소 9명 이상)	13				

단종제	서울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7명 이내	6	윤리특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이내	6			
	교육안전위원회	7명 이내	5			
	이해충돌위원회	11명 이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	
	행정복지위원회	7명 이내	7	윤리특별위원회	1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명 이내	6	4·3특별위원회	11	
	환경도시위원회	7명 이내	7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명 이내	6			
	농수축경제위원회	7명 이내	7			
교육위원회	9명	9				
제주도						

고양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 이상 12명 이내	
	기획행정위원회	9명 이내		8	윤리특별위원회	7명 이상 13명 이내	
	환경경제위원회	9명 이내		8			
	건설교통위원회	9명 이내		8			
	문화복지위원회	9명 이내		8			
							17
수원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명 이내	
	기획경제위원회	10명 이내		9	윤리특별위원회	14명 이내	
	도시환경위원회	10명 이내		9			
	문화체육교육위원회	10명 이내		9			
	복지안전위원회	10명 이내		9			
1천시 대표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0명 이내		10	윤리특별위원회		
	경제녹시여성위원회	11명 이내		11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1명 이내		11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1명 이내		11			
용인	의회운영위원회	7		7			
	지정행정위원회	7		7			
	문화복지위원회	7		6			
	경제환경위원회	7		6			
	도시건설위원회	7		6			

3. 고양시의회 인터뷰 내용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을 위한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고양시의회 의원 현장 인터뷰

일시 : 2021. 05. 14.

인터뷰 세부내용

박종수 교수(이하 박종수) : 실제 시의회 의원, 사무처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개최하였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인터뷰 요청드린 후 답변을 받았으나 좀 더 추가로 인터뷰할 내용이 있어 자리를 마련함. 우선 기초 지자체에서 특례시로 의회의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발굴, 의회 구성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 동시에 권한이 확대되었을 때 의회를 보좌할 수 있는 의회사무기구를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과제의 핵심이라고 이해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책보좌인력에 대한 구성,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에 인터뷰 내용에 해당 내용이 포함됨.

[Q1]

처음 착수보고 때부터 다뤘던 내용 중 특례시 의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계시는지, 일인당 입법량 등을 통계적으로 조사하고 있긴 하나 어느정도 인원이 더 있어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음

- ✓ 인원에 대한 얘기에 앞서,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광역에서 하고있는 위임사무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일반 기초단체에서 하는 업무보다 상당량 업무를 위임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의원 정수가 더 필요할 것임. 기초단체의 경우 광역 TO(우리의 경우 경기도)로 나뉘게 되어있을 것임. 기초단체가 광역에서 정해진 의원수 배분을 받는데, 인구수가 많다보니 인구수에 맞게 인원 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울산 경우 고양과 인구수가 비슷(5만 차이)한데 의원 수가 울산은 50명이고 고양은 33명임. 물론 광역이기 때문에 업무량 차이가 있겠지만,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의원수가 매우 부족함. 이에 준하여 의원수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 이와 더불어, 고양시는 5개 동이 인구가 5만씩이 넘고, 지금처럼 한 동에 의원 한 명씩 하면 최소 5명에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음(인구수 대비 의원 정수가 확보되지 않음)
- ✓ 한 동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35개동인데, 인구수로 따져서 보면 분동 하면 41~42개동. 물론 조금 있는 동도 있지만 동에 한 명씩은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함.
- ✓ 특례시 지정해서 고양시 2030년 인구를 130만에서 140만까지 보고 있음. 분동도 중요하지만 의원을 인구 20~25천 명 당 1인 정도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음.

박종수 :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수가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의회를 줄여야 한다는 것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인구수 대비 정수를 정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 의문, 하는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얼마나 인원이 부족한지에 대해 논의해주시는 것이 특례시 의회 권한 논의에 더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이에 대해 여쭙보고 싶음

- ✓ 저는 관점을 달리하는데,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정수를 정하는 것이 최하에 기준을 두고 있음. 실제 규모가 더 크어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고 이를 추가하여 인구비례로 나누는 것이고, 신규 의원의 배정이 이전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이며 특례시는 인구 100만 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고려가 필요함
- ✓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저희가 지방자치사무가 늘어나면 공유자산 심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기타 상임위 사무가 복잡하고 늘어나서, 상임위원회의 확대가 필요함.
- ✓ 사실 상임위가 업무가 더 필요하고 인원수가 부족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상임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고, 지금도 이걸 느끼고 있는데 업무를 세분화 및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박종수 : 비슷한 맥락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인구에 대해 계속 고려를 해버리면, 최소한의 애길 할 수 밖에 없음. 이 정도 인구가 있으니 이 만큼은 보장을 해야한다는 맥락이지, 인구수 애길 계속하면 설득력이 없음.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음

- ✓ 건설 교통 위원회의 경우 도시계획의 경우 기초단체 급에서 할수 있는 연구와 업무, 특례시에서 할수 있는 연구와 업무가 다를 것임. 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 집행부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회 역시 마찬가지임. 교통 분야 역시 기존에 있던 교통수단 만으로는 커버가 안되고 신 교통 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철도, 자가용, 도로 등에 대해 일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업무가 늘어날 것임. 건축 역시 마찬가지임. 인허가업무가 많은데 현재는 기초 단체에 준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가 거의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음.
- ✓ 환경 경제 위원회의 경우 재정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이 어려운 도시인데, 이에 대한 자립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함. 현재 환경과 경제를 함께 보는 구성인데, 이를 함께 본다면 자립이 힘들 것임. 특례시가 된다면 고유 업무를 가지는 상임위원회가 필요할 것임. 환경 문제도 더욱 늘어날 것 등 이에 대한 정수 확대가 필요함.
- ✓ 고양시는 학교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특례시가 된다면 경기도 교육청에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 거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임위 구축이 필요함
- ✓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
- ✓ 앞서 말한 환경 경제 위원회에서 환경과 경제는 어떤 면에서 상반된 업무인데, 이것이 공존하는 것이 한계가 분명함.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현재 4개 상임위를 최소 6개로 늘어나야 하고 6-7명 정도 위원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최소 상임위 수와 이에 대한 적절한 위원 수를 고려할 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함

[Q2]

박종수 : 특례시 의회의원의 처우와 관련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시급한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특례시 의회 의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 특례시 규모 증가, 전문화에 대응하여 특례시 의회 의원,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생계 유지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이 있음.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은 마냥 올릴 수 없겠지만 수당을 세분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 가정을 꾸리기엔 세비가 부족함

[Q3, Q4]

박종수 : 특례시 의회 기능과 관련하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례시에서 신설되어야 할 기능, 기존 기능에서 더욱 많이 담당하게 될 것 같은 업무들이 무엇이 있는지?

- ✓ 역으로 질문해서, 의회의 역할이 기초와 광역이 차이가 있는가? 권한은 동일함

박종수 : 특례시 의회 기능권한은 동일하나, 지자체가 하는 일에 대해 시의회가 견제 등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는 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는 등 어떠한 분야에서 일이 더 많아질지. 행안부에서 어떤 자료를 만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공식화된 것은 '특례시를 만든다'는 수준임.

- ✓ 가장 핵심은 교육행정의 자치권과 의회가 심의할 권한에 대한 부분임. 자녀 양육과 교육을 인구 100만 도시에서 광역단체에 맡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함.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문제라서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특례시교육감 선출 등도 고려하면 권한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함
- ✓ 도시 계획 심사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심의 필요

박종수 : 특례시가 되면서, 기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치 사무의 단위가 확대되는 것 등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것인지(답변 : 네)

- ✓ 특례시가 되면 독자적인 결정권이 생겨야 함. 이를 고양시로 가져올 경우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완충 기구가 필요함

박종수 : 기초에서 할 수 있는데 광역이 담당하거나, 광역이 담당하지만 이를 기초에서 담당해야 할 것 같다는 업무가 있는지

- ✓ 교육에 있어서, 지원만 하지 이에 대한 교육 예산 심의나 감사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음. 또한 기초 단체가 자신의 지역 교육 환경에 대해선 가장 잘 알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한은 특례시에서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 고양시의 경우 1기 신도시는 학교에 대한 수요가 적지만, 새로운 신도시는 학교 수요가 큼. 학교 신설에 대한 심의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올리다보니, 경기도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지역별 편차 반영이 없음.

박종수 : 가장 주안점이 교육분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업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시급한 사무로 보고 계시는 건지 추가 질문 드림

- ✓ 가장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지금 하고있지 않으나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업무임
- ✓ 지역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경기도의 판단보다 예산 절감이나 낭비 방지 등에 대해 더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예산 증액도 필요함.

박종수 : 교육분야의 경우 광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에 대해 논의가 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는 불투명하나 일단 본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겠음.

박종수 : 교육이나 복지, 문화 쪽에 대한 특례시의 기능 확대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는지?

- ✓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고, 복지에 대한 수혜대상자도 늘어남. 따라서 상임 위원회가 확충되어 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함.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 복지가 예산의 5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서도 의원들이 더 필요함
- ✓ 복지 관련해서, 기획과 집행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분리도 필요한 것 같음

[Q5]

박종수 : 의원정수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일이며, 시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나 규칙 단위에서 바뀔 필요가 있는 것 예를 들어 위원회 구성의 변화(예 : 환경과 경제의 분리 등), 교육과 문화 복지 등 공공서비스 분야 등 위원회를 한 번에 늘리지 못한다면 단계적으로 늘려야 할 텐데 이에 대해 고민한 내용들이 있으신지?

- ✓ 특례시 정도면 자체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예산도 고민 필요

[Q6]

박종수 : 현재 특례시 내 일반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일반시에서 특례시로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일반구의 지위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특례시에 걸맞는 일반구의 미래 변화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를 들어, 최근 구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일방적인 임명이 아니라 공모 등의 방식도 있음. 시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견제권을 행사하는 등 (→ 특별히 이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 없다는 것으로 마무리 됨:답변 특이 사항 없음)

[Q7]

박종수 : 인사권의 독립은 인사의 대상과 행사의 범위에 따라 그 독립성 정도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의 핵심적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1) 인사권 행사 대상(ex, 사무처장, 전문위원, 일반행정 직원 등)의 범위, 2) 인사권 행사 범위(ex, 채용, 임명, 지휘·감독, 징계, 승진, 전보, 휴직

등), 3) 임용방법(공채, 특채, 추천, 자격요건 등) 등에 관해 의견 - 현재는 법령에서 조직에 대해서만 다루지고 있고 인사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현재 고양시의회의는 50명 직원이 있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보가 되었는데, 이들 모두를 특례 시의회로 이동시킬 것인지. 순환보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의사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수당도 현재는 마땅히 정해져 있거나 보장된 것이 없음. 이들에 대하여 특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 입법부와 집행부가 나뉘어져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수도 시설직이라는 직군이 있는데 다른 계열로 넘어갈 수 있으나(계열 전환 가능)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 근무 기간이 마련되어 있음. 개방형으로 채용제도를 진행해도 괜찮다고 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서포트가 필요한 것이지 일반 행정이나 지원, 단순 보조의 경우 일일이 인사권은 상관없을 것 같음 (=행정직은 순환을 가고, 전문직은 의장이 권한을 가지는 것)
- ✓ 평가(고가), 승급 권한은 의장이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해 전적으로 행사하고, 보직은 의장과 시장이 협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이렇게 진행하면 여러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임. 또한 만약 업무가 맞지 않을 경우, 폐쇄형 조직 안에 넣어두는 것도 고통을 받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환 등에 어느정도 자율성을 주는 것도.

박종수 : 인사권을 나눠서 하신다고 생각할 때, 사무처 전체에 대하여 복잡하게 얽혀 있음. 국회의 경우 입법고시, 국회 시험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이 구분하여 채용됨. 이는 권한이 극대화 된 경우인데, 특례시의 경우 어느 정도의 권한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무국에 대한 인사권은 필요가 없으신 건지?

- ✓ 사무국은 보조적인 업무. 입법기능은 실질적으로 국회로 따지면 입법 공무원임. 일반 행정의 경우 공무원 수가 많아야 3500명 수준에서 제한적이라고 하면 순환이 안되고 승진 기회도 낮을 수 있음.
- ✓ 지금 현재도,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 시장이 인사를 하지만 의장과 협의하게 되어있음. 우리 50명이고 저쪽은 3000명인데 50명을 여기 안에서만 계속 인력을 순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한계. 따라서, 행정직은 보조직이니까 시장과 협의, 전문직은 개방형 계약직.

박종수 : 전문직의 범위에 대한 고민이 있음

- ✓ 상임위, 전문위까지 모두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독자적인 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임
- ✓ 핵심은 일잘하는 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열심히 일했을 때 이에 대한 승진과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인사권을 의장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승급 등을 보장해주고 싶음. 또한 사무처가 독립적으로 뽑을 경우 추후에 동일 급에서 이동을 할 때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음.

박종수 : 현재 사무처의 직원은 고양시의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직도 순환될 것이고, 조직을 떠나기도 할 건데, 이에 대해 의회 사무 기능을 온전히 해줄 사람을 운영할 것인지, 여전히 순환되는 구조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음 - 단순 보조라고 하시지만, 의회 홍보 사업 등도 이들

이 하고 있는데 이들을 단순 행정 업무로 본다면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상임위 전문위 수준에서 인사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음. 이에 더하여, 인사권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유지가 될 텐데, 전문위원과 사무국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어야 함. 이에 대해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했음. 보좌인력도 충원될 텐데 전문직으로 해서 임기제로 뽑으실 건지, 상설 연구인력으로 뽑으실 건지도 궁금함. 현재는 의원 2명 당 1명이라서 특정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인데. 연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인력의 충원 등도 고려해야 함. 구체적인 인사 권한과, 위임 범위. 사무국장이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는가, 전문위원실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는가, 단순한 관리가 사무국장의 역할인가 등에 대한 역할 고민이 필요함. 관련 질문으로, 인사권을 부여받을 때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임.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은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가정하는 등도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음.

[Q8]

박종수 : 정책 보좌 인력에 대한 질문으로, 보좌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었고 법령 상 의원 2명 당 1명의 정책 보좌 인력을 두겠다고 결정된 바 있음. 그런데 이를 의회 사무기구의 보좌인원으로 볼 것인지 의원에 대한 보좌 인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제주도의 경우 의원이 아닌 사무기구의 인원으로 편성되어있음. 고양시의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제주도의 경우 상임위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아니면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는지

- ✓ 고양시의 경우 주무관 1명이 늘었으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없음.
- ✓ 의미 상 의원을 보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의 한계도 있음. 이들을 의원에 배정한다고 했을 때 의원이 홀수이면 맞지 않음.

박종수 : 그랬을 때 정책지원 인력에 대한 인사도 의장이 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의 정책지원 인력을 운영할 전문위원이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 의원 2명 당 1명이기 때문에 의원에게 전속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상임위로 배정을 하고, 의원들이 보좌에 대한 요구를 전문위원에게 하고, 전문위원이 배분하고 의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음
- ✓ 전반기 하반기 의원 개인의 상임위원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박종수 : 현재 말씀하시는 방안이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안임. 상임위 별 3명 배치하여 운영중이며, 대신 성과평가는 전문위원과 사무처장 중심이며 의원들은 평가하지 않는 시스템임.

- ✓ 사무처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고 의원들이 평가해야 함. 의원이나 상임위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함
- ✓ 하지만 의원이나 상임위에서 평가하게 된다면 주관적일 수 있고, 보좌인력 간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

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박종수 : 상임위원회는 현재 체제로 가고, 정책보좌인력은 상임위에 추가하기보다는 국회로 따지면 입법조사처와 같이 별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연구진들과 논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정책 사례 연구 등 연구 역량이 필요하신지, 재정적 분석 전문성이 필요한 건지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으신지 - 이에 대해서는 고민 더 해주시고 보고회 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건의 및 추가 논의 사항]

✓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광역과 기초 간 차이가 있는지. 특례시로 될 경우 독립적으로,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기초단체가 예산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제도나 법령 등이 있는 건지. 지방공기업을 좀 더 확대하거나 역량을 갖추게 하려는 방법에 대하여.

박종수 : 현재 기초 지자체 지방공기업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의회의 공사공단에 대한 방향성 제시나 기관 차원의 고민이 많지 않고 시장의 권한이 매우 큰 편임. 지자체 산하의 공기업의 역량 등을 위해서는 행정기구를 압박하시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생각됨. 시의회는 현재는 고려대상이 아닌 상황임.

✓ 특례시로 기능확대에 있어 의원들의 기능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검증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 같음. 자치경찰제 운영 등에 대한 고민.

박종수 : 잘 알지 못하지만 기초 수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에 대한 사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봄.

✓ 특례시 기능 확대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음성 희미하여 전사 불가). 주민 감사 청구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에 대한 마련도 필요함.

✓ 특례시 의원의 확대 등에 있어서, 현재 700개의 사무를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300개 이상의 업무를 이관받으려고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음. 업무가 매우 늘어날 것이며 조례 개정도 늘어날 것. 전문화 되어야 하고 세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입법 기능과 행정 분야로 2가지 시스템을 기준으로 구축 필요

✓ 의회는 전자정부 시스템이 없음. 전자문서시스템도입이 필요함. 그런데 이에 대해 관련 법령들이 여러 개 얽혀 있고 보안 규정 등 때문에 문제가 있음.

✓ 현재는 보안 문서를 복사된 파일 형태로, 포털 메일로 받아보고 있는 상황임. 이는 오히려 더 보안 상 위험함.

✓ 국장의 급수(기존 4급에서 3급으로 등 특례시로 바뀔 시 이에 대한 급수 상승 고려 필요함)

✓ 전문위원의 급수가 정해져 있음. 그런데 인원 수 제한까지 해놔서 같은 전문위원끼리 급수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음.

4. 수원시의회 인터뷰 내용

1) 수원시의회 의장님 인터뷰

왕재선 교수님: 특례시의회가 되면서 현재 준비하고 있거나, 특례시에 걸맞는 제도나 구조를 어떻게 바꾸려고하는지?

의장님: 지난번 착수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 예산 관련 조직 필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직 필요, 예를 들어 도의회사무처에 도민권익담당관같은 조직, 의원들의 공약은 곧 시민들의 요구, 공약 추진사항들을 전담하는 기구 필요, 창원에서 요구하는 자치구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개정 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의 특례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형태를 달리할 수 있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구체화한다라고 돼있음 -> 특례시들은 예를 들어 구청장을 직선제로 한다던가, 구청장을 의원중에 선임할 수 있게 한다던지, 수원시의 4개 구 중 한개구라도 임명을 한다던지 다양한 방안 강구

왕재선 교수님: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는 의원정수 적음, 광역시라는 이유에서 사무처나 조직은 큼, 불합리한 부분 존재, 의원정수 관련하여 수원시는 35~40명 사이, 정수가 인구수 기준으로 형성되는게 불합리한 처사, 또다른 기준으로 어떤 것이 고려되어야 할것인가?

의장님: 지역구별 최소 의원 수 7명 제한, 경기도 내 도시들이 쿼터가 정해져 있어서 오산시는 20만명이 넘는 도시지만 의원은 7명밖에 없음, 공직선거법 내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려움, 변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각 당대표에게 건의 예정, 정수 기준이 인구수로만 되어있는 것은 추상적, 수원은 125만명에 37명, 용인 110만 29명, 성남은 100만 미만이지만 용인보다 많음(행정구역의 수 차이 때문)

왕재선 교수님: 결국에 의원정수 증가 위해서는 기준 변경 필요, 예를 들어 확장된 기능이나 법안처리건수, 의원님들의 업무량 등 구체적 지표들이 논거가 될 수 있다, 특례시에 어떤 기능이 보완되고 추가되어야 하는가?

의장님: 국회의원들의 의원정수는 헌법에 규정대로 1/2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름, 지방에 있는 군의회의 경우 최소인원이 7명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 존재(오산시), 제일 접근하기 좋은 방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논리와 같이 접근하는 것

왕재선 교수님: 의원 처우 문제, 기초의회의원들 처우가 열악하다고 생각함

의장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를 받는 곳이 1등 강남구, 2등 수원시(5천만원대), 다른시들은 낮음, 올리려면 여론의 반발 등 쉽지 않음, 공무원들은 공무원인상률, 호봉에 따라 올라감, 의원들은 공무원 인상률로만 올라감, 의원들은 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끝, 명절보너스나 기타 보너스 없음, 4대보험 다 보장안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없음. 의정활동비가 현재 110만원, 이것을 광역수준으로 올려달라(150만원), 기본적으로 광역시에 준하도록 요구

왕재선 교수님: 행안부(정부부처)에서도 문제의식은 있느냐 바뀐 것은 없음

의장님: 차라리 검직금지를 없애든지, 처우를 개선해줘야 전문적인 외부인력 유입도 가능함, 광역시와 시의 의정활동비 자체를 차등을 두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됨, 기초의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구조라고 생각

왕재선 교수님: 특례시가 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역할이나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

의장님: 그것이 제일 큰 과제, 의회 조직확대, 인사권 독립 등 이러한 사안들은 시민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아님, 시민권익담당 조직 신설(집단민원이나 요구사항 담당) 필요, 예산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 -> 혐오시설 넘비현상이 심해짐, 그런 기구들에서 나오는 수익들에 대한 기금이나 별도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을 도와줘야한다고 생각, 허가가 나지 않았다가 지금은 검토가능하다고 함,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던지 방법을 찾아야함,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 필요, 또한 구청장 중 하나를 위원들이 맡는다면 이러한 새로운 형태로 인해 구의 발전 예상

왕재선 교수님: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의장님: 시범사업으로 시도할 필요, 단기적으로 해보고 결과를 보고 확대, 유럽이나 외국들은 지방정부는 거의 다 의원 내각제 형태로 운영, 우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구를 자치구로 바꾼다고 하면 구청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하는가? 직선제로 뽑히는 구에는 위원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왕재선 교수님: 법률개정사항 등 제시를 해야 하는 부분

왕재선 교수님: 사무처의 지원 기구, 의회직렬 신설 문제, 입법보좌원 선발 이슈, 입법지원기구가 가지는 문제점은?

의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필수, 최소 인력만 있다고 생각, 체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뒷받침이 안되어 실패, 인사를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의 인력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함, 하지만 도의회 경우 엄청 바쁨, 회의 전에 예산자료 분석이라든지 업무가 많음

왕재선 교수님: 도의회에는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입법조사과나 등 체계가 갖추어진 상태, 이러한 시스템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 상임위원회라고 해도 광역시와는 규모 차이가 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곳인 광주&대전 유사, 담당관실, 전문위원실 등 최소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 인구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문제 존재

의장님: 현재 의정담당관이 한 명인데 담당관제로 최소 2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 인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신설 필요, 장기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직 공무원 형태로 부서별로 형태를 다르게 해서 이상적인 모형 추구, 광역끼리 인사교류, 기초끼리 인사교류 등, 3년 안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방향성 제시 필요, 현재 사무처 조직인력들은 순환보직, 임기제 분들이 변칙적인 형태로 존재(입법보좌), 무조건 늘린다기보다는 논리를 제시해야함, 의원정수X2.9명의 규정을 주장하기전에 어디어디에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제시가 필요

왕재선 교수님: 타 광역시의 전문위원실 벤치마킹해도 좋을 듯

왕재선 교수님: 인사관리 부분에서 의회직렬 신설과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문제 발생 우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사무처는 행정부 공무원과 입법부 공무원들을 따로 뽑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는지?

의장님: 지금은 단기적 모형만을 생각 중, 현재는 일반직이 많지만 임기제(역할별)로 뽑고 이 비율을 높여 가는 형태로 발전

왕재선 교수님: 임기제는 전문적 측면, 의회직은 임기제와는 다른 일반직에 해당

의장님: 의회직의 큰 문제는 너무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기타 사항들이 어려운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향성까지 이번 연구에 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 현재는 단기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확대 등의 방안만 생각, 내년 1월부터 인사권 독립이지만 아직 불확실한 상황

왕재선 교수님: 의회직 신설 문제는 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움, 방향성 제시의 문제, 보고서에 담을 때 운영 측면의 문제로 다룰 수 있음, 중장기적 문제로 법률개정사안이나 규정개정사안 등을 담아야 함, 의회직렬 신설은 후자에 해당, 보고서에 담는다면 어떤 법률을 개정해야하고 등을 제시해야 함

의정담당관: 임기제 공무원들은 정책보좌관(전문인력)을 큰 틀에서 말한 것

의장님: 지금은 특례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 다른 프로젝트에서 의회직 신설을 더 깊이 다룰 것

왕재선 교수님: 임기제 공무원(입법보좌 인력)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의원정수 1/2로 한다(부칙에 명시되어 확정된 사안), 인사권 독립 사안과 함께 재정적 사안이 같이 가야하지 않나?

의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 필요, '시'는 ~실 ~국 ~과 -> 행안부가 정해준 것, '의회'는 집행부에서 통제, 앞으로 누가 관리할지 불확실, 이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

의정담당관: 대통령령으로 정원 규정 존재(담당관이나 사무국장의 직급 등), 자치단체 정원 조례에 의해서 사무국 직원 운영 중, 총액인건비제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앞으로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 자체에 재량행위를 부여할 것인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 필요, 어느 것이 옳은가?

사무처 직원: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하는 인력의 차이와 조직지원의 차이가 큼, 의원들의 개인들의 역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음, 지원의 역량이 중요(정책의 자료들, 보고서항들 매일 올라가는 등),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인력, 인력 부족에 따라 지정업무에 집중력 떨어짐, 지원의 규모는 대략, 도의회는 의원님 한 명당 대략 5~6배 정도 지원 차이가 난다고 생각, 지원인력만 따지면 도는 3명, 수원시는 1명, 3배 차이

왕재선 교수님: 경기도까지는 무리더라도 비슷한 규모의 시와 비교는 가능, 인사권 독립을 하게 된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기타사항 필요하지 않을까?

의장님: 일반직 공무원은 도에서 뽑고 지역별로 뿌리는 방식, 임용권자는 시장, 인사위원회도 당연히 필요 (승진, 인사), 인사권 독립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집행부는 시와 도가 수직 관계이지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상호독립적인 존재, 하지만 시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해야하지만 광역에 의존하는 부분 존재, 이를 해결할 방안 필요

왕재선 교수님: 특례시의 경우 인사권 재량 행사의 역량이 된다고 생각, 이를 위한 체계를 갖춰야하는 문제, 인사관리파트에서 다룰 예정

2) 의정담당관 인터뷰

담당관님: 40시간 임기제는 정원이 주어져야 함, 정원이 주어지면 집행부에 있는 인력을 가져와야 함, 정책보좌인력은 도가 시의 5배, 의회사무국의 한계점으로 인력이 있으면 집중과 선택 가능, 인력이 아예 부족하거나 있어도 인력이 타 부서에 소속되어 있음, 정책보좌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책보좌인력을 정규직으로 할 수 없어서 35시간 임기제로 채용하는 현실, 임기제는 주 단위로 40시간/35시간(정원안에 안들어감 있음, 총액인건비에는 포함), 상임위원회에 한 명씩 소속, 시간선택제는 20시간,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질적인 차이 발생, 국회(9명) 광역시(3명) 수원시(1명)

왕재선 교수님: 법령, 문구 바꾸는 것이 제일 어려움

담당관님: 특례시 명칭을 바꾸고 역할이 달라지니 권한도 줘야 한다고 생각, 시군 민원이 상당히 강력해짐, 민원인들의 전문적 지식, 소송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 필요(권익담당관 필요) 현재는 민원 올라온 것 처리하는 데만 해도 바쁨, 권익&공약 살펴볼수도 없음, 시민들의 특례시 변화 체감에도 도움 될 것

왕재선 교수님: 직원들을 늘린다고 하면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담당관님: 예산이 가장 큰 문제, 행안부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 인사권 독립을 준다고 했으면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괴리가 큼(공무원들의 현재의 일 vs 의원들의 의정활동), 재원문제, 수익의 문제 등 근본적 문제 존재

왕재선 교수님: 창원시는 인구가 감소추세, 확대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문제 우려, 100만 밑으로 인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담당관님: 돌아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조직 구성을 줄일 수는 없을 것, 50만-100만 간격을 크게 두는 것도 한계점 때문,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인구 상승 유인이 없음

왕재선 교수님: 창원시의 특수성 존재, 단기적으로는 인구가 시 통합의 효과로 늘어났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려 존재, 특례시의 조직, 인력, 제도적 기준이 서울 경기 부산 이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광주, 대전, 울산 정도까지는 가야한다고 생각, 그 정도의 시스템이 필요

담당관님: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 재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는 이유

왕재선 교수님: 광역시의회(사무처)와 시의회(사무국)의 구성 다름(사무처/사무국/사무과 차이가 존재)

담당관님: 우리나라 조직도상 지방자치단체 시의 과장은 사무관, 도의 과장은 서기관, 행안부의 직급은 더 높음, 수직적 구조, 역할이 틀린거지 권한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

왕재선 교수님: 특례시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 목표

담당관님: 수원시 집행부의 기획조정실장이 3급, 의회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원래 의회사무국장에 3급이 필요하지만 인원이 없음(공무원 승진소요연수에 맞출 수 있는 인원 없음), 집행부의 국장들은 4급 사무국장에 3급이 오게되면 사무'국장'이라 부르는 것이 안맞음, 법상 처장은 아니지만 내 부적인 명칭은 사무처장으로 부를 것,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꿀 수 있음, 도는 사무처장, 기초자치단체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 도에서는 담당관을 3개 이상 둘 수 있음, 울산처럼 둘만 되어도 수월할 것

왕재선 교수님: 광역과 기초의 불합리한 차이 체감

5. 용인시의회 인터뷰 내용

용인시의회 인터뷰

21. 05. 17.(월) / 14:00 / 용인시의회 /

참석자 : 의장 김기준, 부의장 김상수, 문화복지 위원장 장정순, 경제환경 위원장 유향금

연구진 : 곽창규 교수, 왕재선 교수, 박종수 교수

곽창규)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의정 변화와 관련하여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나 당면 과제를 해결위한 방안
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장정순) 수원시나 고양시에 비해 용인시는 도농 복합 지역인데,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의원 수에 따른 적절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용인시의회는 의원 수(29명)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고 생각한다. 즉, 특례시에 걸 맞는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하다.

김기준) 조직모형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특례시의 탄생 원인에 착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특례시는 기형적 행정체계를 도입한 한국적 모형이다. 짧은 시일 내에 시행을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재정권). 그러나 재정적 독립을 100%로 달성하는 것은 경기도 권한이 축소가 된다는
것을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조직의 모형에 있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안한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한 큰 제도 속의 개인으로
바라보았을 때, 의회가 독립한지 3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제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고 있지 않다. 모양적 구색을 갖추었지만 재정적 독립, 인사적 독립성이 없었다. 재정적인 부분은 광역시
에서 불만이 많겠지만 차차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분권속에 광역시 수준의 위치가
되었을 때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용인시의 경우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의원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와 마찰이 발생한다. 그리고 급여와 관련하여 현행 의원들의 급여
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
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만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충원되어야 시민
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이 의회에 남아있을 수 있도
록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모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회도 예산권을 가져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 진행에서도 광역시와 다르게 모든 내용을 경기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초창기
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만 진정한 인사권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 견제하는 전문 인력들이 걱정 없이 활동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목적이다.

박종수) 기초에서 특례시로 변하면서 특별하게 많이 진행할 것 같은 의회 활동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김기준) 의회의 중심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권 독립과 함께 재정 부분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이 기존의 의회에는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아
닌 1년 예산 전체를 받아 의회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곽창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의원들의 권한을 늘려놓은 것처럼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다.

왕재선) 도시가 과거에 비해 환경이 좋아졌는데, 이는 곧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인구수가 늘어나고 도시의 환경도 좋아졌지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원시는 100만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다른 3개의 시는 유지 또는 증가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한 점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내에 인사권과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김기준) 여러 제약이 많은 현 체제에서도 의회는 조금씩 발전을 해왔다.

왕재선) 수지구의 경우 계획도시로서 발전이 높고 생활의 편리성이 많은데, 처인구의 경우 아직 농촌같이 느껴진다. 지역 간의 발전 격차로 인한 민원이나 불편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균형적으로 맞춰주기 위한 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김기준) 용인시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지역부터 발전이 진행되는 매커니즘이다. 용인의 균형적 발전을 바라보았을 때 수지 기흥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는 처인구가 더욱 각광받을 것이다.

왕재선) 지역의 발전에 있어 의회의 견제 감시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들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기준)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전문 인력(의회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곽창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 인력들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유향금) 먼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하면 안된다. 이러한 부분은 인사권 독립이 진행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의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서 사무관을 배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고민인 부분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특례시로 변함에 따라 무슨 혜택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답변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례시로 변화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개념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구의 경우 어떻게 지위격상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김상수) 그리고 처인구민들은 자신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프라도 부족하고 유해시설만 늘어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또한 최근 특례시에 대해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특례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실질적으로 특례시가 되었을 때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된다.

곽창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규모 수준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유향금) 특례시가 될 경우 상위 기관인 경기도의 승인권은 상당부분 권한들을 위임을 받는데, 현재 의회에서 교육과 같은 파트의 경우 예산을 지원하지만 전혀 건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

도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산을 상당 부분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는 견제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들도 특례시가 되면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곽창규) 특례시를 실시하는 이유가 이러한 규모와 권한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종수) 기존과 같이 집행부의 인력이 의회에서 근무를 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김기준) 아니다. 의회 차원의 부처신설을 통한 인사권 독립을 해야 한다. 보좌관 제도는 바로 시행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의회직 신설 및 독립이 필요하다.

박종수) 정책보좌 인력이 현재 의원 2명당 한명 꼴인데, 지금 현재의 아이디어들의 대부분은 상임위원회에 배치에 시켜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정책보좌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

김기준) 기존과 같은 의회 직원들을 집행부에서 끌어오는 것과 같은 형태는 안된다. 전문인력은 현재의 전문적인 일을 하고 의회직에게는 다른 여러 기능을 맡기는 것이 의회의 체질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창원시 인터뷰 내용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질문지

1.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유급 보좌관으로 볼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칭·직무범위·직급·채용절차 등이 포함될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특수성 및 개별적 맥락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참고내용】

<p>행안부 논의 중(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형태 : 위원회 또는 사무처 등에 배치·운영 ● 직무범위 : 공적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 ● 직 급 : 시·군·구 7급 이하로 도입 ● 종 류 :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도입 ● 임용절차 : 임용절차「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준용
<p>조례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 급 : 시·군·구 6급 이하로 도입 ● 종 류 :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도입 ● 임용절차 : 임용절차「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준용 ●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별로 다양한 사무에 대해 전문인력 유치로 의정 지원 용이 - 직급 상향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 확보가능 ●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직급조정은 예산낭비 요소 작용
<p>특례시 의회 검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 급 : 5급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연구팀, 예산검토팀 등 한시적 팀을 나누어 의원 의정활동 지원 ※ 6.7급이하 : 인력관리 등 운용측면에서 유리 ● 운 영 : 사무처 등에 배치 및 팀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회에별로 업무량 및 중요도 등이 다를 수 있고, -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는 별개로 의정활동 가능

2.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유급보좌인력은 ‘조직차원의 보좌인력’과 ‘개인차원의 보좌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조직차원의 보좌인력’은 대표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연구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분석관’, 국회사무처의

‘법제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 ‘개인차원의 보좌인력’은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보좌직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정원과 보수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체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의회의 ‘조직차원의 보좌인력’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개인차원의 보좌인력’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볼 때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조직차원의 보좌인력’으로 볼 것인지, ‘개인차원의 보좌인력’으로 볼 것인지가 먼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해 창원시의회 의견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경우 정책자문위원의 임용방식은 국회 보좌직원(의원 개인 차원의 보좌인력) 임용방식인 사적(私的)인 ‘의원의 추천이나 요구’와 공적(公的)인 ‘의장 또는 사무총장의 임명’이 아닌,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공적(公的)인 ‘채용과정(공개채용)’과 ‘의장의 임명’을 통해 임용됨. 특히, 정책자문위원은 채용자격이나 경력요건의 제한이 없는 국회 보좌직원과 달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정책의 전문분야별 전공과 학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의 보좌인력’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음.

【참고내용】

<p>행안부 논의 중(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범위 : 공적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만 수행가능 -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의원 개인의 정치활동 지원 불가 명시 <p>⇒ 조직차원의 보좌인력만 가능</p>
---------------------------	---

3.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특례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와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책보좌관’ 또는 ‘공동보좌관’으로 알려져 있는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15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모델이 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 제도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 검토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제도의 세부내용별(① ~ ⑦)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주시길 바랍니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자문위원’

구분	내용
① 임용권자	• 의장
② 채용방식	• 공개채용
③ 자격요건	•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정책의 전문분야별 전공과 학위기준
④ 직 급	•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⑤ 소 속	• 각 상임위원회별 3명
⑥ 성과평가	• 다면평가(전문위원과 사무처장의 조직 내 상급자 평가와 함께,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의 다면평가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
⑦ 역 할	•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 제·개정 등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도



4. 「지방자치법」 상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자문위원’ 제도와 동일하게 ‘조직차원의 보좌인력’으로 상정할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제주특별자치도와 동일하게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지, 2) 의회 사무처 내 정책지원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내용】

사무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문실운영 또는 정책자문 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장·팀장(5급)이 담당관을 맡고, 그 하위로 정책지원 보좌관(6급이하)을 두어 운영 - 정책자문실을 인력full로 운영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에 배치하는 경우보다 의원의 정책지원, 예산검토 등을 할 수 있는 전담팀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상임위에 두는 경우보다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지원 용이.
상임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임위에 소속되어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계약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고 상임위 전문위원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에 이들을 투입하는 것이 어려움

5.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자문위원’ 제도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법」 상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상임위원회 내 배치할 경우(<그림 1>, <표 1> 참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성과평가에 있어 전문위원 및 사무처장이 평가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의회 의견에 대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내용】

전문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내 정책전문인력의 평가는 상임위전문위원이 평가함으로써 - 전문인력의 통제가 용이하며 - 상임위 내의 일은 상임위내전문위원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 최종적으로 사무처장이 재검토하여 인사 평가의 편향 방지
외부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를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는 경우 - 정책평가의 내부요인의 배제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 - 근무기간이 정해진 임기제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 전문위원의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음. - 효율적인 조직운영은 힘들것으로 보임.
절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전문가인 전문위원의 평가가 필수, ● 객관적인 정책수행 측면에서 볼 때 외부전문가 필요

6. 일반적으로 의회업무를 지원하는 의회 사무처의 기능은 입법 및 정책지원 기능, 의사지원 기능, 행정지원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의회별 입법지원조직의 편제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안작성 지원, 재정분석 지원, 조사회답 지원, 참고자료 지원, 행정부 업무감독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채용될 경우 어떠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내용
법안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의원이나 위원회가 특정 법안의 내용을 마련하면 이를 유관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언어로 전환해내는 기능
재정분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의 운영을 감독해야 하는 의회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및 결산분석으로 구체화
조사회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정책영역이나 기능의 제한이 없이 의회에서 심의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제도의 연혁, 해외사례 비교, 시민사회의 각종 이견과 불만의 내용 등을 질의하면 그에 적합한 회답을 제공하는 기능

<표 2>

입법지원 기능
인터뷰 질문

1. 특례시 의회 의원정수 산정에 있어서 현재 산정 방법의 문제점은?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의원정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특례시 의회 의원정수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자치단체는 어디가 있는가? 그 이유는?

⇒ **인구100만이상 광역자치단체의회**

□ 의원정수 산정 기준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별표3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의 인구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 공직선거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27호) 제4조

① 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이하생략)

②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대 광역시 기초의원 정수 현황

(2020년 12월 기준)

지역명	기초(시·군·구)의원 정수(명)			인구수	의원1인당 인구수(명)	요구 의원수(명)
	소계	지역구	비례대표			
부산 (15구 1군)	182	157	25	339만명	18,626	-
대구 (7구 1군)	116	102	14	242만명	20,862	-
인천 (8구 2군)	118	102	16	294만명	24,915	-
광주 (5구)	68	59	9	145만명	21,323	-
대전 (5구)	63	54	9	146만명	23,174	-
울산 (4구 1군)	50	43	7	114만명	22,800	-

2. 특례시 의회의원의 처우와 관련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시급한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특례시 의회의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특례시의 경우 광역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 의정활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음.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 인구 100만 대도시의 경우 의원 1인당 사무직원의 수를 광역 수준으로 기준 마련 (의원의 의정활동에 제약발생) → 의원 1인당 2.9명

광역시의회 의원수 및 직원수 현황

구 분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인천	광주
의 원 수	47명	30명	22명	22명	37명	23명
직 원 수	122명	92명	56명	84명	110명	77명
의원인당 직원수	2.59명	3.06명	2.54명	3.81명	2.97명	3.34명

3. 일반시의회에서 특례시 의회로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수행해야 할 기능의 확대가 예상된다. 특례시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신설기능과 기존 기능의 확대 두 가지 관점에서 응답요청)

⇒ **광역단위의 행정조직의 필요성 절실**

- .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두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광역시는 기초구별로 별도의 의회가 있음)
- . 광역시의 자치구별로 진행되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의 입법요구가 특례시 의회의 경우에는 폭증할 가능성이 높음
- .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조직 및 입법지원 인력증원 필요.

4. 특례시 기능확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능의 확대 혹은 신설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주민자치 원리 강화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명시)
- ⇒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적극 참여할 권리 신설)
- ⇒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 개·폐 청구)
- ⇒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 (시·군·구 : 200→150)
- ⇒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주민조례발안·감사청구 18세)
- ⇒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주민투표로 기관구성 변경 가능)

5. 현행 지방자치법 등 시의회 운영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법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한 생각은? 만약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면 담겨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한 생각은?

⇒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 필요**

- . 의회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의 독자적인 인사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인력 운용의 폭은 적음
- . 인력 운용의 폭을 다양화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적체, 순환보직 등 방안 마련 필요

⇒ **재정권의 독립 필요**

- .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의회의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 애로

6. 현재 특례시 내에 일반구가 존재하고 있음. 일반시에서 특례시로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일반구의 지위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함. 특례시에 걸맞는 일반구의 미래 변화방향에 대한 생각은?

⇒ **특례시 일반구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조례제정권, 자체 조세확보권 등이 없음.**

7. 현재 일반구의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단기,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일반구 주민의 요구를 광역시 자치구 주민이 누리는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8. 일반구의 지위 격상을 위해서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100이상의 특례시의 경우, 일반구의 자치권 확보 필요
 . 주민자치 측면에서 자치구가 누리는 특혜를 특례시의 일반구에도 누릴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9. 특례시 기능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위원회가 추가될 예정인가? 특례시가 추가로 신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 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없는 만큼 다양한 주민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 각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세분화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특별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00만이상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항만시설의 개발·관리·운영 등 권한 확보 필요
 . 창원특례시의 경우는, 바다를 접하고 있고, 시민의 주거, 생활공간도 바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10.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및 직원의 현황은? 기관 파견과 임기제 등 직원의 구체적인 소속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으신가요?

⇒ 기본현황 (사무국장, 의회담당관, 전문위원실 5, 담당 4)



전문위원실 14명				
의회운영 (5급)	기획행정 (5급)	경제복지여성 (5급)	문화환경도시 (5급)	건설해양농림 (5급)
2명	3명	3명	3명	3명

※ 정·현원 : 46명 / 46명

구분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46	1	6	11	12	10	6	
현원	46	1	6	10	23	2	4	

11. 의회사무국의 조직도 및 팀 구성에서 기능의 중복이나 인원의 과다 또는 과소 배치가 있는 부서(팀 포함)는 어디인가요? 추가로 인원이 확충된다면, 어떤 부서에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능의 중복이나 인원의 과다배치 인원 없음.

. 창원시의회의 경우 의원수 44명, 직원 46명으로 의원 대 직원 비율이 1:1 임

⇒ 의정팀 내 인원증원

.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원증원 필요

. 예) 국총괄인사(임면, 평정, 징계), 조직관리, 교육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무 증가

⇒ 의사팀 내 인원증원

. 주민의 입법요구에 대응하는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의 사무 증가

⇒ 의회홍보팀 내 인원증원

. 의회홍보, 언론, 홍보물 관리등 의회 독립에 따른 자체 홍보 시스템 구축

⇒ 입법팀 내 인원증원

. 주민의 입법요구에 대응하는 의원입법발의 증가로 입법사무, 연구용역사무 증가

12. 전문위원실과 입법지원팀의 역할을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직 확대가 이루어지면 전문위원실과 입법지원팀 중 어떤 부서에 인원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전문위원실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상임위 안건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소관 상임위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 및 소속의원 자료 제공

. 위원회의 의사 진행 보좌 등 상임위 소속 업무 수행

. 위원회 소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개최

.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 지원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

⇒ 입법지원팀

. 의원발의 조례안등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자료분석

.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의원 정책활동 지원

. 의원 개별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지원팀의 업무증가 및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될 것임.

13. 현재 의회사무국과 시청 및 부속기관으로의 인사는 순환보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나요? 만

약, 의회사무국과 시청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신분을 각각 “지방의회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의회 사무기구와 시청 행정기관 간의 인사교류가 파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인사이동 : 순환보직(의회사무국과 시청 및 부속기관)**

⇒ **신 분 : “지방의회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변경**

⇒ **인사교류**

. 사무기구와 시청 행정기관 간의 파견형식의 인사교류

. 의회 내 자체 인사이동 또는 타 의회와의 인사교류

14.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인사교류를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사무처와의 인사교류는 진행되고 있는지?